

2024 호남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신진교수,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다

2024. 06. 28. (금) 14:00 ~ 18:00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대학 A동 229호

주최 : (사)호남사학회,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주관 : (사)호남사학회,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2024 호남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신진교수,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다

2024. 06. 28. (금) 14:00 ~ 18:00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대학 A동 229호

주최 : (사)호남사학회,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주관 : (사)호남사학회,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학술대회 일정표

시간	내용	
14:00~14:10	개회사 및 축사	강봉룡(호남사학회 회장)
1부		사회 : 이 욱(순천대)
14:10~14:40	조선 숙종대 남인관료 목내선의 정치 참여와 保民 · 安民의 정책	발표 : 나영훈(목포대)
14:40~15:00	토론 및 플로어 질의 응답	토론 : 박 범(공주대)
15:00~15:30	영조가 경험한 扶社功臣 · 奮武功臣 회맹제의 의미	발표 : 신진혜(광주과학기술원)
15:30~15:50	토론 및 플로어 질의 응답	토론 : 문경득(전주대)
15:50~16:00	중간휴식	
2부		사회 : 정재현(목포대)
16:00~16:30	토머스 헉슬리의 과학적 윤리관	발표 : 주의돈(조선대)
16:30~16:50	토론 및 플로어 질의 응답	토론 : 오종현(전남대)
16:50~17:20	소련 수리경제연구소의 형성과 소련 경제학의 변화	발표 : 김동혁(광주과학기술원)
17:20~17:40	토론 및 플로어 질의 응답	토론 : 이정하(광주과학기술원)
17:40~18:00	마무리	강봉룡(호남사학회 회장)

CONTENTS

조선 숙종대 남인관료 목내선의 정치 참여와 保民·安民의 정책

발표 : 나영훈(국립목포대)	007
토론 : 박 범(국립공주대)	

영조가 경험한 扶社功臣·奮武功臣 회맹제의 의미

발표 : 신진혜(광주과학기술원)	037
토론 : 문경득(전주대)	066

토머스 헉슬리의 과학적 윤리관

발표 : 주의돈(조선대)	073
토론 : 오종현(전남대)	098

소련 수리경제연구소의 형성과 소련 경제학의 변화

발표 : 김동혁(광주과학기술원)	103
토론 : 이정하(광주과학기술원)	

2024 호남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신진교수,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다

조선 숙종대 남인관료 목내선의 정치 참여와 保民·安民의 정책

발표 : 나영훈(국립목포대)

토론 : 박 범(국립공주대)

조선 숙종대 남인관료 목내선의 정치 참여와 保民·安民의 정책

나영훈 (국립목포대학교)*

머리말

1. 생애와 정치 참여
 2. ‘保民’에 기반한 국방과 외교 정책
 3. 사회경제시책과 ‘安民觀’
- 맺음말

머리말

숙종 초기는 서인과 남인의 정쟁에 주목하여 정치사적 시각에서의 이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종말 갑인예송으로 남인의 정치적 우위가 확인되며 숙종의 즉위와 함께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았던 남인계와 이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게 된 정황, 또다시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과 최종적으로 서인의 정치적 승리가 확인된 갑술환국까지, 숙종 초년은 정치사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¹⁾ 기존 연구를 통해 숙종대 국정 운영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사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이해는 ‘환국’과 당쟁의 심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이 시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정쟁이 과도하게 진행된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 시기 정치세력이 분쟁과 권력 장악에만 골몰했던 것은 아니었다.

* 국립목포대학교 역사콘텐츠전공 조교수

1) 숙종초 정치사 관련된 연구는 홍순민, 「숙종초기의 政治構造와 「換局」」, 『한국사론』 15, 1986 ; 이희환, 『조선정치사』, 혜안, 2015 ; 이상식, 「조선후기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윤혜민, 「17세기 후반 국왕의 정국운영과 척신의 역할」,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등 다수가 있다.

특히, 서인과의 정쟁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된 근기남인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는 물론이고 최근의 연구까지도 정쟁에 골몰한 부정적 인사로 이해되기 쉬웠다. 그러나 당시 정국을 운영했던 서인은 물론, 남인 위정자들 역시도 당대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또 협의하면서 사안을 돌파하고자 노력을 펼쳤던 것은 당연했다. 이 시기 ‘환국’이라는 키워드로 낙인된 정치적 분쟁에 골몰한 것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시책과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에 대한 평가가 시급하다.

숙종 초년은 대외적으로는 청이 ‘삼번의 난’으로 위기에 빠지며 조선에서 현실적 북벌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던 시기였으며,²⁾ 이에 따라 국방 강화를 위한 도체부 설치, 병거와 화차 개발, 수어청 개혁 등 여러 정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또한 현종말 경신대기근과 이후 지속된 재해와 흉년으로 국내적으로 사회시책과 여러 개혁 정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오가작통제나 호패론, 지패론 등 호구조사와 관련된 정책과 호포론과 주전논의, 둔전논의 등 국가재정과 관련된 여러 논의 역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숙종 당대 정치세력으로서 근기남인들이 추구했던 당대 사회경제적 문제, 인사 등 정책 문제에 관해서 주요한 경세가들에 대해 검토하며, 이들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근기남인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관료라고 할 수 있는 허적, 윤희, 유형원, 허목, 홍우원 등 대표적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자가 주목하여 그들의 경제론과 정책 방향, 학풍에 대해 검토하였다.³⁾ 이들 연구를 통해 당대 근기남인의 사회경제적 시책과 이의 사상적 근거나 기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당대 근기남인이 정쟁에 골몰한 존재라기보다 다양한

2) 김우진, 「숙종대의 수도권 방어정책과 국왕의 대응」,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성희, 「朝鮮 肅宗의 君臣義理 定立과 尊周大義」,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3) 허목, 윤희, 허적, 유형원, 홍우원, 이원정 등 당시 근기남인의 대표적 경세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김준석, 『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3 ; 정호훈,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 고영진, 「17세기 후반 근기남인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 13, 1994 ; 신병주, 「17세기 중후반 근기남인학자의 학풍」, 『한국문화』 19, 1997 ; 원유한, 「17세기 고급관료 허적의 화폐경제론」, 『동국사학』 32, 1998 ; 김문택, 「숙종대 이원정의 정치활동과 회화」, 『역사와 실학』 39, 2009 ; 허명도, 「실무 관료’ 허적의 국정운영과 그 성격」, 서강대 역사교육과 석사논문, 2017 ; 문광균, 「남파 홍우원의 경제론」, 『한국사학보』 67, 201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정책적 활동을 하였음은 이들 연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숙종 당대 중앙 정계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 당시 정국에 참여했던 이들은 허적과 허목, 윤희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목내선, 권대운, 민희, 민암, 김덕원, 오시수, 유명현 등 남인계로 정권 운영에 참여한 학자 관료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차후 정권에서 소외되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상 중앙 정계에서 발휘한 영향력은 작지 않았다.⁴⁾

이처럼, 숙종 당대 남인계 인물들의 국가운영과 관련한 여러 시책들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수준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목내선과 같은 인물은 당대 실무적 관료로서 당대 중요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⁵⁾ 그럼에도 이들은 단지 탁남의 정치세력으로서 권력 장악을 위한 존재로만 묘사되고 있다. 목내선은 당대 중요한 정치인이자 정책 입안자였음에도 그간 인현왕후의 죄인이란 평가 때문에 그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지 못했다.⁶⁾ 이에 따라 탁남의 영수로서 정치적 분란을 가져온 인물이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당대 남인 가운데 윤희, 유형원을 비롯하여 북인계 학자들의 ‘실학적 기풍’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실제 당시 정무를 책임졌던 남인계 관료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내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당대 남인계 관료 특히 정승을 역임한 인물들에 대한 국정운영책을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숙종대 정국에 참여했던 여러 인사들, 예컨대 민희나 민암, 김덕원, 권대운 등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척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숙종 초년 정국에 참여했던 이들이 당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4) 이와 같은 시각은 이근호, 「석전 광주이씨 가문과 근기남인의 제휴」, 『한국학논집』 57, 2014; 나영훈, 「숙종 초 근기남인의 정치적 논쟁과 대립」, 『조선시대사학보』 105, 2023 등에서 지적한 바 있다.

5) 동시대 우의정이었던 김석주는 당시 목내선을 실무형 관료로 높이 평가했다. “목내선은 성격이 비록 각박하고 급하지만 행신은 청간하며, 과거 이조에 있을 때 사람 쓰는 것은 비록 공정하지 않았으나, 호조관서나 각사 제거 자리에서는 직책을 아주 잘 처리할 것이다. 육경에 빈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어 쓸만하다.”(『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10월 28일).

6) 박경, 「18세기 기사 남인의 復官爵 청원을 통해 본 양반 擊錚의 정착 - 睦來善, 李玄逸 후손들의 복관작 청원을 중심으로」, 『사충』 86, 2015.

논쟁을 거듭했고 또 민생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존재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생애와 정치 참여

목내선은 인조반정 이후 근기남인의 대표 가계의 하나였던 사천목씨 목첩계의 일원이었다. 목내선의 조부인 목첨(1515~1593)은 동인이자 남인의 일원으로 선조대 주목받고 있었고 특히 4명의 아들이 모두 현달하면서 선조대부터 인조대까지 성세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부친 목서흠(1572~1652)은 효종초년까지 중앙정계에서 관직생활을 했으며, 숙부인 목장흠(1572~1642)과 목대흠(1575~1638) 역시 인조대 당상관 이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목내선은 목대흠에게 어릴 때부터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대흠은 한강 정구의 문인록에 기재된 인물로 학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허목 역시도 목대흠의 문사를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동렬의 형제나 사촌들 역시 함께 성장하면서 사천목씨 일문은 인조대부터 현종대까지 꾸준히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손위 형제들로 목성선(1597~1647), 목행선(1609~1661), 목겸선(1609~1664) 등은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록에도 녹선되는 등 당대 청요직 엘리트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가계가 남인의 별열로 지목될 정도로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학문적으로도 영남남인계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숙부 목대흠이 정구의 제자이기도 했고, 집안에 퇴계 이황이 직접 읽었던 『心經』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도 영남남인계와 사천목씨 목내선 집안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당대 사천 목씨에 대한 평가는 “名家의子弟”, “남인의骨髓” 등으로 표현될 만큼 남인의 핵심적인 가문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목내선이 활약했던 숙종 당대에 이들은 이미 사망하고 없었지만, 이러한 가문적 토대 아래 목내선이 남인계의 중추로 떠오를 수 있었고 또한 그의 영향으로 자신의 자손과 조카, 당질 등을 이끌고 사천목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남인 내에서의 평가로 자부했던 사천목씨였기 때문에 통혼 관계를 보아도 당시 남인의 유력한

핵심 가계와 연결되어 있었다.⁷⁾

목내선은 1617년(광해군 9)에 태어났다. 당시 정구의 제자이자 학자였던 숙부 목장흙은 “우리 가문을 크게 해줄 자는 바로 이 아이다.” 라며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동리에 사는 탄옹 이현 역시도 “이 아이는 앞으로 반드시 나라를 다스릴 인재가 될 것이다.” 라며 극찬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연마하는데 주력하였다. 18세이던 1634년 모친을 잃었고, 20세이던 1636년 부친 목서흙을 따라 남한산성에서 호가하였다. 21세에 음서로 처음 사산감역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28세이던 1644년에도 빙고별검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다. 1645년, 진사가 되었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650년(효종 1), 34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분관되었다. 이어 곧바로 한림에 천거되었다.⁸⁾ 또한 1657년(효종 8)에는 ‘홍문록’에 입록되기도 했다. 이는 목내선이 남인이지만 당시 목장흙과 목대흙 등 걸출한 영향력을 지닌 이들의 조카였고, 친형 목겸선과 사촌형 목행선이 당시 당상관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물론, 목내선 자신의 학문적 역량도 뛰어났기 때문에 사천목씨 일가를 넘어 남인계에서 주목받으며 정계에서 활동하게 되었다.⁹⁾

효종대 목내선은 남인계 대간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활동하였다. 1655년(효종 6) 사헌부 지평으로 대사헌이던 서인계 김익희와 논쟁하기도 했다.¹⁰⁾ 당시 목내선이 白帖, 즉 관인이 없는 문서로 사람을 가둔 문제로 둘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 결국 목내선은 어천찰방으로 좌천되기에 이르렀지만, 분쟁의 원인은 차치하고 김장생의 손자로 서인계의 거물이었던 김익희와 논쟁한 것만으로도 목내선은 남인계에서 입지가 높아졌다. 반면 서인계에서는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1659년 현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목내선의 행보는 서인계와 대립각을 이루고 있었다. 허목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하고 있었다.¹¹⁾ 그러나, ‘기해예송’에서 남인의 패배가 확정되면서 남인계 인사들은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졌으며 특히 서인과 대립했던 남인계의 차기 전랑후보였던 목내선 역시 공격 대상

7) 사천목씨를 포함한 근기남인계의 핵심 가계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나영훈, 「조선 숙종대 ‘濁南’의 형성과 인적 교류」, 『한국사학사학보』 46, 2022.

8) 『餘窩先生文集』 권21, 「행장」, 「睡翁行錄」.

9) 나영훈, 「조선 숙종대 ‘탁남’의 형성과 인적 교류」, 『한국사학사학보』 46, 2022, 364쪽.

10) 『효종실록』 권14, 효종 6년 2월 27일(임오).

11)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5일(갑진).

이 되었다.

결국, 1660년(현종 1) <홍문록>에도 오르고 차기 이조전랑으로 손꼽히던 목내선은 경상도사로 좌천되면 청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당시 목내선이 청선에서 내려오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기록마다 다르다. 우선 윤선도 按律 논의에 끼지 않았던 것 때문에 공론의 저축을 받아 전랑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다고 한다. 당시 윤선도는 예송문제로 인해 당시 서인계와 남인계 사이에 처벌 문제를 놓고 논쟁 중이었다.¹²⁾ 둘째, 목내선이 효종대 사관으로 있을 당시에 어떤 사람을 잘못 폄하하게 되었는데, 그 뒤 『효종실록』을 편찬할 즈음에 알려져서 당시 사람들에게 죄를 입었다는 것이다. 남인계의 영향을 받은 『현종실록』에서는, 사관의 평가로 뒤에 죄를 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로 평가하며 목내선을 두둔하였다.¹³⁾ 반면, 서인계의 영향을 받은 『현종개수실록』에서는 목내선이 경상도사로 나간 뒤 효종의 국상을 당하고서도 감사와 기생을 놓고 다툼이 있어 도내의 비웃음을 사서 청선의 물망이 막혔다고 평가한다.¹⁴⁾ 이는 목내선을 비방한 평가였다.

그러나 목내선 좌천의 직접적 이유는 당시 정황을 보면 드러난다. 당시 는 정확히 서인계가 예송의 승자로서 정국을 주도하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서인계와 오랜기간 대립했던 명망있던 목내선의 좌천은 예견된 것이었다. 실제로 한동안 목내선은 청요직에 오르지 못하고 변방을 떠도는 관직 생활을 지속했다. 수령이나 판결사 등의 관직을 제수받기는 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상실되었다. 이러한 목내선의 부침은 결국 그의 당상관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서, 청망에서 좌천된지 10년, 참상관이 된 지는 15년이 나 지나서야 당상관의 물망에 오를 수 있었다. 그마저도 숙종이 오랜 관료에 대한 예우 조치로 서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린 것이었다.

1669년(현종 10) 목내선의 당상관 승진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현종실록』에서는 목내선이 사신으로서 강직하게 사실을 기록했다가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당상관 승진도 오래 걸렸다고 평가했다.¹⁵⁾ 반면, 『현종개수실록』에서는, 당시 남구만이 承旨望을 外任으로만 구성하

12) 『현종개수실록』 권10, 현종 4년 12월 30일(계해).

13) 『현종실록』 권7, 현종 4년 12월 30일(계해).

14) 『현종개수실록』 권10, 현종 4년 12월 30일(계해).

15)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2월 11일(갑술).

자 숙종이 직접 서울에 있는 사람도 의망하라고 하면서 목내선을 직접 낙점했다고 한다. 당시 평가로 목내선은 국휼 때 기생을 끼고 논 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청망에 버림받은 인사라 평가하면서, 절대 당상관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인데 숙종이 억지로 의망해 은택을 받았다고 평가한다. 당시 의망에 참여했던 남구만은 사직하여 출사하지 않으며 불만을 표출했다.¹⁶⁾ 이처럼, 목내선의 당상관 제수는 서인계의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던 일이었다. 이는 서인계와 대립하면서 남인계의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목내선을 도덕적 흠집을 내어 청의에 물의를 끼친 인물로 폄하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목내선은 효종대 남인계의 중망을 받던 신진을 억압하기 위한 서인의 압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종대 당상관에 승진하긴 했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한 것은 5년이 지난 1674년 갑인예송 이후 남인이 주도권을 가져오면서부터였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한 직후부터, 목내선은 본격적으로 정계의 핵심 인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의 나이도 50대 후반이었으며, 남인 별열계 가문의 인사로 당시 남인계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도 했다. 서인의 집권으로 오랜 기간 주요한 요직에 오르진 못했지만 숙종이 즉위하고 도승지에 제수되며 본격적으로 요직에 등용되기 시작하였다.¹⁷⁾ 숙종 즉위 직후 남인계 주요 인사로서 목내선은 주요 요직의 인사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이조참판 허목이 대사헌의 3망을 구성할 때 1망으로 목내선을 추천하기도 했다.¹⁸⁾ 당시 이익상이 낙점되기는 하였지만 허목이 목내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사헌에 의망되진 못했지만 목내선은 곧바로 도승지에 제수되며 중앙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당시 서인들은 목내선이 성품이 편벽되기는 하지만 일을 잘 처리하는 인사로 평가하였다. 홍문록과 대간을 거쳐 이조전랑의 가장 우선 대상으로 지목될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지만, 사평에서 특정 인물을 비방한 일로 배척받아서 청요직에서는 멀어졌다.¹⁹⁾ 이 무렵 남인이 집권하며 우선적으로 등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남인계 별열 가문이자 연륜이 쌓였고 또한 서인에게 폄박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6) 『현종개수실록』 권20, 현종 10년 2월 11일(갑술).

17)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5월 19일(정축).

18)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4월 19일(정미).

19)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5월 21일(기묘).

1675년(숙종 1) 도승지로 근신하였기에 숙종의 신뢰를 받았고 內廳馬까지 하사받았다. 곧이어 이조참판이 되면서 승진하였는데,²⁰⁾ 그 해에 9월에 형조판서까지 제수되었다. 급격한 승진이었다. 이후 1680년(숙종 6) 5년간, 목내선은 병조판서를 제외한 5조의 판서를 모두 역임하면서 실무에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목내선은 이조 사안을 제외한 4조의 모든 사안에서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다.²¹⁾ 특히, 형조판서로 재임할 당시에는 본래부터 형육을 잘 처리한 인사로 인정을 받았고 몇 가지 중요한 옥사를 심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형조판서를 떠난 이후 형육의 중임을 맡기기 위해 판의금부사에 발탁하기도 했다.²²⁾ 예조판서로 재임하면서는 전란 이후 사라진 의례 관련 문적들을 새로이 정리해 등록으로 정리하여서 이후 예서 편찬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²³⁾ 또한 복도의 각릉을 봉심하고 돌아와 내수사 별제나 하인배가 함흥과 영흥의 본궁에 제사지내는 폐단을 지목하고 참봉이 직접 제사 지내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²⁴⁾ 한식만 제향하는 명종과 사시와 기제를 모두 제향하는 순회세자의 형편이 맞지 않으니, 순회세자도 한식만 제향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²⁵⁾ 호조판서로 재임하면서는 한 톨의 재원도 함부로 쓰지 않아 명확히 재무를 관리했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국방 재원 감축, 진흥 사안과 관련해서는 호조판서로 재임하거나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다. 이 시기 목내선의 실무적 역량에 대해서는 동시기 서인계 척신인 김석주의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목내선은 성격이 비록 각박하고 급하지만 행진은 청간하며, 과거 이조에 있을 때 사람 쓰는 것은 비록 공정하지 않았으나, 호조판서나 각사 제거 자리에서는 직책을 아주 잘 처리할 것이다. 육경에 빈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어 쓸만하다.”²⁶⁾라고 하였다. 이는 그가 판서로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한편, 목내선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판서직인 이조판서 자리는 특히 사적으로 사람을 쓴다는 비판을 내부적으로 받았던 것에서

20)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윤5월 24일(신해).

21) 당시 병조판서는 김석주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제수되었다. 이조판서로 있을 당시에는 사적으로 인재를 등용한다고 하여서 허목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22) 『숙종실록』 권8, 숙종 5년 6월 14일(정축).

23) 『餘窩先生文集』 권21, 「행장」, 「睡翁行錄」.

24)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10월 3일(경오).

25)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10월 16일(계미).

26)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10월 28일

기인하였다. 1677년 이조판서였던 목내선과 우의정 허목 사이에 반목이 생겼다. 당시 허목은 사적으로 인재를 등용한 목내선을 공박하였다. 당시 목내선은 이옥, 김방걸, 허목 등에게 인사 문제로 논박을 당하였는데 당시 목내선의 판단으로는 고묘론에 찬성하지 않아서 허목의 미움을 받은 것으로 자평했다.²⁷⁾ 그러나 당시 이옥과 김방걸이 비판한 상소는 목내선이 아닌 병조판서 김석주의 의망이었기 때문에 목내선으로선 다소 억울한 점이 있었다.

당시 인사 문제로 공격받은 목내선은 허목에 대한 실망으로, 재차 허목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고 결과적으로 허목이 사직을 하고 목내선은 우참찬에 제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²⁸⁾ 이는 숙종이 목내선을 보다 신뢰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당시의 대립은 일회성의 에피소드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의견을 달리하여 논박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또한 이후 <수옹행록>에 따르면, 당시 목내선과 허목은 곧바로 화해를 하여 친목을 다졌다고 한다.²⁹⁾ 이 일은 차후 탁남 목내선과 청남 허목의 대립으로 연결되어 이해되기도 하지만, 재차 살펴보듯이 목내선은 허목의 정책을 계승한 인물이기도 했다.

허목은 일찍이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은 한강 정구에게 수학했다고 알려지면서, 근기남인계 학통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³⁰⁾ 목내선은 미수 허목에게 직접 수학했다는 기록은 찾아지지 않지만, 목내선의 학문에 영향을 미친 사천목씨 가학의 전통을 보면 그의 숙부 목대흠이 한강 정구의 문인이었다.³¹⁾ 따라서 목내선 역시 자연스럽게 부친과 숙부를 통해 가학을 익히는 한편 그 학문의 기저는 한강 정구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미수 허목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문적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목내선의 서울 집에서 퇴계 이황이 직접 읽던 『심경』이 보관되었다는

27)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6월 7일(임자).

28)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7월 17일(임진).

29) 『餘窩先生文集』 권21, 「행장」, 「睡翁行錄」, 병진, 10월, “眉叟許先生新造朝 初不能無動於欺長者之言 筭論公銓注之失 而事非實狀 公屢控章乞解銓務 許先生後亦悔 至移書相謝 公終無纖毫恨意 平居曰許公古貌古心人 後請甄錄其子孫 及士林議設院享之 公之長孫以公命任其事.”

30) 미수 허목의 학통은 안병걸, 「미수 허목과 영남학과」, 『퇴계학과 유교문화』 33, 2008을 참고할 수 있다. 허목의 학통이 정구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인한 연구이다.

31) 목대흠의 학문 연원은 권연웅, 「『회연급문제현록(檜淵及門諸賢錄)』 소고(小考)」, 『퇴계학과 유교문화』 13, 1985를 참조할 수 있다. 회연급문제현록은 한강 정구의 문인을 정리한 기록이고 여기서 목대흠을 확인할 수 있다.

점은 사천목씨 가학의 연원이 퇴계학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목내선의 학풍과 정책 방향이 허목과 유사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내선은 퇴계 이황의 친형인 溫溪 李瀼에 대한 특별 증직을 요청하는가 하면,³²⁾ 목내선은 이현일을 元子輔養官으로 추천해 올리기도 했는데 영남에서 퇴계학맥의 정수를 계승한 갈암 이현일의 정소를 이끌어내어 산림으로 부르는데 역할하기도 했다.³³⁾ 또한 성주의 회연서원이 사액되는데 힘을 쏟아 관철시켰다. 성주 회연서원은 한강 정구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1627년(인조 5) 서원이 건립되었고, 1690년(숙종 16) 목내선이 힘을 쏟아 사액을 관철시켰다.³⁴⁾ 당시 정구의 사액서원은 成川에 있었기에 성주의 회연서원은 첩설로서 사액을 받지 못했는데 목내선이 강력히 요청해 사액을 수락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목내선은 남인계 명문 별열가이면서 퇴계학맥과 인연이 닿아있다. 더욱이 미수 허목과 유사한 학풍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한강 정구의 학풍을 계승한 목내선의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1680년, 목내선을 포함해 남인계 사람들 전체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허견의 옥사에 이어진 경신환국이 그것이다. 이 일로 서인계가 집권하고 남인계가 차례로 관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목내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허적, 윤휴 등 남인의 주요한 대신들은 처벌받아 유배가거나 죽게 되었지만 목내선은 크게 연루되지 않았고 단지 요직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그쳤다. 목내선은 허견의 옥사가 발생하자 판의금부사로 국청에 참여했는데, 죄인 허견의 심문을 제대로 못한 일로 서인들의 강력한 遠邊 유배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목내선에게 큰 잘못이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숙종은 門外出送만 명하였으며, 그마저도 곧 방면하였다.³⁵⁾ 1680년부터 89년까지 서인 집권기에는 소소한 관직 생활만 역임하고 있었다.

1689년 인현왕후 폐위에 반대했던 박태보의 심문 과정에서 실록의 기록

32)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8월 23일(을사).

33)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7월 22일(병진).

34) “星州는 바로 정구의 학문을 수습하던 땅이라 檜淵書院을 세웠는데, 成川에 먼저 사액한 까닭으로 疊設을 금하는 것에 저촉되므로 사액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목내선이 임금에게 말하여 비로소 시행하기를 명하였다.”(『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11월 4일(정유)).

35)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5월 11일(기해).

을 보면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남인 대신들, 권대운과 목내선, 김덕원 등은 박태보를 구원하고 인현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알리기는 했다. 다만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서인계 당론서와 남인계 당론서는 명확히 다르게 평가한다. 서인계 당론서인 『수문록』에서는³⁶⁾ 목내선이 이 옥사를 다스리면서 박태보에게 더욱 엄히 형벌을 내렸다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내선에 대해 성질이 흉악한 자이며 극악한 역적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남인계 당론서인 『동소만록』에서는,³⁷⁾ 목내선이 애통하고 절박한 심정을 아뢴 상소를 여러번 올렸다고 했지만 숙종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특히 당시 박태보처럼 죽음으로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한 사람이 서인에도 없었는데, 왜 유독 남인들에게만 그 죄를 덮어씌우는 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남인들은 ‘名義罪人’이라는 고금의 법에도 없는 죄목으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사환국 이후, 갑술환국까지 5년간은 목내선이 정승으로 제수되며 남인계의 영수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했던 시점이었다. 이 무렵 목내선은 70대의 노인이었으나 열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였다. 특히 당시 진흥과 감세 등 사회경제적 시책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694년 갑술환국 당시 목내선이 축출되어 극변으로 귀양을 갔던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 1689년 인현왕후가 폐위될 당시 정승으로서, 박태보 등 충신이 목숨을 걸고 반대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단 반나절만 정청해 형식적으로만 반대했던 점이다. 즉 인현왕후 폐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죄목이다.³⁸⁾ 그러나 당시 숙종이 너무나도 엄하게 폐위를 독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반대는 어려웠을 것이다.³⁹⁾ 둘째, 인현왕후 폐위 사실을 중국에 알릴 때 사신이 가져가는 폐위 사유에 대해 ‘不恭順’이라 하지 않고 ‘不恭敬’이라 했던 이유였다. 특히 ‘不敬’이란 표현은 당시 나오지도 않았던 말인데 목내선이 말을 만들었으니 죄가 크다고 했다. 다만 박세채는 불순 불경의 의미가 비슷하고 불순은 이

36) 이문정, 김태훈 역, 『수문록』 1권, 혜안, 2021, 57쪽.

37) 남하정, 원재린 역, 『동소만록』, 혜안, 2017, 314~321쪽.

38)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8월 20일(을묘).

39) 남인계 정사신(정시한의 손자)의 상소(김용흠, 원재린, 김정신 역, 『황극편』 3권, 혜안, 2023, 355쪽).

미 나온 말이니 크게 죄를 묻지 않아도 된다는 중립적 입장을 표했다.⁴⁰⁾ 그럼에도 왕후를 불경스럽다고 한 죄목이 컸다. 셋째, 목내선은 숙종의 元妃인 인경왕후에게 ‘在天’이란 표현을 쓴 것이 부당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추후 이것이 왕후를 모욕했다는 죄로 지목되었다. 왕후에게 天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이상할 것 없는데, 인경왕후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죄목으로, 목내선은 극변에 안치되었다. 다만 소론계 대신인 남구만, 박세채, 윤지완 등이 정승으로 있으면서 그 죄가 사형에까지 이르지 않게 했다.

이렇게 목내선의 정승으로서의 이력,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났고 그와 함께 남인들의 집권 역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목내선은 1697년(숙종 23) 4월 24일, 김덕원과 함께 위리안치를 풀고 육지로 옮겨 안치시킬 것을 지시했다. 당시 사신은 목내선에 대해 매우 악랄하게 평했는데, ‘목내선 같은 자는 명분과 의리를 범하여 그 죄가 천지에 두루 미친 자여서 먼 섬에 위리안치한 것도 잘못된 것이니, 목숨이 온전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서울 근교에 편하게 쉬게 하였으니 너무나도 원통하다.’고 평했다.⁴¹⁾ 이후 목내선은 1704년(숙종 30) 8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목내선은 숙종후반을 거쳐 경종대와 영조대 여러 차례 관직이 회복되었다가 박탈되기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907년,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와서야 그의 죄가 탕척되고 복권되기에 이른다.⁴²⁾

목내선의 생애와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간, 인현왕후의 죄인이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보면, 효종대부터 오랜 기간 남인의 입장에서 관직 생활을 했고, 이로 인해 서인계의 미움을 받아 좌천되기도 했다. 숙종대 초년에는 남인의 유력 인사로 등장하면서 주로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냈으며, 기사환국 이후에는 정승으로서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또 관철시킨 인물이었다. 목내선에 대한 활동과 평가는 그간 그에게 주어졌던 ‘명의죄인’이란 시각을 들어내고 살펴볼 때 또 현실 정치에 참여하며 내세웠던 실질적 정책을 분석할 때 온전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0)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6월 13일(기유).

41) 『숙종실록』 권31, 숙종 23년 4월 24일(계유).

42) 박경, 「18세기 기사 남인의 復官爵 청원을 통해 본 양반 擊錚의 정착 - 睦來善, 李玄逸 후손들의 복관작 청원을 중심으로」, 『사총』 86, 2015.

2. ‘保民’에 기반한 국방과 외교 정책

목내선이 살았던 시기는 국제적으로 청나라 순치제에서 강희제(1661~1722) 연간에 해당한다. 홍성구는 1686년, 강희제 25년을 기점으로 중국 내지에서의 군사적인 반청활동이 소멸되면서 조선에 대한 관용적 태도로 변화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³⁾ 목내선은 바로 이러한 청과 조선의 외교적 관계에서 중요한 변곡점 속에 살았고 또 당시 집권층으로서 국제 정세에 촉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1686년을 기점으로 이전 시기의 주요 국제 관심사였던 삼번의 난 시기의 대외 정황과 1686년 이후 몽골의 撻子와 噶爾丹에 대한 관심의 촉각이 전해진 시기의 대외 정황 속에서 목내선의 활동에 주목했다. 각 시기는 흥미롭게도 근기남인이 집권했던 시기와 묘하게 일치되어 있다. 따라서 근기남인들의 외교적 감각과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1) 삼번의 난과 ‘북벌’ 논쟁

1673년에서 1680년에는 청 내부에서 삼번의 난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조선 내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다.⁴⁴⁾ 특히 조선에서는 효종대부터 북벌과 관련된 논의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고 숙종 초년에 와서는 삼번의 난으로 청나라가 내부적 위기에 놓여있다는 기대감으로 북벌의 의지를 실제로 추진하고자 도체찰사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당시 집권층이었던 근기남인은 삼번의 난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이 오갔다. 대표적으로 윤희는 도체찰사부 설치를 통해 북벌에 대비하고자 했으며, 그 외 대다수 남인 대신들은 도체찰사부 설치에 부정적이었다. 목내선 역시 이러한 시기 집권층의 한명으로서 많은 고민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당시 남인계에서는 ‘삼번의 난’과 관련한 국방 논의를 지속하였다. 이때의 주요 논점은 첫째, 개성의 대홍산성 축성, 둘째, 도체찰사부 설치를 통한 중앙군 강화, 셋째, 병거나 화차 개발 등이 주요 논점이었다. 숙종초

43) 홍성구, 「18세기 중국의 조선인식」,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44) 김창수, 「17세기 후반 조선사신의 공식보고와 정치적 파장」, 『사학연구』 106, 2012 ; 이재경, 「삼번의 난 전후(1674~1684) 조선의 정보수집과 정세인식」, 『한국사론』 60, 2014.

삼번의 난과 관련한 국방 정책 논의는 당시 집권 남인 사이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최대한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목내선에 집중하여서 그의 견해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목내선은 윤희나 허적과는 달리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발언은 많지 않다. 그러나 주요 사안마다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대략적인 의도는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목내선은 대흥산성 축조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산성 축조를 찬성했던 같은 탁남 허적과 달리하는 의견이었다. 반면 청남 윤희도 산성 축조를 반대했는데, 윤희의 논리는 산성 축조를 방어적인 전략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병거나 화차, 도체찰사부를 통해 적극적 북벌을 시행하는 공격적 전략을 택하기 위해 산성 축조를 반대한 것이었다.⁴⁵⁾ 목내선의 경우, 윤희와는 다른 이유에서 산성 축조를 반대했다. 그는 축성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목내선은 백성의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산성의 축조나 병거의 제작 모두 민력을 손상시키는 무의미한 처사로 여겼다. 목내선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첫째로 힘쓸 일이며, 성과 수레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保民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주장이었다.⁴⁶⁾ 더 나아가 목내선은 해서와 관서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 역시도 반대했다. 이는 청나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와서 침략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는 청을 자극하기보다는 백성의 안위를 우선 생각할 것을 당부한 것이었다.⁴⁷⁾

이어서, 도체찰사부의 설치 역시 당대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⁴⁸⁾ 당시 근기남인 다수의 인사는 도체부 설치에 대해 의견을 냈는데, 그 결과 윤희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찬성, 허목을 중심으로 한 다수는 반대하는 견해였다. 목내선 역시 도체찰사부 설치에는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당시 목내선은 “대명의 은혜를 어찌 하루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수설치는 할 수 없는 시기에 경솔히 하면 안됩니다. (중략) 虛名을 숭상하여 實禍를 받는 것이니 體府와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

45) 당시 대흥산성 축조 논쟁에 대해서는 김우철, 「柳赫然의 大興山城 경영과 庚申換局」, 『한국인물사연구』 20, 2013을 참조할 수 있다.
 46)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11월 21일(을사).
 47)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4월 1일(정미).
 48) 당시 논쟁에 대해서는 나영훈, 「숙종 초 근기남인의 정치적 논쟁과 대립」, 『조선시대사학보』 105, 2023을 참조할 것.

다.” 라고 하여서, 도체찰사부 설치에 반대했다.⁴⁹⁾ 그는 당시의 북벌이 명확히 실질적인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하나의 부를 설치해 이름을 크게 하면 민심이 동요될 것이란 이유도 들었다.⁵⁰⁾ 이러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병거나 화차, 군사훈련 등 당시 청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당시 병거나 화차를 제작하는 것에는 청을 자극한다는 이유 이외에 실질적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황해도 병영은 청나라 사신이 오고 가는 곳인데, 여기서 병거를 만들면 청나라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따질 때 대응할 논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이미 군영대장들이 수레 만드는 일의 무익함을 말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⁵¹⁾ 윤희는 실제로 병거를 만들어 활용해 본 적도 없으며 이를 통해 전쟁을 치르는 것 역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병거의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역시 군영대장의 전문성을 믿어야 하는데 말만으로 병거를 만들어 위험을 초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민심이 안정되지 않으면 도저히 수습될 수 없는 화를 부를 수 있다며 병거 제작을 반대하기도 했다.⁵²⁾

2) 1689년~1694년, 영고탑 회귀설과 강도 보강, 그리고 청과의 국경 확정
1689년 기사환국으로 집권한 남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1689년 이후, 청과 몽골(갈단)의 격돌로 인해 몽골의 태극달자가 울란바토르에서 기병하였고 그 소식이 조선에도 전해져서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기였다. 태극달자는 삼번의 난 당시인 1675년 조선에 처음 알려진 인물인데, 오삼계와 사돈지간이자 연합 세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 오삼계의 의붓아들로 알려진 장용은 실제 오삼계와 대치하기 위해 보낸 장수였고, 조선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다. 태극달자는 특정 인물이 아닌 몽골에서 太吉(정기즈칸의 후손)의 칭호를 받은 어떤 부족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다. 삼번의 난 이후 조선에서 파악하기로 청 조정은 몽골(태극달자)의 강성한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청 조정은

49) 『승정원일기』 267책(탈초본 14책), 숙종 4년 12월 23일(기축).

50) 『餘窩先生文集』 권21, 「행장」, 「睡翁行錄」, 戊午, “公曰域內無方至之賊 而開府建號 張大戎事 人心必大駭 臣決知其不可”

51)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11월 21일(을사).

52)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12월 2일(을묘).

몽골과의 유대를 위해 청과 수렵을 하였던 것이지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1688년에는 몽골의 서달이 국호와 연호를 고쳤고 이를 청에서 두려워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때 몽골의 서달은 준가르의 갈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1691년 보다 자세한 보고가 조선에 전해졌고 준가르 갈단과 청의 갈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실제 당시 갈단은 대몽골제국의 부흥을 도모하며 몽골족 통합을 도모하고 있었다. 1695년 세력을 확장한 준가르 갈단을 정복하기 위해 청의 강희제가 친정에 나섰다. 그리고 1697년 갈단의 사망으로 청의 몽골에 대한 지배권이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이들 몽골의 태극달자나 갈단 등의 존재에 대해서 조선 조정은 1702년과 1705년에도 여전히 청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다. 청이 몽골을 통제할 시기였으므로 조선의 정보전달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⁵³⁾

몽골과 청의 갈등이 부각된 것은 1688년부터였고 1691년부터 보다 상세한 준가르와 청의 갈등이 조선에 알려졌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기사환국 이후의 근기남인이 집권하고 있었다. 이 당시는 목내선이 정승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있던 시기였다. 자연스럽게 목내선과 근기남인의 국제적 안목과 대외인식도 살필 수 있다. 이 시기는 또한 러시아와 청의 분쟁, 몽골과 청의 분쟁 등 청의 세력 확장으로 외부와의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강희제 역시, 조선과의 국경 분쟁을 통한 定界 시도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여전히 서북 변경의 무단 침입하는 이들로 인한 분쟁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몽골의 성장으로 청이 패배하여 영고탑으로 복귀할 때 조선에 침략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보장처를 마련하기 위한 축성 논의였다. 대체로 강화도의 축성 문제가 핵심 논쟁이었다. 둘째, 청의 경계 확정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로, 서북 변경의 사람들에 대한 관리 문제였다.

당시 몽골의 강성함으로 청나라의 형세가 어려워져서 영고탑으로 돌아가면 조선 조정에도 환란이 닥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대비할 방책으로 강화도를 보장처로 삼고자 했다. 목내선은 남방 儲置米를 활용하여 강화도의 糧餉을 채울 것을 요청하였다.⁵⁴⁾ 숙종은 또 몽골의 강성과 청의 영고탑

53) 송미령, 「17-18세기 조선정부의 몽골 이해」, 『중국사연구』 62, 2009.

54)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1월 3일(을미).

회귀에 대한 대응을 말하자 목내선은 강화도 군항미의 저축으로 보장처를 탄탄히 할 계책을 다시 언급하였다.⁵⁵⁾ 그러자 이보다 더 본격적으로 강화도에 축성을 하여 보장처로 삼자는 주장이 강하게 언급되었다. 당시 숙종은 강화도를 축성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목내선은 백성을 생각하며 역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목내선은 “신이 三軍門을 시켜 赴役하게 하기를 청한 것은 대개 백성을 돌보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중략) 신하들이 아뢴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고 미루려는 생각이 아닙니다.”⁵⁶⁾라고 하여 민력을 우선시하는 축성 계획을 아뢰었다. 물론 당시 강화도 축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목내선은 다만 최대한 민력에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축성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의 보민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또 한편, 당시에는 변경에서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는 백성들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청은 당시 주변 국가와의 국경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조선과 청 사이, 백두산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확립하는 문제 역시 이 무렵 제기되었다. 문제는 조선에서 인삼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경을 침범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청과의 외교 문제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였다.

1691년(숙종 17) 목내선은 당초 서북 변경에서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는 일은 금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⁷⁾ 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오지 않게 하려면 자연스러운 조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목내선은 국경을 넘어 삼을 캐는 백성들을 금지하면 이들이 먹고 살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당시 방군포 대신에 소금을 내게 한 다음 그것으로 균형을 보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방군포 가운데 반을 소금을 사는데 써서 이를 가지고 쌀을 사서 변방 백성에게 나누어주면 이들이 인삼을 캐지 않고도 자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⁵⁸⁾ 다만, 목내선은 삼을 금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명확히 처벌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그는 蓼禁事目을 어긴 죄인은 일률로 처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⁵⁹⁾ 이는 그만큼 당대 청과의 외교적

55)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7월 13일(임인).

56)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12월 14일(경오).

57) 『승정원일기』 344책(탈초본 18책), 숙종 17년 2월 23일(기묘).

58) 『승정원일기』 345책(탈초본 18책), 숙종 17년 4월.

59)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4월 22일(정축).

분쟁을 불러오지 않게 하려는 조치이기도 했다.

1693년(숙종 19)에는 다시 한번 삼수와 갑산의 인삼 캐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보고를 토대로 이들을 곧바로 금단하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두고 금단하여서 이들이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한 이후로 늦추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⁶⁰⁾ 이처럼 목내선은 국경에서의 문제가 외교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정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동시에 ‘보민’에 대한 대책으로서 변경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숙종 초년은 대외적 위기 상황과 효종대부터 이어온 ‘북벌’이라는 명분론을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중앙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목내선에게도 청과의 외교관계, 그리고 이와 결부된 군사 정책에 대한 입장 피력은 반드시 필요했다. 당시 논의를 주도하고 있던 사람은 북벌을 강력히 주장했던 윤희와, 이에 반대했던 허목, 그리고 중도적 입장에서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던 허적이었다. 목내선은 대체로 허목과 유사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었다.⁶¹⁾ 목내선은 윤희의 극단적이고도 강력한 군사정책과 북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상황에 따라 조치하자는 현실적 차원에서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의 핵심에는 ‘보민’이라고 하는 민생을 염려하는 차원의 의견을 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목내선의 국방과 관련된 대외정책은 ‘保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목내선은 강력한 군사정책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숙종 재위 초, 윤희의 국방 강화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고 안민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개진하였다. 목내선은 북벌, 즉 복수설치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시기에 경솔히 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도 백성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당대의 시국에 바탕을 둔 판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수 허목의 반복별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허목이 사망하고 목내선이 정계의 중심이 되었던 1689년 이후는 허목을 대신하여 목

60) 『숙종실록』 권25, 숙종 19년 12월 26일(을미).

61) 허목의 보민외식에 기반한 정책은 兵事보다 人和의 논리를 우선시 했던 보민론에 입각한 반복별론을 주장했던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준석, 「허목의 예약관과 준군신비론」, 『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3, 67쪽).

내선이 주도적으로 반복별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목내선의 군사 및 대외정책은 그간 이른바 ‘탁남’이라고 지목되었던 허적보다는 ‘청남’으로 지목된 허목과 더 많은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탁남으로 분류하는 목내선에 대한 기존 평가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3. 사회경제시책과 ‘安民觀’

목내선이 숙종대 국정에 참여해 내세운 여러 정책과 의견들 가운데 대다수는 재정 감축과 진휼, 또 백성들의 안민을 우선시하여 군사비를 감액하는 정책 등이 다수였다. 특히 세금의 감면과 국가재정의 저축, 진휼 사안, 경비 감소 등을 지향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미수 허목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같은 탁남계 인사라 할 수 있는 허적이나 권대운과는 반대되는 견해를 내세운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목내선이 탁남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책 실현에 있어서는 정통주 자학적 입장을 보이는 허목 등 청남계 인사들과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목내선은 숙종 초년부터 정승에 오른 숙종 중반까지 시종일관 세금 감면과 저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우선 그가 가장 주목했던 진휼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어 당시 남인계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호패론, 주전론, 오가작통제 등 여러 정책들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내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은 그가 올린 몇 차례의 차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목내선은 1690년, 1692년, 1694년에 각기 차자를 올려 본인의 안민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목내선이 평소 생각했던 국정에서의 안민책, 그리고 당시 기근 상황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690년(숙종 16) 9월에 올린 시무에 관한 차자이다.⁶²⁾ 그는 모두 7개의 내용을 올렸는데, 첫째는 ‘사부 이상 여러 신하들이 춘궁에 입

62)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9월 5일(임진).

시하여 교육하게 할 것'이라는 세자 교육과 관련된 내용, 둘째는 '종친들을 엄히 관리하고, 가까운 종친과 자주 문안하면 訛言이 여기서 나오니 조심할 것'이라는 종실 관리에 대한 내용, 셋째는 '상의원 진공에 정해진 규제가 있는데 불시의 수용이 많아지면서 호조의 재원을 대내에서 쓰니 절약에 힘쓸 것'이라는 왕실의 재원 감축에 대한 내용, 넷째는 '실록을 함부로 고치면 절대 안 된다.', 다섯째는 '호당 인재를 불러 과시 출제에 사용하며, 동몽 교관을 신중히 선정할 것'이며, 여섯째는 '조정 의 패초를 어기는 자를 과감히 처벌할 것'이며, 마지막은 '중앙과 지방의 유생 가운데 죄를 입어 과거를 못치르는 이들을 사면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세 번째 왕실의 사치를 경계한 대목이다.

이어 1692년(숙종 18) 9월의 차자도 주목된다.⁶³⁾ 이때 목내선은 ① 여러도의 이전 조곡(糶穀: 이전에 빌려준 곡식) 捧納을 정지하게 하였다. ② 軍保의 身布와 노비의 貢木을 혹은 절반으로 감하거나 혹은 3분의 1로 감하게 하였다. ③ 江都에 옮긴 곡식을 경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또한 그 소재지에서 받아 놓도록 함으로써 실어다 바치는 폐해를 없애도록 청하였다. 어차피 다시 줄 것을 쌀을 옮기는데 드는 노역이 컸는데, 이를 격감해준 것이다. 이들 3개 조치는 모두 당시 민폐를 제거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백성의 편의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남고 있었다.

마지막은 1693년(숙종 19) 2월에 올렸다.⁶⁴⁾ 이때 목내선은 ① 백성 진흥을 위한 계책, ② 변방 장수나 수령으로 역량이 있는 자는 작은 죄가 있었어도 임용하자는 내용, ③ 사치하는 풍습을 억제하자는 내용 등을 올렸다. 이 역시도 대부분 백성을 위한 계책들로 특히 진흥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였다.

이처럼, 목내선은 자신이 정승으로서 올린 차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국가재정의 저축과 왕실 재정의 감축이라는 재정의 긴축에 대한 의견을 담았고, 둘째는 백성을 위한 세금의 탕감과 진흥의 적극적 시행을 담고 있다. 그가 국

63) 『숙종실록』 권24, 숙종 18년 9월 19일(을축); 『승정원일기』 349책(탈초본 18책), 숙종 18년 9월 19일(을축).

64) 『숙종실록』 권25, 숙종 19년 2월 3일(정축), 특히 진흥을 위한 반도와 기민 구휼 방안은 승정원일기에 상세하다. (『승정원일기』 351책(탈초본 18책), 숙종 19년 2월 3일(정축)).

정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던 말년의 정승으로 있으면서 제시했던 3개의 차자에는 이와 같은 그의 평소 생각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安民’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내선이 숙종 당대에 참여하거나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그의 사회경제책에 대해 검토하겠다.

1) 17세기 기근과 목내선의 재정 정책 : ‘安民’ 우선 정책 시행

17세기 효종대부터 숙종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대기근을 맞이하는 시기였다. 이른바 소빙기의 위기⁶⁵⁾라고도 불리는 17세기의 상황은 특히 목내선이 정계에서 활동하던 숙종 재위 초년에 심각했다. 이 시기는 이른바 ‘庚辛大飢饉’이라 불리는 대대적 흉년에 직면해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다.⁶⁶⁾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목내선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중반부터 이어진 몇 번의 대기근 속에서 조선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민생을 염려할 만큼 우려스러운 일이었다.⁶⁷⁾

1670년(현종 11)과 1671년(현종 12)은 경신대기근이 발생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서리나 우박, 눈과 한파를 비롯한 냉해가 집중되었고 또한 이와 함께 홍수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대적인 흉년이 발생한 시기였다. 이 당시의 대재난은 이후 오랜 시기 조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숙종 초년 집권하고 있던 남인계 인사들에게도 이 시기의 국내적 상황은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진흥과 관련된 여러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1671년부터 1681년(숙종 7)까지 한 번도 풍년이 들지 않았던 것은 이 시기 국정운영을 책임졌던 남인계 인사들에게는 더 가혹한 상황이었다. 자연재해는 기근과 역병으로 이어졌고 뒤따라 인구의 감소까지 이어졌다. 당시, 재해의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추후 지목되는 것은 이양법, 지주제 확대, 조세 수탈 강화 등이다.⁶⁸⁾ 국가에서는 재해의 대비책으로 무

65) 소빙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계승범, 「국내 한국사학계의 환경, 기후 문제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사학사학보』 46, 2022을 참조할 수 있다.

66) 김성우,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현실』 25, 1997.

67)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2008 ;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43, 2011.

68) 정형지, 「숙종대 진흥정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25, 1997.

상구제와 유상구제의 방식으로 진휼 정책을 펼쳤다. 기민을 구제하는 방식은 設粥과 乾糧 지급이 있었다. 이를 위해 1682년(숙종 8)에는 <救荒事目>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진휼과 함께 기근을 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부세의 탕감을 통한 백성 구제였다. 부세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전체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주었다. 이를 부세견감책이라 한다. 또한, 이 시기 진휼을 위해 시급한 것은 기민의 파악이 중요했고 자연스럽게 당시 민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오가작통이나 지패, 호패 등의 호구나 인구 파악을 위한 정책 역시도 함께 논의되고 있었다. 현종대부터 지속된 기근과 재해는 숙종 집권 내내 지속된 현상이기도 했다.

이처럼, 기근을 당해 진휼과 부세 견감, 호구 파악 등의 여러 시책이 맞물려 시행되고 있던 시기가 바로 목내선이 집권하던 숙종 초년의 상황이다. 당시의 진휼에 대한 경험은 추후 『속대전』에 정리되어 진휼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해두었다. 이는 일개인의 노력이 아닌 당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한 여러 신료들의 정책적 입안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일인으로 목내선 역시 참여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災實分等を 3등급으로 정식화 시킨 조치는 목내선의 민생안정책 가운데 단연 주목될 만한 것이었다.

목내선은 정승에 오르기 전부터 세금 감면과 저축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또한 왕실의 궁방 운영에 대한 폐해 역시 지적하고 있었다. 1678년(숙종 4) 5월, 예조판서 목내선은 근일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백성을 진휼하는 것에 있다면서 천인감응설을 내세워 민간의 원한과 고통을 해결해야 하늘도 응답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⁶⁹⁾ 지금과 같은 가뭄은 세금 탕감을 통해 和氣를 감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역시 숙종이 받아들였다. 이해 8월에는 災傷敬差官이 급제한 고을 외에도 재상을 입은 것이 심한 데도 급재를 주지 않은 고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목내선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⁷⁰⁾

1679년(숙종 5) 9월, 목내선은 ‘흉년으로 해마다 감해 오던 각 궁전의 공상과 각 관사에 진배하는 급료를 감하라’는 의견을 내었다. 재정 절감으로 흉년을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⁷¹⁾ 호조판서로 재직하던 12월에는 나

69)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5월 22일(신유).

70)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8월 23일(신묘).

주 궁방에서 발생한 폐단을 전라감사 유명현의 보고를 따르지 않고 내수사의 편을 들어 백성을 처벌한 것이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하자, 숙종은 재조사를 명하기도 했다. 특히 궁가의 폐단에 대해 목내선은 잦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⁷²⁾ 이는 그가 궁방의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는 폐단을 해소하려는 평소의 소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더욱이, 1680년(숙종 6) 1월 목내선은 당시 허적의 기로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다.⁷³⁾ 목내선은 ” 한쪽에서는 賑恤을 실시하고, 한쪽에서는 잔치를 베풀면 어찌 듣는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허적의 기로연을 안할 수 없다면 가을로 미룰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목내선은 백성에게 진휼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시국에 대신의 기로연은 중요하지 않으니 백성을 생각해서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는 평소 목내선의 안민관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후일 목내선은 자신과 권대운의 기로연 역시도 진휼로 인해 시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⁷⁴⁾

1690년(숙종 16)부터 1693년(숙종 19)까지, 기사환국 이후 다시 집권한 남인의 좌의정이 된 목내선은 보다 빈번하게 진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1690년(숙종 16)은 가뭄으로 삼남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7월에 영남과 호남의 상황이 심각하고 참혹해지자 각 군문과 아문에 상납하기 위해 이미 배에 실은 곡식은 그대로 두더라도 아직 싹지 않은 것은 해당 지역에 그대로 두어서 진휼곡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진휼당상을 차출하여 賑政을 살피게 하였다.⁷⁵⁾ 또한 8월에 곡식이 모두 자라기 전까지 특별히 호조와 선혜청의 낭관을 호남과 영남에 보내어 재실을 살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⁷⁶⁾ 한편, 7월 말 전라도에 재해가 극심하다는 보고가 있자 중앙의 곡식을 전라도 강진으로 옮겨서 급한 고을을 구제하게 하는 방도 역시 제시하였다. 보통 진자를 해당 지역과 인근 고을 곡식으로 구제했는데 이때 목내선은 중앙의 곡식을 지방으로 내려주는 식으로 진휼곡을 마련해주었던 것이다.⁷⁷⁾ 또한 이후의 계책으로 황해도의 곡식 1

71) 『숙종실록』 권8, 숙종 5년 9월 26일(기축).

72) 『숙종실록』 권8, 숙종 5년 12월 28일(기축).

73)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1월 22일(임자).

74)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윤7월 3일(병진).

75)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7월 3일(임진).

76)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7월 6일(을미).

77)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7월 23일(임자).

만석, 평안도의 곡식 4만석을 서울로 보냈다가 이듬해 봄 호남과 영남으로 옮겨서 진흙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⁷⁸⁾ 금년도 흉년으로 차년도의 진흙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곡식을 마련할 방도를 제기한 것으로 목내선은 그만큼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것에 진심이었다.

한편, 이해 9월에는 강화도 돈대를 쌓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숙종이 목내선에게 의견을 묻자 성을 쌓는 것은 찬성하지만 당시는 흉년으로 백성을 부리는 것은 폐해가 염려되니 삼군문에서 돈대를 쌓게 하고 민력을 괴롭히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⁷⁹⁾ 그럼에도 숙종은 지속적으로 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멈추지 말고 공역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자 목내선은 “신하들이 아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고, 미루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라면서⁸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690년 목내선은 재실분등을 정식화하여 진흙 정책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는데 기여하였다. 17세기 후반은 거듭된 재해로 환곡이 늘어나고 자연히 이의 환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특히 1677년(숙종 3) 홍우원은 환곡 징수가 백성에게 큰 폐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거두지 않으면 다음 해의 진자를 보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때 그는 재해를 입은 지역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피해가 막대하면 1/3만, 그 다음은 1/2만 거두고, 그도 거두기 힘든 지역은 잡역으로 대신하도록 했다.⁸¹⁾ 이 주장은 당대에 바로 통용되진 못했지만 이후 재실에 따른 분등 규정이 제기되었다. 이를 尤甚, 之次, 稍實의 3개로 나누어 구분했다.⁸²⁾

그런데 이후 규정화한 災實分等이 3등급이 아니라 4등급 혹은 5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지정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관찰사가 자기 지역의 상황에 따라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견감해 준 조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감사의 재령에 따라 재실분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목내선은 당시 영남감사 이담명을 비판하면서 재실의 분등은 3등급이 원칙인데 제멋대로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혜택은 적고 손해만 많아지게 된다면 재실분등을 3등급으로 정식화하는 건의를 했다.⁸³⁾ 이를 숙종이

78)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8월 7일(을축).

79)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9월 12일(기해).

80)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12월 14일(경오).

81)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11월 21일(갑오)

82) 양진석, 「17세기 후반 災實分等과 還穀의 환수책」, 『규장각』 25, 2002.

받아들이면서 이후 재실분등의 원칙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목내선은 남인 집권기인 숙종 전반, 진흙에 바탕을 둔 안민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관철시켰다. 목내선은 이 시기 백성들의 세금 탕감과 같은 ‘安民’을 최우선에 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당시 목내선은 시종 일관 재정의 감축과 진흙을, 청과의 유사시에 대비한 군비 증액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의 정세에서 군주인 숙종이 강도 축성을 강화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백성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로 숙종의 뜻을 꺾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목내선이 안민에 최우선을 둔 관료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 목내선의 여러 사회시책들

목내선은 당시 남인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던 개혁정책인 호패론, 오가작통제, 지패론과 주전론, 양인종모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물론 그는 이들 논의에 허적이나 윤희, 허목보다는 소극적으로 의견을 낸 정도였다. 그가 보다 주목한 것은 진흙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안에서도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우선 당시 뜨겁게 논의되던 여러 개혁에 대한 의견 개진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목내선이 지향했던 사회시책과 백성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가 진흙에 그토록 집착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677년(숙종 3), 숙종대 호패법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허적과 윤희 등이 적극적인 논의에 있었고, 특히 허적의 경우는 호패법 시행에 대해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목내선은 깊은 참여는 하지 않지만 반대되는 견해를 보였다. 그의 논리는 민간이 소란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⁸³⁾ 이는 그간 없었던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던 목내선의 평소 행적과도 일치하지만, 그 근간에는 민심이 소란해진다는 이유, 즉 안민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1678년 1월, 영의정 허적의 건의로 주전을 시작해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이후 호조, 상평청, 정초청, 사복시, 어영청, 훈련도감, 수어청 등에서

83) 『비변사등록』 숙종 16년 12월 24일.

84)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3월 1일(정축).

동전을 주조하였고, 윤3월 <행전사목>을 반포하면서 4월부터 동전을 유통시켰다. 당시 엽전 하나를 1문[푼], 10문을 1전[돈], 10전을 1냥, 10냥을 1관으로 유통하였다. 상평통보는 법률로서 은과의 교환 비율을 정했다. 이때 동전 40문(=40전)은 은 1냥(=10전)에 준하게 하였다. 즉, 교환가치는 1:4였다.⁸⁵⁾

1679년(숙종 5) 전문 변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상평통보는 본래 은전 1돈(=10문)의 가치가 전문 40문으로 통일했었다. 그러나 이후 비변사에서 은전 1돈이 전문 20문으로 바꾸게 되자, 백성들은 조정을 불신하고 스스로 40문을 통용 가치로 인정하며 교환하고 있었다. 이처럼, 통용된지 1년도 되지 않아 동전의 가치가 갑자기 2배로 상승하자 백성들은 조정의 동전 행용 정책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목내선은 허적, 정치화, 오시수, 민암, 김덕원, 민종도, 오시복 등과 함께 등과 함께 은전 1돈을 전문 40문으로 하는 본래의 조치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반면, 권대운, 유혁연, 김석주, 오정위, 이원정, 정유악 등은 법을 변경하는 것이 낫아지면 백성의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비변사에서 바꾼 대로 은전 1돈을 전문 20문으로 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시 또 전문의 가치를 변통하는 것은 스스로 체통을 잃어서 백성의 신뢰를 잃기에 안된다는 입장이었다.⁸⁶⁾

처음 허적과 뜻을 같이 했던 목내선은 막상 다음날 허적이 관서에서 민간의 돈을 사서 거두어들이라는 뜻을 아뢰자 허적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백성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허적은 국가를 믿고 은전 1돈이 전문 20문일 때 돈을 사들여 모은 자들은 1돈이 전문 40문이 되면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원망이 크다면서 반드시 백성들이 재산을 가만히 앉아서 잃게 둘 수는 없다고 하였다.⁸⁷⁾ 결국 이미 환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허적의 의견대로 시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조치는 상평통보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는 동전의 가치 역시 떨어뜨렸기에 이후 상평통보는 시장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

85) 정수환,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 경인문화사, 2013 ; 유현재, 『조선후기 주전 정책과 재정활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86) 『숙종실록』 권8, 숙종 5년 9월 15일(정미).

87) 『숙종실록』 권8, 숙종 5년 9월 16일(무신).

지금까지 목내선이 당시 남인계에서 논의되었던 호패법과 주전, 전문변통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당시 목내선은 소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그의 경세관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목내선은 여러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국가적인 효용성과 활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백성들의 편의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평소 국정에 임하며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그의 기본적인 정책 시행 방향과 중점이 ‘안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그가 가장 많은 정책적 목소리를 냈던 진휼 정책에 대한 검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 당시 탁남 내부에서 정책 결정과 논의는 어떤 주론자의 견해를 따라 당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목내선은 탁남이란 틀로 허적과 같은 무리로 ‘실록의 사평’은 평가하지만 실제 정책 과정에서는 허적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전반적인 정책론은 청남인 허목과 동일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목내선의 정치 참여와 시국과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목내선은 우선 당시 중앙정계에서 온화한 인사로서 여러 정책에 대해 중립적으로 또 타협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내선의 실제 정치참여나 외교관, 사회시책 등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보민과 안민에 우선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보민관에서는 청에 대한 복수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보다는 백성을 우선으로 보호하려는 보민관을, 재정 정책에서는 재실분등 3등급 정식화나 부세 격감 등의 안민관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내선의 정책은 청남계의 수장으로 알려진 허목과 매우 유사한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허목의 정책은 보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미수 허목은 반복벌론의 기반으로 ‘보민의식’을 내세우고 있었으며 호포제 반대와 둔전 혁파

의 배경에는 역시 국가재정의 정상화와 민생의 회복에 그 목적이 있었다.⁸⁸⁾ 그리고 이와 같은 허목의 정책적 판단은 그대로 목내선에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목내선이 일찍부터 허목과 같은 한강 정구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가학의 전통을 잇는 학자적 배경에서 짐작할 수 있다. 허목과 목내선은 상호 간에도 일찍부터 영향을 지니며 성장해 온 관료이기도 했다. 따라서, 숙종대 갑자기 목내선을 탁남으로 설정하여서 허목과 정치적으로 또 과당적으로 대립했다고 설정한 실록의 사평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숙종 초년 당시 남인계 인사들 사이에 정책적 대립과 갈등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청남과 탁남의 정쟁적 분화에 기반한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탁남으로 분류되었던 목내선은 오히려 청남 허목과 정책적 판단을 더 많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더 많은 남인계 관료들에 대해 구체적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상호간의 관계와 당대 근기남인에 대한 활동과 업적의 평가가 시급한 상황이다.

목내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입견은 그가 탁남의 영수이자 인현왕후에 대한 ‘명의죄인’으로서 강력한 남인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목내선은 시종 정치적으로 중도적 입장으로 행보했으며 대외관계에서도 매우 신중한 편이었고, 특히 대민관에 있어서 매우 온화한 안민관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서인에 의해 씌워진 프레임인 인현왕후에 대한 불경죄로 인해 조선 내내 신원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목내선의 당대 정치적 활동을 통해 그간의 목내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목내선을 단지 인현왕후에 대한 죄인이라는 이유로 탁남으로 규정하고, 청남인 허목과 반대했던 숙종 당시의 파국을 이끌어간 정치인이라는, 기존의 견해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실록 사평에 나타난 이와 같은 구분과 평가는 다분히 악의적 시각이라는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목내선은 근기남인의 중진으로서 서인과 남인의 극렬한 분쟁이 있던 환국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남인의 입장이었으나 당론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고, 또한 정책적으로 보민과 안민에 기반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민생을 제일에 두었던 관료였던 것이다.

88) 김준석, 「허목의 예약관과 존군신비론」, 『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3.

2024 호남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신진교수,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다

영조가 경험한 扶社功臣·奮武功臣 회맹제의 의미

발표 : 신진혜(광주과학기술원)

토론 : 문경득(전주대)

영조가 경험한 扶社功臣·奮武功臣 회맹제의 의미¹⁾

신진혜 (광주과학기술원)*

1. 서론
2. 경종 3년(1723) 扶社功臣 회맹제와 왕세제의 參祭
3. 영조 4년(1728) 獻馘禮와 奮武功臣 회맹제
4. 결론

1. 서론

중국 춘추시대의 會盟은 제후들의 화합과 결맹을 도모하고 위엄을 보이기 위해 시행되었다.¹⁾ 『周禮』에 대략적인 會盟祭 절차가 남아 있으며, 唐代에도 吐蕃과 회맹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다.²⁾ 조선의 회맹은 功臣會盟祭로, 錄勳功臣을 중심으로 국가와 왕실을 위협했던 세력을 토역하고 왕실에 충의를 맹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태조가 개성 왕륜동에서 개국공신 자손·동생·사위들과 함께 최초로 시행하였고, 태종 11년(1411) 이후로는 景福宮 神武門 북쪽에서 설행되었다.³⁾ 경복궁 북쪽에 조성되었던 會盟壇은 北壇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1) 본 발표문은 필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고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신진혜, 2015, 「英祖代 凱旋 儀禮의 整備와 그 意義」, 『태동고전연구』 34 ; 신진혜, 2021, 「경종대 신임옥사 이후 부사공신(扶社功臣) 녹훈(錄勳)과 회맹제(會盟祭) 시행」, 『한국학』 163 ; 신진혜, 2021, 「『奮武錄勳都監儀軌』를 통해 본 영조대 奮武功臣 錄勳 과정」, 『조선시대사학보』 99 ; 신진혜, 2022, 「영조 4년(1728) 분무공신(奮武功臣)에 대한 의례적 기념」, 『역사와 현실』 125.

1) 『春秋左傳』, 昭公三年, “令諸侯三歲而聘 五歲而朝 有事而會 不協而盟.”

2) 『周禮』 「秋官司寇」 司盟 ; 『新唐書』 卷231, 「列傳」 第141(下), 吐蕃(下)

3) 『太祖實錄』 卷2, 太祖 元年 9月 28日 丙午. 신명호, 2003b, 「조선시대 공신회맹제」,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454쪽 ; 박용만, 2012, 「조선시대 공신회맹제」, 『특별전 도록: 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286~287쪽.

국가왕실 의례는 정치행위의 일환으로, 절차가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왕·왕세제와 소론 세력 내부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종 3년(1723) 扶社功臣 회맹제와, 영조와 재조소론 세력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조 4년(1728) 奮武功臣 회맹제를 주목할 만하다.

부사공신은 1등, 2등 공신이 없는 상태에서 목호룡 한 사람을 3등 공신으로 녹훈한 사례로, 영조 즉위 후 削勳되어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대 공신과 차이가 있었다. 경종이 즉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론은 연잉군을 왕세제로 삼을 것을 청하고 이어 왕세제가 대리청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소론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론세력이 三手의 방법으로 경종을 시해하려했다는 睦虎龍의 고변이 발생하여 노론은 대대적인 화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신임옥사와 관련하여 시행되었던 부사공신 회맹제는 독특한 의미를 내포하였다.

분무공신은 무신란 진압 이후의 공신녹훈 사례이다. 영조 4년(1728) 戊申亂은 영조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면서 소현세자의 후손인 密豊君 垣을 옹립하려는 목적을 내세우며 경기·충청·경상·전라도에 걸쳐 전국적 규모로 발생했다. 무신란 진압 이후 吳命恒(1673~1728)을 포함한 15명을 奮武功臣으로 녹훈하였는데, 인조대 이괄의 난을 진압하고 30명의 진무공신을 선정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었다. 정미환국과 맞물려 발생했던 무신란과 그 진압과정은 상당히 정치사적으로 복잡한 사정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공신녹훈과 회맹제 시행 과정에서도 온전히 드러났다.

부사공신·분무공신 회맹제는 모두 영조의 정치적 입장을 내포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연결지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의 2장에서는 노론 측에서 지지했던 왕세제와 소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경종이 회맹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었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국의 상황이 어떻게 회맹제를 통해 추상적 형태로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왕세제였던 영조가 소론이 장악한 정국에서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영조 4년의 무신란을 진압하고 반란의 평정과 승리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영조가 주도했던 의례를 순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론 중심의 반란을 재조 소론세력을 중심으로 토벌함으로써 명분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던 과정을 분석하면서 영조가 선노포·헌곡 의례를 구축하고 시행하려 했던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고, 분무공신 회맹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공신의 위상이 공식화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신 관련 의례를 상세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의례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참여자들의 세밀한 정치적 행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종 3년(1723) 扶社功臣 회맹제와 왕세제의 參祭

1) 부사공신 녹훈 과정과 單勳 시행

국가와 왕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은 공훈을 상징하는 勳號를 받고 功臣으로 녹훈되었다. 국왕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을 元勳으로 정하면, 원훈과 대신들이 모여 사건을 수습하는 데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을 공신 녹훈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공로를 감정하는 勘勳을 통해 1등부터 3등으로 공신 등급을 나누어 정하여 勘勳單子에 기록하였다. 국왕은 감훈단자와 함께 공신들이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공적 조서를 올리게 하였고 이를 토대로 녹훈을 허락하였다. 공신으로 정해지고 등급이 구별되는 과정은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공신이 결정되면 공신의 명칭인 훈호를 정하였고, 이어 공신회맹제를 시행하고 공신교서를 내려주었다.⁴⁾ 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대체로 이러한 과정으로 공신 녹훈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경종대 扶社功臣의 녹훈과 회맹제 시행은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경종 원년(1721)의 신축옥사와 경종 2년(1722)의 임인옥사를 계기로 녹훈되었던 부사공신은 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빚어졌다. 노론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경종의 이복동생인 延祔君을 왕세제로 책봉하

4) 勳封을 통해 공신이 된 사람들은 종묘와 문묘의 配享功臣과는 구별되었다. 공신의 녹훈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신명호, 2003a, 위의 책, 가람기획, 315~326쪽. 공신이 공식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특권에 대한 정리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정공식, 2002, 「조선전기 공신지위의 승계-첩자를 중심으로-」, 『법학』 43(2), 264~268쪽.

는 일을 서둘렀고, 仁元王后의 도움으로 왕세제를 책봉한 이후에는 왕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청하게 되면서 경종을 지지하고 있었던 소론 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경종 원년 12월에 소론은 金一鏡(1662~1724)을 疏頭로 노론의 왕세제 대리청정 주장에 대해 노론 4대신[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고,⁵⁾ 이를 계기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구성되었다. 그러던 중 남인계 서얼 睦虎龍(1684~1724)의 고변이 발생하였다. 노론이 숙종 말엽부터 왕세자였던 경종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칼로 시해하거나[大急手] 독약으로 시해하거나[小急手] 혹은 모함으로 폐출하는[平地手] 三手의 방법을 모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8개월에 걸쳐 옥사가 진행되었고 노론 4대신을 포함한 노론 대다수가 화를 입었다.⁶⁾

경종 2년 9월에 역적을 토벌하였다는 사실을 종묘에 고묘하였고,⁷⁾ 공신을 錄勳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歷代로 勳封되었던 공신들과는 달리 신임옥사에 관해서는 역모를 고변한 목호룡 외에는 공신으로 거론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崔錫恒(1654~1724)은 목호룡 한 사람만을 녹훈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전에는 국왕이 먼저 元勳을 정하고 원훈이 녹훈하기에 마땅한 사람을 甚定하면 국왕이 이를 啓下하였지만, 지금은 上變한 목호룡 외에 달리 녹훈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목호룡만 녹훈하고 超資하여 付職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⁸⁾ 이에 대해 중종 2년(1507)에 李頤의 모반을 평정하고 盧永孫(?~?) 한 사람만을 녹훈했던 전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아뢰었다.⁹⁾

목호룡 한 사람만을 녹훈하는 ‘單勳’을 시행하자는 최석항의 의견에

5) 『景宗實錄』 卷5, 景宗 元年 12月 6日 壬戌.

6)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오갑균, 1972, 「景宗朝에 있어서의 老少 對立」, 『淸州教育大學校論文集』 8 ; _____, 1973, 「辛壬士禍에 대하여」, 『淸州教育大學校論文集』 9 ; 정만조, 1983,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진단학보』 56 ; 이희환, 1992, 「경종대의 신축환국과 임인옥사」, 『전북사학』 15.

7) 『景宗實錄』 卷9, 景宗 2年 9月 21日 癸卯.

8) 『景宗實錄』 卷8, 景宗 2年 6月 30日 癸未 ; 卷10, 景宗 2年 10月 5日 丁巳.

9) 하지만 최석항이 선례로 제시한 중종 2년의 定難功臣은 처음부터 노영손 한 사람만을 공신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었다. 중종 2년에는 1등 推誠保社祐世定難功臣 5명, 2등 推誠保社定難功臣 5명, 3등 推誠定難功臣 11명으로 총 21명을 녹훈하였다. 하지만 臺諫이 모역을 고변한 노영손 이외에 推官이나 승지까지 공신으로 녹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려 결국 노영손만을 남기고 모두 개정하였다. (『中宗實錄』 卷4, 中宗 2年 9月 6日 丙午 ; 卷27, 中宗 12年 3月 30日 乙巳) 때문에 이후 최석항이 제시한 중종 2년의 사례는 참고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해 대신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金一鏡은 三手의 逆을 막은 大事에 대해 단혼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략하다는 불평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선조 때 정여립의 난을 다스릴 당시에는 按獄에 참여한 대신들까지 모두 勳錄한 사례가 있었으니 녹훈할 만한 대신들을 더 조사하여 원혼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가 이어지던 중, 김일경은 함원부원군 魚有龜(1675~1740)를 녹훈대상으로 삼자는 뜻을 내비쳤다. 국옥에 참여하였을 때 李三錫의 招辭를 들었는데, 목호룡이 어유귀에게 나라가 멸망할 禍가 임박하니 나라의 變을 방지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어유귀가 ‘그대의 말이 진실로 옳다’며 동의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국옥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다면 목호룡 외에도 녹훈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김일경의 주장에 대해 최석항은 선대에도 국옥에 참여한 대신을 녹훈한 경우는 없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목호룡만 녹훈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한배하 역시 구차하게 사람을 충당하여 녹훈하는 것에 반대하였다.¹⁰⁾

김일경이 원혼으로 내세웠던 어유귀는 경종의 養子를 들여 후사를 도모하려 했던 경종비 宣懿王后 어씨의 부친이었고, 선의왕후는 왕세제의 계승을 부정하는 급소 계열의 김일경과 같은 입장이었다.¹¹⁾ 반면 峻少 계열에 속했던 최석항·趙泰億(1675~1728) 등은 노론에 대한 처벌에는 동의했지만 왕세제의 정통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이었기에 急少 계열인 김일경과는 차이가 있었다.¹²⁾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어유귀를 원혼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하지만 김일경은 결국 어유귀를 命招하여 勘勳할 것을 청하여 윤희를

10) 『承政院日記』 546冊, 景宗 2年 10月 5日 丁巳; 『景宗實錄』 卷10, 景宗 2年 10月 5日 丁巳. 『경종실록』 기사에서 찬자는 김일경이 선대 안옥에 참여했던 대신들을 거론하면서 변란을 방지했던 國舅 어유귀의 녹훈을 제안했던 것은 결국 김일경 자신이 노론 사대신을 四凶으로 논핵하는 상소를 올렸던 疏頭이면서 국옥에 참여하기도 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녹훈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11) 이에 관해서는 최성환, 2020,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61~62쪽.

12) 신임옥사의 진행과정에서 소론 계열은 노론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던 김일경·이진유 등의 급소와 서명균·윤순 등의 완소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중도적 입장을 가졌던 준소 계열인 조태구·최석항·이광좌·이태좌·조태억 등은 노론의 처벌에는 동의하였지만 왕세제의 계승 정통성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급소의 배척으로부터 완소를 보호하려는 입장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근호, 2016, 『조선후기 탕평과 국정운영』, 민속원, 41~42쪽.

얻었는데, 1등 공신으로 결정되었던 어유귀가 녹훈을 사양하면서부터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어유귀는 元勳을 사양하는 일로 상소하고 褊裨를 통해 密符를 바치면서 자신의 뜻을 보였다.¹³⁾ 어유귀는 상소를 올려 김일경이 誣言으로 원훈록에 자신을 1등 공신으로 넣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하였다. 김일경은 목호룡이 어유귀에게 변란의 조짐을 고변했다고 하였는데 어유귀는 목호룡의 실상을 본적이 없음에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꾸며낸 허언을 바탕으로 억지 훈명을 더하였다면서 강력히 녹훈을 거부하였다. 경종은 어유귀의 녹훈은 才德 때문이라며 사양하지 말라고 했지만,¹⁴⁾ 어유귀의 거절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어유귀는 자신의 본직과 겸직을 모두 파직해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원훈을 사양하였고,¹⁵⁾ 수십 차례 將符를 환납하기도 하였다.¹⁶⁾

결국 경종은 어유귀가 겸양하여 원훈을 사양하니 부득이 遞改한다고 비답하였다.¹⁷⁾ 급소 세력과 같은 입장이었음에도 어유귀가 이처럼 원훈이 되는 일을 극도로 거부했던 이유는 그가 실제로는 노론에 속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 비록 어유귀가 정계에서 노론으로써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¹⁸⁾ 경종 원년(1721) 11월에 노론 사대신이 세제 대리청정 주장과 관련되어 파면되자 이들을 伸救하기도 하였다.¹⁹⁾ 때문에 노론 세력이 대대적으로 사사된 신임옥사에 대한 원훈공신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종 3년 1월 최석항은 李森(1677~1735)과 申翊夏(?~1723) 두 捕將을 녹훈 대상으로 거론하였다. 이들은 三手[大急手·小急手·平地手] 가운데 췌로 들어가 검으로 경종을 시해한다는 大急手와 상궁에게 銀을 주어 약을 타게 해서 시해한다는 小急手に 해당하는 증거를 적발한 바 있다. 이삼은 贓物을 수색할 당시 칼과 은화를 발견했고, 신익하는 삼수 가운데 독약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던 중 洪舜澤의 중 業奉을 체포하여 약을 판 사람의

13)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5日 丙戌.

14)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5日 丙戌; 『景宗實錄』 卷10, 景宗 2年 11月 11日 壬辰.

15)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17日 戊戌.

16) 『景宗實錄』 卷10, 景宗 2年 11月 17日 戊戌; 景宗 2年 11月 18日 己亥.

17)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17日 戊戌.

18) 李建昌, 『黨議通略』 景宗朝.

19) 『景宗實錄』 卷5, 景宗 元年 12月 7日 癸亥. 다만 『景宗實錄』의 史臣은 어유귀가 노론을 위해 청을 올렸다고는 해도 그것이 본심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성명과 약의 刑色에 대해 밝혀내었다. 영의정 趙泰壽(1660~1723)는 이삼과 신익하를 감훈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지만, 판의금 沈檀(1645~1730)은 두 포장을 녹훈하는 것 역시 단출하니 대신을 녹훈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논의 끝에 최석항의 의견대로 1등 이삼, 2등 신익하, 3등 목호룡으로 결정되었다.²⁰⁾

그 과정에서 녹훈도감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못한 훈호를 속히 정해줄 것을 청하였고, 예문제학 李肇(1666~1726)로 하여금 훈호를 選定하도록 하였다.²¹⁾ 훈호는 ‘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로 결정되었다.²²⁾ 1등부터 3등까지의 공신이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10자의 훈호를 찬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삼과 신익하는 어유귀와 마찬가지로 소를 올려 녹훈을 사양하였다.²³⁾ 이삼을 누차 牌招하였지만 이삼은 응하지 않았는데,²⁴⁾ 이러한 이삼을 從重推考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²⁵⁾ 최석항은 사양하는 이삼과 신익하에게 엄하게 責諭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²⁶⁾

이런 상황에서 정언 金重熙는 원훈을 다시 정할 것을 아뢰었다. 舊例에 따르면 녹훈할 때 국왕이 먼저 원훈을 정하고 원훈으로 하여금 序次를 정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공신은 경종이 친히 정한 것이 없고 대신의 陳達에 근거하여 이삼과 신익하를 공신으로 정했기 때문에 전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구차하게 작은 공로로 녹훈하여 국가의 盛典을 초라하게 미봉하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삼과 신익하를 녹훈하라는 명은 거두고 경종이 직접 원훈을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⁷⁾

경종은 따르지 않다가 승지 吳命恒(1673~1728)이 이삼과 신익하는 죄인을 잡아온 軍官일 뿐인데 녹훈하는 것은 전례에 위배되니 勘錄을 다시 정할 것을 진달하고서야 명을 환수하였다.²⁸⁾ 결국 녹훈을 다시 정하고 회맹

20) 『景宗修正實錄』 卷4, 景宗 3年 1月 25日 乙巳.

21) 『承政院日記』 549冊, 景宗 3年 1月 27日 丁未.

22)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1月 27日 丁未 ; 『景宗修正實錄』 卷4, 景宗 3年 1月 25日 乙巳.

23)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2月 3日 癸丑 ; 景宗 3年 2月 5日 乙卯.

24)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2日 壬子 ; 景宗 3年 2月 3日 癸丑.

25)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3日 癸丑 ; 景宗 3年 2月 5日 乙卯 ; 景宗 3年 2月 7日 丁巳.

26)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2月 5日 乙卯.

27)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2月 8日 戊午.

28)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2月 12日 壬戌 ;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12日

제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어졌다.²⁹⁾ 회맹제 이의는 2월 11일, 회맹제는 2월 15일로 정해져 있었지만 臺臣들이 1·2등 공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회맹제는 다시 미루어서 날짜를 정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³⁰⁾

예조판서 李師尙(1656-1725)은 경종이 직접 하교하여 勘勳할 것을 청하였는데, 경종은 이를 최석항에게 하순하였다. 최석항은 처음부터 원훈으로 합당한 사람이 없었고 그 중에 공로가 드러났던 사람이 이삼과 신익하였는데 대신들이 삭훈하게 하였으니, 중종대의 노영손의 예에 따라 단훈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하였다. 조태구도 단훈으로 감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행사직 심단은 목호룡이 처음에는 역모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원훈으로 삼는 것은 사체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는데, 최석항은 역모를 上變한 사람이 同盟할 수 없다면 녹훈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경종은 목호룡을 공신으로 삼아 단훈으로 감정할 것을 명하였다. 반복되는 녹훈 거부와 회맹제의 退定은 도리어 국체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졌고, 목호룡 한명을 단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³¹⁾ 이에 따라 회맹제 시행 날짜는 3월 12일로 다시 정해졌다.³²⁾ 경종대의 부사공신은 목호룡 이외의 공신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맹제는 경종 2년 11월 초9일로 정해졌다가 이후 세 차례나 연기되었는데, 사신 입경 시기와 맞물리는 문제로 미뤄진 사례한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공신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³³⁾

2) 왕세제의 회맹

壬戌.

29)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10日 庚申.

30) 『承政院日記』 550冊, 景宗 3年 2月 10日 庚申; 景宗 3年 2月 11日 辛酉.

31)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2月 18日 戊辰; 『承政院日記』 551冊, 景宗 3年 2月 18日 戊辰.

32) 『承政院日記』 551冊, 景宗 3年 2月 21日 辛未; 『會盟祭曆錄』(奎12872), 癸卯 2月 21日.

33) 이러한 경향은 인조 24년(1646)의 寧國功臣 회맹이 훈호 지정, 회맹제의 시행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두서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조 24년 9월 3일에 거행되었던 寧國功臣 회맹제의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신명호, 2003b, 위의 책, 집문당, 453~454쪽.

공신을 녹훈하고 사건을 마무리짓는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의식이 회맹제였다. 회맹제는 『國朝五禮儀』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국초부터 누적된 권위를 가진 의식이었고, ‘祭天告由’의 절차를 갖추었는데, 국왕이 친히 新舊功臣의 자손들과 더불어 입가에 피를 바르며 맹세하는 의식이었기에 중요하고 신성하게 여겨졌다. 경종 2년에 조정에서 녹훈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신을 포함시키려 하거나 단훈으로 결정하는 것을 꺼렸던 이유 중 하나는 회맹제와 관련되기도 하였다. 상징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합의되지도 못한 채 한 사람의 서열 출신 공신을 위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것이다.

공신 녹훈은 계속 미뤄졌지만 회맹제를 위한 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경종 2년 11월 1일에 한성부로 하여금 각 부를 통솔하고 신무문 밖에 회맹제를 시행할 회맹단을 수축하도록 분부하였다.³⁴⁾ 한성부에서는 守宮內官과 함께 경종이 회맹단으로 거동할 때 광화문부터 막차에 이르는 길에 있는 잡목들을 베고 광화문과 신무문의 防禦를 헐기로 하였다.³⁵⁾ 경종이 출궁과 환궁을 하는 도로는 庚申年, 즉 숙종 6년(1680) 保社功臣의 사례에 따라 경복궁 안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侍衛하는 것 역시 경신년의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하였다.³⁶⁾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유귀의 녹훈 거부로 처음 회맹제가 미루어졌고, 이삼과 신익하 역시 연이어 녹훈을 거부하여 회맹제 길일을 다시 잡아야 했다.

부사공신 회맹제의 준비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왕세제의 참여 여부이다. 노론은 建儲문제를 서두르고 왕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요청하여 신임옥사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왕세제는 위태로운 입장이었다. 게다가 목호룡의 공초 과정에서 왕세제를 언급한 내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세제는 왕세제의 자리를 辭位하려고 하고, 朝臣의 肅拜單子 捧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³⁷⁾ 하지만 세제사 조태구와 설서 宋寅明(1689~1746)이 왕세제를 안심시켜 사위를 막고 숙배를 받도록 하였다.

34)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1日 壬午.

35)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2日 癸未.

36) 인조 24년(1646) 병술년에는 국왕의 이동경로를 경복궁 성문 밖으로 통하게 하였고 숙종 6년(1680) 경신년[保社功臣]에는 경복궁 안으로 통하게 하였기에 선례가 두 가지였는데, 이 가운데 경신년의 사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2日 癸未 ; 景宗 2年 11月 3日 甲申.

37) 『景宗實錄』 卷6, 景宗 2年 3月 29日 甲寅.

조태구는 경종에게 불안해하는 왕세제를 안심시켜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³⁸⁾

이러한 상황에서 경종 2년 10월에 처음 회맹제를 계획할 당시 경종은 회맹제 절차 가운데 왕세제 隨駕節目은 마련하지 말도록 하였다.³⁹⁾ 이것은 회맹제 시행에 왕세제가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인데, 신임옥사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목호룡이 왕세제와의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차단했던 경종의 태도와 관련지어 본다면 왕세제의 입장을 배려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녹훈문제로 회맹제를 미루게 된 다음날인 경종 2년 11월 4일, 시강원에서 경종이 회맹제를 친행할 때 왕세제가 隨駕하겠다고 하령했음을 밝혔고 경종은 이를 윤허하였다. 이에 예조에서는 왕세제가 수가하는 절목을 추가하고, 왕세제의 齋室을 조성하도록 하였다.⁴⁰⁾ 회맹에 왕세자가 참여하는 것은 선례가 있었지만,⁴¹⁾ 영조 4년(1728)의 회맹제에 왕세자가 건강문제로 隨駕만 하고 參祭는 하지 않았던 사례를 본다면 세자의 참여는 필수요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세제가 노론을 역적으로 규정하는 회맹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소론이 장악한 정국에 대한 ‘표면적인’ 연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조가 즉위 후 부사공신을 삭훈하고 자신이 회맹제에 갔던 것은 오직 경종을 위한 일이었음을 거듭 강조한 것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⁴³⁾

경종 3년 부사공신 회맹제 당시, 王世弟도 隨駕하고 제사에 참여하였는데, 『경종실록』의 행례 기록에서는 왕세제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왕세제 판위의 설치나 헌작, 배례 등의 절차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말미에 ‘王世弟亦隨駕參祭’라 기록하여, 왕세제가 수가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했었다는[參祭] 사실을 밝혔다.⁴⁴⁾ 비록

38) 『景宗實錄』 卷7, 景宗 2年 4月 9日 癸亥.

39) 『承政院日記』 546冊, 景宗 2年 10月 27日 己卯.

40)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5日 丙戌; 『會盟祭膳錄』(奎12872), 壬寅 11月初4日.

41) 세조 13년의 회맹제는 왕세자가 주도하였고(『世祖實錄』 卷44, 世祖 13年 10月 27日 己未), 인조 6년 9월의 회맹제에는 왕세자가 면복 차림으로 참여하였다(『仁祖實錄』 卷19, 仁祖 6年 9月 13日 庚午).

42) 『承政院日記』 662冊, 英祖 4年 5月 17日 丁卯.

43) 『承政院日記』 767冊,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英祖實錄』 卷71, 英祖 26年 1月 23日 丁卯.

44)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3月 11日 庚寅. 부사공신은 영조 즉위 후 僞勳으로 간주되

구체적인 왕세제의 행례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회맹제 이후 논상하는 과정에서 왕세제 봉규관 필선 柳萬重, 봉혈관 宋寅明이 언급되었던 사실을 통해 왕세제가 회맹제에 참여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뿐만 아니라 왕세제가 영조로 즉위한 이후 당시의 일을 술회하는 내용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영조 9년(1733), 영조는 자신이 왕세제로서 匙로 삼혈하였던 사실을[以匙敵血] 언급한 바 있다.⁴⁶⁾ 영조는 자신이 당시 회맹제 자리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회맹제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종을 따라서 간 것’이라고 술회하였다.⁴⁷⁾ 자신이 분명 경종 3년의 회맹에 참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 이유가 ‘회맹제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노론을 역적으로 규정하는 회맹제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조 26년(1750) 승지 朴弼載에게 목호롱에 대해 물었는데, 박필재는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며, 목호롱이 녹훈되고 封君되었던 일에 대해 말했다. 이에 대해 영조는 회맹제에 참석했던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會盟祭 때에 내가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내가 간 것은 뜻한 바가 있어서였다. 甘露·斬石의 뜻이었다. 고 좌상[송인명]이 피를 받아 가지고 오다가 내가 잔[酒盃]을 든 것을 보고 놀라는 빛이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상을 모시고 회맹에 나왔는데 어찌 잔을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予陪聖上而來盟, 安得不舉盃乎?]' 라고 하였는데, 고 좌상의 놀람

었고, 이에 대한 기록물은 대부분 영조대에 삭제되었는데, 『경종실록』의 행례기록 역시 영조대에 『경종실록』을 편찬할 당시 고의적으로 왕세제와 관련된 행례 사항들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45) 『景宗實錄』 卷12, 景宗 3年 6月 21日 戊辰.

46) 『承政院日記』 767冊,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英祖實錄』 卷36,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以匙敵血’에서의 ‘匙’는 글자 그대로 손가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會盟祭膳錄』 壬寅 10月 29日의 기록을 바탕으로 삼혈용 피를 담은 은쟁반[敵血銀鉢] 1개, 자기접시[磁帖匙] 30개를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壬寅 11月 初2日의 기록에서 전하[경종]의 삼혈에 사용할 자기접시[殿下敵血時所用磁帖匙] 1立과 肆儀에 사용할 자기접시 5立에 대해 거론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교차 대조해 본다면,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의 ‘匙’는 손가락이 아니라 삼혈에 소용되는 자기접시[磁帖匙]를 표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會盟祭膳錄』(奎12872), 壬寅 10月 29日; 壬寅 11月 初2日.

47) 『承政院日記』 767冊,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英祖實錄』 卷36, 英祖 9年 10月 27日 乙亥. 會盟祭時, 卿不爲奉血乎? 予則以匙敵血, 非參於會盟也, 乃隨景廟而往, 卿猶不知予心矣.

은 참으로 뜻이 있는 일이었다.”

이렇듯 영조는 자신이 회맹제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뜻한 바가 있어 그 자리에 나아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왕세제 봉혈관이었던 송인명은 혈반을 가지고 오다가 충의를 다지는 삼혈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잔을 잡고 있는 왕세제를 보고 놀라는 얼굴을 보였고,⁴⁸⁾ 영조는 경종을 모시고 회맹에 나왔기에 잔을 들었다고 말했다.⁴⁹⁾ 이처럼 영조는 자신이 경종 3년의 회맹제에 자신이 참여한 것은 오로지 경종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왕세제의 회맹제 참여는 왕위 후계자로서 경종에 대한 충심은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정국을 장악한 소론에 대한 ‘표면적인’ 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⁵⁰⁾ 경종의 배려로 충분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의 사사, 소론의 득세라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존해야 했던 왕세제는 회맹제에 나아감으로써 경종을 중심으로 한 조정에 대해 균열을 일으킬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듯 왕세제까지 참여한 가운데 부사공신 회맹제가 마무리되었고, 녹훈도감에서는 목호룡을 單錄 3等으로 하고 훈호는 6글자로 할 것을 계품하여 경종의 허락을 얻었다. 앞서 1:2:3등 공신을 엄두에 두고 훈호를 ‘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의 10글자로 정했는데, 여기에서 ‘竭誠效力’ 4글자를 감해 ‘輸忠奮義扶社’ 6글자만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⁵¹⁾ 경종은 인정전에 입어하여 鹵簿와 鼓吹를 벌여두고 목호룡에게 功臣敎書를 내렸다.⁵²⁾

48) 『英祖實錄』 卷71, 英祖 26年 1月 23日 丁卯. 『영조실록』의 史臣은 송인명이 당시 잔을 들고 있는 왕세제를 보고 놀라워한 것은 거짓이고, 후일을 위한 계략이었다고 적고 있다.

49) 회맹제는 친림 單酌의 형식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경종 이외에는 獻爵을 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여기서 왕세제가 들었던 잔은 헌작을 위한 술잔이라기보다는 삼혈에 쓰인 자기접시를 표현했을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다.

50) 선행 연구에서는 불안한 입장의 왕세제를 조태구와 송인명이 위안하였고, 왕세제가 이들을 따라던 사실을 통해 왕세제가 당시 세력을 장악하게 되었던 소론 측과 연결을 맺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종 2년 4월에 이르러 소론의 정국주도가 굳어진 가운데 왕세제로서는 소론측과의 관계를 완만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종과 소론 측에서도 왕세제를 안정시키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론과 왕세제의 연결이 있었다고 정리하였다. 홍순민, 2017, 『영조, 임금이 되기까지』, 놀와, 195~196쪽.

51)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3月 12日 辛卯.

52)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3月 13日 壬辰.

우부승지 朴熙晉이 계를 올려 외방에서 상경한 공신적장들이 오랫동안 수도에 머무르면서 식량이 동났을 테니 선례에 따라 糧資를 지급해주도록 청하였고 경종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⁵³⁾ 그리고 70세 이상이거나 병든 사람 외에 회맹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문하는 일에 대해서도 논의되었고,⁵⁴⁾ 선례에 따라 廢疾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맹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맹록의 말단에 기록하고 불참한 사유를 기록하기로 하였다.⁵⁵⁾ 이 외에도 전례에 따라 신구 공신적장들에게는 表裏를 내려주고,⁵⁶⁾ 회맹제에 進參한 총 58명의 공신적장에게 賞格을 내려주었다는 別單을 확인할 수 있다.⁵⁷⁾

회맹제와 교서관장에 이어 會盟宴(혹은 餘福宴)이 진행되었는데, 경종 2년 회맹제를 계획할 당시부터 흉황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선례에 따라 權停으로 행하도록 정하였다.⁵⁸⁾ 그리고 회맹제에 참석한 신구공신들을 殿庭으로 모아서 제사 후 남은 고기와 술을 나누어주기로[祭餘酒肉分饋] 계획한 바에 따라⁵⁹⁾ 경종은 승지들을 보내어 盟祭의 餽餘를 仁政殿의

53) 『承政院日記』 552冊, 景宗 3年 3月 13日 壬辰.

54) 『承政院日記』 552冊, 景宗 3年 3月 21日 庚子 ; 景宗 3年 3月 22日 辛丑.

55) 『承政院日記』 552冊, 景宗 3年 3月 25日 甲辰 ; 553冊, 景宗 3年 4月 2日 辛亥. 현진하는 회맹축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분석은 다음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박성호, 2017,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의 옛 맹약을 지키다』, 한국학중앙연구원.

56) 『六典條例』에 따르면 신구 공신적장에게 내려주었던 表裏는 水紬 혹은 木綿였다. 『六典條例』 卷1, 吏典 忠勳府 會盟. 경종 3년 4월 12일에 呂必容이 표리를 賜給해야 한다고 집계했던 공신자손의 元數는 189-190명이었다. 『承政院日記』 553冊, 景宗 3年 4月 12日 辛酉.

지역	京居	京畿	江原道	忠清道	黃海道	全羅道	慶尙道	平安道	총계(*)
수	63	80	8	23	6	6	3	1	190

* 呂必容은 인원이 총 189명이라고 보고했지만, 지역별로 나열한 수를 총합하면 190명으로 집계된다. 아마 당시 집계 혹은 인원집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7) 『昭代雜錄日記(坤)』(古4206, 규장각 소장), 會盟祭進參人員功臣嫡長賞格別單 [壬寅 11月初9日] 金重剛, 許 增, 南泰徵, 申弼夏, 趙復命, 張震燁, 李時遇, 李世胃, 韓圭星, 洪應夢, 魚史彬, 具聖弼, 崔 潮, 金可教, 洪禹宗, 吳萬復, 車鶴周, 金聖履, 崔弘相, 李昌遠, 辛 裕, 洪舜元, 朴廷元, 申 濩, 權壽縉, 李思弼, 李 樟, 韓 珪, 權 最, 李衡東, 南蓋華, 金東禧, 沈 玩, 李齊白, 張拱辰, 柳 儼, 元景濂, 俞建基, 趙持重, 韓世, 沈義祖, 沈明哲, 崔弘輔, 南正夏, 韓世貞, 魚就源, 柳 述, 柳應瑞, 沈宗賢, 具 赫, 黃 綜, 權 學, 申 濬, 申德夏, 李鼎和, 咸陵君, 申聖夏, 尹 淵. (*기록된 그대로 작성하였다.)

58) 『承政院日記』 546冊, 景宗 2年 10月 29日 辛巳. 숙종 6년(1680)에 경비가 고갈되어서 회맹연을 임시로 정지하였는데, 당시 舊功臣의 嫡長이 모두 연회에 참여할 것을 감안해 계산했던 경비가 10000兩이었다. 『肅宗實錄』 卷10, 肅宗 6年 8月 3日 己未.

59)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3日 甲申 ; 『會盟祭臚錄』(奎12872), 癸卯 2月初 2日.

뜰에서 공신들에게 내려주었다.⁶⁰⁾

경종 3년 6월에 이르러 회맹제에서 행례했던 사람들에 대해 상전을 내렸다. 찬례였던 판서 李肇, 봉혈관이었던 승지 朴熙晉, 독서문관이었던 尹筵, 왕세제 봉규관이었던 필선 柳萬重, 왕세제 봉혈관이었던 宋寅明을 모두 加資하고 나머지는 각각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⁶¹⁾ 원래 어전과 왕세제, 공신에 대한 봉혈관을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 加資하려 했으나, 이 조판서 유봉휘가 일시에 25명이 승서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니, 어전 봉혈관만 陞敍하고 여러 공신 봉혈관은 말을 하사하는 데 그쳤던 경신년 회맹의 선례를 참고하라는 상소를 올렸다.⁶²⁾ 이에 따라 국왕과 왕세제의 봉혈관을 맡았던 사람들만 승서하고 나머지는 말[馬]을 지급하였다.⁶³⁾

이처럼 국왕을 위해하려했던 모역을 평정하고 공신들과 더불어 충의를 맹세하는 의식의 중심에 경종이 있었고, 노론의 역모를 고변한 공로를 세운 대표자로 목호룡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왕세제는 경종에 대한 충의는 물론 정국을 장악한 소론세력과의 표면적 공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사공신의 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경종이 재위 4년만에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게 된 후 정국의 상황은 다시금 급변하였다. 소론에 의해 배제되어 있었던 노론이 조정에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소론 측에 보복을 가하고 정치적 명분을 되찾기 위해 움직였던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 영조 역시 노론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론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⁶⁴⁾ 영조 즉위년(1724) 12월, 신임옥사를 주도하고 공신 녹훈에 있어 주도적인 움직임 을 보여주었던 김일경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였다.⁶⁵⁾ 그리고 유일한 공신으로 녹훈되었던 목호룡은 김일경과 함께 당고개에서 不待時處斬되었는데,⁶⁶⁾ 영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호룡의 음흉한 정상을 팔방에 알리지

60) 『景宗實錄』 卷11, 景宗 3年 3月 13日 壬辰. 이를 『승정원일기』에서는 會盟宴, 『경종실록』에서는 餘福宴이라 표현하였다.

61) 『景宗實錄』 卷12, 景宗 3年 6月 21日 戊辰.

62) 『承政院日記』 556冊, 景宗 3年 7月 22日 己亥.

63) 『承政院日記』 557冊, 景宗 3年 8月 4日 辛亥.

64) 이에 대해서는 정만조, 1983,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진단학보』 56 ; 허태용, 2013, 「『景宗實錄』을 통해서 본 少論의 정치 義理 검토」, 『민족문화연구』 60 ; 이근호, 2016,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민속원.

65) 『英祖實錄』 卷2, 英祖 卽位年 12月 4日 癸酉.

않을 수 없으며, 목호룡의 首級을 西小門 밖에 내걸고 四肢를 따로 잘라서 사흘 후 머리와 수족을 八路에 돌려 전시하였다.⁶⁷⁾ 이후 영조는 신임 옥사를 무옥으로 판정하고⁶⁸⁾ 부사공신의 훈적 역시 僞勳으로 간주하고 削去하였다.⁶⁹⁾

반면에, 경종대에 공신으로 추천되었던 어유귀와 이삼, 신익하는 부사공신이 되기를 거부했기에 영조 즉위 후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어유귀는 공초 과정에서 목호룡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거론되었고, 영조가 즉위한 후 조정에서 어유귀가 왕세제를 세울 때 불만을 품었고 목호룡과 내통한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⁷⁰⁾ 영조는 그를 국구로서 예우하였다. 이삼과 신익하는 옥사 당시 수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은자와 검을 찾았고 약에 대한 정황을 밝혔다는 점에서 신임옥사와 연루된 상황이었다. 영조 즉위년에 신임옥사 관련자들을 나국할 때 영조가 정상을 참작해서 이삼을 영남에 유배시켰다. 그리고 영조 3년에 이삼은 자신이 신축년과 임인년에 수색을 담당했던 일에 대해 변론하였는데 영조는 이삼이 무함당한 일을 알고 있다고 위유하였다.⁷¹⁾ 이삼은 영조 4년에 무신난을 평정하는데 관여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奮武 2등 공신으로 녹훈되었다.⁷²⁾ 신익하는 영조가 즉위하기 전 경종 3년에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영조대에 편찬된 『경종실록』에 수록된 신익하의 졸기에 ‘사람됨이 단정하였고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여 법도를 지켰다. 軍心을 깊이 얻어 武將 가운데 비교할 만한 사람이 드물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겁게 의지하였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보아 영조대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³⁾

정리하자면, 부사공신 회맹제는 3등 공신 한 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독특한 사례였고, 경종과 왕세제가 참여하여 당시 정국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왕세제의 참여는 소론 중심의 정

66) 『英祖實錄』 卷2, 英祖 卽位年 12月 8日 丁丑.

67) 『英祖實錄』 卷2, 英祖 卽位年 12月 10日 己卯.

68) 『英祖實錄』 卷4, 英祖 元年 3月 25日 癸亥.

69) 『英祖實錄』 卷7, 英祖 元年 8月 11日 丙子. 영조가 즉위 이후 임인옥사를 번복하고 노론을 신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태용, 2013, 위의 논문, 288~289쪽.

70) 『英祖實錄』 卷5, 英祖 元年 4月 29日 丙申.

71) 『英祖實錄』 卷12, 英祖 3年 8月 7日 庚寅.

72) 『英祖實錄』 卷17, 英祖 4年 4月 29日 己酉.

73) 『景宗實錄』 卷12, 景宗 3年 4月 17日 丙寅.

국에 대한 표면적 연대의지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영조는 즉위 후 부사공신을 삭훈하고 김일경·목호룡을 처단하였고 자신이 회맹제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는 노론과의 단절 혹은 소론과의 진정한 공조가 아닌 경종에 대한 충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며 스스로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3. 영조 4년(1728) 獻馘禮와 奮武功臣 회맹제

1) 선노포·헌곡 의례의 시행

즉위 초엽, 영조는 노론에 의해 즉위했지만 소론의 지지를 받았던 경종으로부터 이어지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위 초에 이광좌(李光佐, 1674~1740), 유봉휘(柳鳳輝, 1659~1727) 등을 중용하여 소론 중심의 재상을 구성하였다.⁷⁴⁾ 영조는 충역 시비를 요구하는 노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와 소론에 대한 탄압을 억제하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론의 지나친 요구가 지속되자 영조는 영조 3년(1727) 민진원 이하 노론세력을 파면하고 이광좌 등의 소론을 등용하는 정미환국으로 조정의 분위기를 변화시켰다.⁷⁵⁾

그런데 영조 4년(1728) 3월 14일에 봉조하 최규서(崔奎瑞, 1650~1735)의 급변으로 무신란의 발발이 조정에 알려졌다.⁷⁶⁾ 정미환국으로 소론 세력이 조정에 복귀한 상황에서, 일부 조정 밖의 소론세력을 중심으로 발생한 무신란은 재조 소론에게 위기를 가져다주었다. 소론이었던 병조판서 오명향이 적을 토멸하고 오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은 그러한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영조는 영의정 이광좌에게 병조판서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였는데, 소론계 원로격인 이광좌에게도 무신란 진압에 동참할 기회를 열어준 것이었다. 그러자 이광좌는 관(冠)을 벗고 뜰아래에 내려가 固辭하였는데, 영조가 그의 손을 잡고 돈유하고나서야 이광좌는 겸직을 받아들였다.⁷⁷⁾ 이처럼 영조는 소론세력이 직접 무신란을 진압하는 일을 적극 독

74) 『英祖實錄』 卷1, 英祖 卽位年 10月 3日 癸酉

75) 이에 관해서는 정만조, 2003,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311~324쪽

76) 『英祖實錄』 卷16, 英祖 4年 3月 14日 甲子

려하였는데, 소론의 조정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경종으로부터 이어지는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고, 무신란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방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⁷⁸⁾

무신란은 단시간 안에 진압되었지만 반군은 왕세제가 경종을 독살한 혐의에 대한 복수를 무신란의 명분으로 삼았고, 소현세자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⁷⁹⁾ 반란을 진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무신란이 영조의 정통성에 입힌 타격이 컸다. 때문에 영조는 혼란스러워진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역자들의 죄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반역을 진압한 관군에 대한 승리를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의례적 행사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시행된 것이 바로 선노포·헌괵 의례였다.

선노포·헌괵은 정벌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을 알리기 위해 시행되는 군사 의례이다. 露布는 봉하지 않고 늘어뜨려 여러 사람에게 사건의 전말과 승리 사실을 기록하여 알릴 수 있게 만든 문서였다. 그리고 獻馘은 전투 과정에서 죽인 적의 수급이나 왼쪽 귀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선노포·헌괵의례는 『국조오례의』에 등재되지 않은 의례였지만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을 진압했을 당시 공주 행재소에서 시행되었고, 이후로는 시행되지 않다가 영조 4년에 다시 시행된 것이었다.

영조는 난을 진압한 후 오명항이 서울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헌괵례를 시행하고자 하였다.⁸⁰⁾ 재야의 소론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무신란을 소론인 오명항이 제압했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명항이 직접 의례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선산부사 박필건(朴弼健, 1671~1738) 등이 거창에서 목 벤 반란군 정희량(鄭希亮)·이응보(李熊輔) 등의 수급[馘]을 소금에 담가서 올릴 것을 명하였다.⁸¹⁾ 소금에 담근 정희량·이응보·나송곤(羅崇坤)의 수급이 도착하자 이것을 훈련도감의 화약고 안에 보관하였다.⁸²⁾ 이들의 세 수급은 헌괵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기에 헌괵례를 행하기 전까지 보관하다가 헌괵 의례 시행 당일 이른 아침에 오명항이 머무르는 軍中으로 보내어 직접 가져오게

77) 『英祖實錄』 卷16, 英祖 4年 3月 17日 丁卯

78) 이에 관해서는 허태용, 2014, 앞의 논문

79) 李建昌, 『黨議通略』 「英祖朝」

80) 『承政院日記』 659冊, 英祖 4年 4月 9日 己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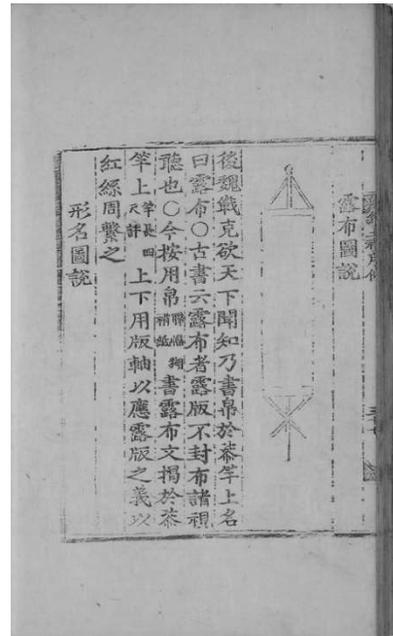
81) 『英祖實錄』 卷17, 英祖 4年 4月 2日 壬午 ; 英祖 4年 4月 9日 己丑

82) 『英祖實錄』 卷17, 英祖 4年 4月 13日 癸巳

하였다.⁸³⁾ 영조는 노포 의례 역시 오명항이 돌아올 때 거행하도록 하며, 노포문은 지제교 정우량(鄭羽良, 1692~1754)이 지어서 오명항에게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⁸⁴⁾ 오명항은 4월 18일에 거느린 군병을 이끌고 먼저 승례문 밖에 이르러 머물면서 수급을 바칠 시각을 기다리겠다고 장계를 올렸다.⁸⁵⁾

영조 4년 4월 19일(己亥)에 선노포·헌괘의례를 거행하였다. 영조는 융복을 입고 출궁했고, 광충교에 이르렀을 때는 승지 두 명을 시켜 구경하는 백성들에게 큰 변란이 진압되었으니 안심하라는 말로 그들을 깨우쳐주게 하였고, 백성들은 춤추며 기뻐하였다. 영조는 구경하는 백성들을 막지 말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하였는데,⁸⁶⁾ 이는 의례가 보여주는 장엄한 분위기를 통해 국왕이 승리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리고, 백성을 위무하여 안심시키려는 것이었다.

오명항이 군대를 정돈하여 조정으로 돌아와 남쪽 성 밖에 진을 쳤는데, 영조가 승례문의 문루에 올라가서 영접하였다. 그리고 오명항이 정우량이 지은 노포문을 肅靜牌 아래에서 받들어 올렸는데 이를 우부승지 정석오(鄭錫五, 1691~1748)가 받아서 올렸다. 노포문을 바친 데 이어 헌괘례를 거행했는데, 오명항이 황금 투구에 붉은 갑옷을 입고 꿇어앉아 이용보·정희량·나송곤의 세 수급을 담은 수급함(首級函)을 壇下에서 올렸다. 관의금 김흥경(金興慶, 1677~1750)이 이를 받아 壇 위에 진열하였고 이광좌가 수급을 받은 뒤 문루로 올라가 복명하였다. 이광좌가 “동쪽이 이용보, 가운데가 나송곤, 서쪽이 정희량입니다. 역적의 수급이 오래되어 썩고



<그림 1> 『국조속오례의서례』(K2-476002) 권1, 「노포도설(露布圖說)」

83) 『承政院日記』 660冊, 英祖 4年 4月 18日 戊戌

84) 『備邊司謄錄』 英祖 4年 4月 17日 丁酉 ; 4月 18日 戊戌

85) 『奮武錄勳都監儀軌』 (上), 「狀啓秩」 英祖 4年 4月 16日 ; 4月 18日

86) 『承政院日記』 660冊, 英祖 4年 4月 19日 己亥

이지러져서 모두 형상이 없습니다. 정희량의 수급은 형상이 조금 남아있고 머리카락은 다 떨어져서 장대에 매달 수가 없으니, 가는 그물[細網]로 둘러서 매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조는 모두 그렇게 장대에 매달라고 명하였다.⁸⁷⁾

역적의 수급은 썩고 이지러진 모양으로 영조 앞에 바쳐졌는데, 이를 통해 왕실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말로를 처참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이후에 시행되었던 공신회맹제는 회맹단에서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반면, 선노포·헌곡 의례는 백성들에게까지 승리의 결과를 과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이후 환궁하기까지 영조는 기쁨과 감격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예가 끝나자 영조는 환궁하여 오명항과 출정했던 중군별장에게 모두 선정전으로 입시시키고, 출정했던 군졸들은 대궐 문밖에서 犒饋하라고 명하였다.⁸⁸⁾

무신란 진압 이후 시행되었던 선노포·헌곡 의례는 이후 『唐開元禮』와 『明集禮』를 참고하여 형식을 재정리하여 영조 20년에 『속오례의』를 편찬할 때 「군례」조에 수록했다. 다만 『속오례의』에 수록된 「선노포의」는 영조 4년에 실제로 행해졌던 의례를 그대로 수록한 것이 아니다. 『속오례의』 「선노포의」 말미에 적혀있는 서술을 바탕으로 개수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⁸⁹⁾

“인조 갑자(1624)에 역적을 토벌하고 공주에서 곡(馘)을 받을 때 처음으로 이 의식을 행하였다. 금상(今上) 무신(1728)에 역적을 토벌하고 남루에서 곡을 받을 때 다시 준용하였다. 갑자년과 무신년에는 의절을 널리 고증할 수 없었고, 내용도 많이 미비하였다. 지금 갑자에 다시 성교에 따라 『개원례』와 『대명집례』의 「선노포헌곡의」를 참고하여 절목을 첨가하고 수정하였다.”

영조 20년 『속오례의』를 구상할 당시 논의한 내용에서도 ‘무신년에 행해졌던 헌곡례는 『국조오례의』에 없었기 때문에 이정구의 문집에 남아있는 수곡도를 참고했다’고 적고 있다.⁹⁰⁾ 이러한 사실과 위 인용문을 바탕

87) 『承政院日記』 660冊, 英祖 4年 4月 19日 己亥

88) 『承政院日記』 660冊, 英祖 4年 4月 19日 己亥

89) 『續五禮儀』 卷4, 「軍禮」 ‘宣露布儀’

90) 『承政院日記』 974冊, 英祖 20年 7月 8日 癸未

으로 이해한다면 『당개원례』와 『명집례』에 수록된 「平蕩寇賊宣露布」 의주와 「선노포·헌부」 의주를 바탕으로 영조 4년에 시행했던 선노포 의례를 개정하여 『속오례의』에 수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분무공신 선정과 의미

헌칙을 시행한 다음 날, 영조는 대신들을 불러들여 논의한 후, 오명항을 元勳 공신으로 결정하였다.⁹¹⁾ 그런데 원훈으로 정해진 오명항을 거듭해서 명초하였음에도 명을 받들지 않았다.⁹²⁾ 전교를 내려 다시 불러들여도 따르기는커녕 돈화문 밖에서 석고대죄를 하였고, 조태억과 신하들이 지나친 일이라고 타일러도 듣지 않았다. 홍치중(洪致中, 1667~1732)은 오명항이 분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그를 두둔했지만, 영조는 오명항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보았다. 설득 끝에 영조를 인견하게 된 오명항은 반란을 조정에 고변한 최규서나 조정에서 진압을 지휘했던 이광좌를 두고 자신이 원훈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오명항 자신은 직분을 다했을 뿐이고, 자신의 주요 공로로 회자되는 안성 지역에서의 승리는 이광좌의 지휘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하지만 영조는 오명항을 원훈으로 삼으려는 뜻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혔고, 오명항이 원훈을 받아들이면 宋 태조가 공신들의 안위를 보장했던 것처럼 예우하겠다고 하유하였다. 이렇듯 영조가 소론세력의 안위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야 오명항은 겨우 원훈을 받아들였다.⁹³⁾

영조가 노포 봉진과 헌칙 의례를 통해 오명항의 공로를 부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명항은 계속 공신이 되기를 사양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오명항이 출정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오명항은 역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국문을 받고 있었던 평안병사 이사성이 국문을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토벌에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⁹⁴⁾ 하지만 결국 이사성의 반역행위가 드러났고 결과

91) 『奮武錄勳都監儀軌』(上), 「筵說秩」 戊申 4月 20日. 분무공신 원훈 선정의 구체적 과정은 신진혜, 2021, 앞의 논문, 115~120쪽

92) 『承政院日記』 660冊, 英祖 4年 4月 20日 庚子

93) 『承政院日記』 660冊, 英祖 4年 4月 25日 乙巳; 『英祖實錄』 卷17, 英祖 4年 4月 25日 乙巳

94) 『承政院日記』 658冊, 英祖 4年 3月 17日 丁卯

적으로 오명항은 역적을 두둔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어 오명항을 비판하는 상소가 올라가기도 하였다.⁹⁵⁾ 이미 영조가 역적을 비호한 혐의를 묻지 않겠다고 확답했고, 무신란에 대한 오명항의 공적이 뚜렷한 상황이라 해도 이러한 혐의는 정국 상황에서 오명항의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실제로 공신녹훈과 의례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인 8월에 이르러 정익하(鄭益河)가 오명항이 이사성과 관련되었던 문제를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때문에 오명항은 강외(江外)로 나가버리기도 했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⁹⁶⁾ 공신 녹훈 이후에 발생했던 이러한 상황과 관련지어 본다면 무신란 진압 직후 오명항을 포함한 여러 소론계 신하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명항뿐만 아니라 박문수(朴文秀, 1691~1756)와 조현명(趙顯命, 1690~1752) 역시 상소를 올려 공신이 되기를 끈질기게 사양하였는데, 반란을 막은 일이 조정의 안위를 위한 일이었을 뿐 공신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사를 드러냄과 동시에 소론계열로서 조정에서의 입지를 보장받으려는 태도였다. 영조 4년 7월에 회맹제를 앞두고 영조를 인견한 자리에서 조현명이, “신들은 3월 18일 수원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늘 권면하고 신척할 것이니, 전하께서도 3월 17일 밤중에 출병하였던 일을 잊지 마소서.” 라 아뢰었던 것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⁹⁷⁾

그 과정 가운데 원훈 오명항을 녹훈도감 당상으로 삼고, 공신에 대한 훈호를 ‘수충갈성결기효력분무공신(輸忠竭誠決幾効力奮武功臣)’으로 정하였다.⁹⁸⁾ 분무공신은 1등 공신 1명[오명항], 2등 공신 7명[박찬신·박문수·이삼·조문명·박필건·김중만·이만빈], 3등 공신 7명[이수량·이익필·김협·조현명·이보혁·권희학·박동형]으로 총 15명이었는데,⁹⁹⁾ 인조대 이괄의 난 이후 30명을 진무공신으로 선정했던 것에 비해 적은 인원이었다.¹⁰⁰⁾ 실제로 정해진 15명 외에도 정공신에 버금가는 공로를 세운

95) 『英祖實錄』 卷16, 英祖 4年 3月 26日 丙子 ; 『奮武錄勳都監儀軌』 (上), 「狀啓秩」 英祖 4年 4月 14日

96) 『英祖實錄』 卷19, 英祖 4年 8月 10日 戊子 ; 8月 13日 辛卯 ; 8月 18日 丙申

97) 『承政院日記』 666冊, 英祖 4年 7月 15日 甲子. 신진혜, 2021, 앞의 논문, 122~129쪽

98) 『英祖實錄』 卷17, 英祖 4年 4月 26日 丙午

99) 『英祖實錄』 卷17, 英祖 4年 4月 25日 乙巳 ; 4月 26日 丙午 ; 『奮武錄勳都監儀軌』 (下), 「啓辭秩」 4月 26日

100) 진무공신에 관해서는 박기훈, 2021, 「인조대 초반 ‘振武功臣’ 녹훈 과정과 군사 활동」

사람들이 공신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영조는 녹훈도감에서 결정한 일을 번복하지 않았다.

〈표 1〉 1-3등 공신의 군호·품계·상격 및 각 교서 제술관과 정서관

등급	공신	군호	품계	교서 제술관	교서 서사 (書寫)	상격
1 등	오명항(吳命恒)	해은부원 군(海恩 府院君)	보국 승록 대부	홍문관 부수찬 신치근(申致謹)	홍문관 교리 조명교(曹命敎)	화상을 그려 후세에 전하고, 세 등급의 품계를 초자(超資)하며, 그 부모와 처자도 봉작하여 역시 세 등급의 품계를 초자한다. 적장자는 대대로 세습하여 작록을 잃지 않게 하고, 사유(敎有)가 영원히 후세에까지 미치게 하며,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또한 두 등급의 품계를 초자한다. 반상(伴尙) 10명, 노비 13구, 구사(丘史) 7명, 전지(田地) 150결, 은자 50냥, 표리(表裏) 1단(段),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2 등	박찬신(朴纘新)	함녕군(咸寧君)	자헌 대부	부호군 조지빈(趙趾彬)	통덕랑 이중호(李重好)	화상을 그려 후세에 전하고, 두 등급의 품계를 초자하며, 그 부모와 처자도 봉작하여 역시 두 등급의 품계를 초자한다. 적장자는 대대로 세습하여 작록을 잃지 않게 하고, 사유가 영원히 후세에까지 미
	박문수(朴文秀)	영성군(靈城君)	가의 대부	홍문관 교리 조명교(曹命敎)	교관 신서관(申思觀)	
	이삼(李森)	함은군(咸恩君)	자헌 대부	이조참의 윤혜교(尹惠敎)	통덕랑 이경설(李景說)	

	조문명(趙文命)	풍릉군(豐陵君)	자헌대부	부사과 정우량(鄭羽良)	통덕랑 박내원(朴來遠)	치계 하며,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한 등급의 품계를 초자한다. 이어서 반당 6명,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30냥, 포리 1단,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박필건(朴弼健)	금릉군(鎭陵君)	가선대부	부사직 김상성(金尙星)	통덕랑 박필채(朴弼采)	
	김중만(金重萬)	언성군(彦城君)	가선대부	부사직 이선행(李善行)	상호군 최중대(崔重大)	
	이만빈(李萬彬)	한원군(韓原君)	자헌대부	사간원 사간 강필경(姜必慶)	통덕랑 윤검(尹儉)	
3 등	이수량(李遂良)	완춘군(完春君)	가의대부	사헌부 장령 강필신(姜必愼)	통덕랑 윤식(尹燾)	화상을 그려 후세에 전하고, 한 등급의 품계를 초자하며, 그 부모와 처자도 봉작하여 역시 한 등급의 품계를 초자한다.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품계를 올려 주며, 적장자는 대대로 세습하여 작록을 잃지 않게 하고 사유가 영원히 후세에까지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당 4명,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20냥, 포리 1단,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이익필(李益秘)	전양군(全陽君)	가선대부	중부시정 홍중징(洪重徵)	통덕랑 홍우열(洪禹烈)	
	이보혁(李普赫)	인평군(仁平君)	가선대부	부사과 성덕윤(成德潤)	진사 남격(南格)	
	조현명(趙顯命)	풍원군(豐原君)	가선대부	부사직 김상성(金尙星)	부호군 이만지(李萬枝)	
	김협(金浹)	화천군(花川君)	가선대부	성균관 대사성 조원명(趙遠命)	진사 유용(柳裕)	
	박동형(朴東亨)	충원군(忠原君)	가선대부	호조참의 조석명(趙錫命)	통덕랑 박수형(朴壽亨)	
	권희학(權喜學)	화원군(花原君)	가선대부	성균관 대사성 조원명(趙遠命)	부호군 홍처주(洪處疇)	

분무공신의 인원구성을 살펴보면 소론계 신하들[오명항·박문수·조문명·조현명·박필건·이보혁]과 무과출신[이삼·박찬신·김만중·이만빈·이수량·이익필·

김협]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¹⁾ 조문명·조현명·박필건·박문수와 같이 탕평에 협조적인 인물들이 포함되었는데, 조현명의 경우 녹훈에 합당하지 않다는 상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영조가 명분을 더해 그의 녹훈을 지지했다. 반면에 오명항이 이광좌를 공신으로 삼아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당시 정국에서 여전히 이광좌를 소론 오적(五賊)으로 지적한다는 것을 의식하여 그의 녹훈을 보류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소론 신하들을 보호하면서도 노론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던 것이다. 무신란 진압 당시에는 소론계열 신하들이 진압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했다면, 공신 녹훈단계에서는 정국운영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탕평파를 비롯한 몇몇 신하들을 정공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²⁾

15명의 정공신 외에도 적지 않은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으나 영조는 공신을 과도하게 선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¹⁰³⁾ 그런 뜻이 반영되어 최종 15명의 공신만을 정하게 되었다. 영조는 회맹제가 있기 전에 선정전에서 공신들을 인견하며 특별히 예우하였는데,¹⁰⁴⁾ 15명의 공신들은 무신란 진압 당시의 실제적 공로는 물론 영조의 정국 운영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영조는 무신란 진압과정에서 반란의 원인이 당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탕평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그러한 의지가 공신 선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¹⁰⁵⁾

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무신란에 관한 국문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5월 말엽부터는 국문을 잠시 멈추고 군공을 기록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이 일은 6월 1일까지 계속되었다.¹⁰⁶⁾ 그리고 공신 외에도 공이 있는 사람들을 原從功臣으로 삼고 原從錄券을 내려주었는데, 영조 4년 당시 도감에서 준비할 원종녹권의 수가 1만권에 달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원종공신이 대단히 광범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⁷⁾ 원종공신에 대해 논의

101) 분무공신의 당색과 관직에 관한 정리는 다음 연구의 <표 1>을 참조할 수 있다. 김학수, 2016, 「18세기 한 鄕班 출신 功臣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영조대 奮武功臣 朴東亨(1695~1739)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7, 193~194쪽

102) 신진혜, 2021, 앞의 논문, 128~130쪽

103) 『奮武錄勳都監儀軌』(下), [啓辭秩] 戊申 4月 28日 ; 5月 11日

104) 『英祖實錄』 卷18, 英祖 4年 5月 1日 辛亥

105) 신진혜, 2021, 앞의 논문, 111~120쪽

106) 『英祖實錄』 卷18, 英祖 4年 5月 24日 甲戌 ; 5月 26日 丙子

할 당시, 여러 관원들의 跟隨가 원종공신록에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公·私賤의 면천사례가 터무니없이 많아지니 양인만을 근수로 기록해야 한다는 이광좌의 의견이 수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종공신의 수와 신분적 범위는 광범위했다.¹⁰⁸⁾

조선 역대의 공신선정과정을 살펴보면 공신으로 지정할 인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했던 경우도 다수 있었지만, 영조 4년 분무공신의 경우에는 원훈 선정과 공신 감훈이 있기 전에 영조가 주도적으로 헌칙의례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무신란의 진압에 있어 오명항의 공로가 으뜸이라는 것을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이미 소론계 신하들의 공적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했지만, 신임옥사와 관련된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처우와 소론 討罪에 대해 노론 측에서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¹⁰⁹⁾ 조정에서의 소론계 신하들의 위치를 보장하는 데에는 영조의 역할이 중요했다. 때문에 의례적 위상을 통해 무신란에 대한 승리를 백성들에게까지 드러낸 것에는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은 물론 조정 내 소론 신하들을 보호하려는 영조의 의도가 담겨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무신란의 진압에 대한 기념은 반란 세력의 수급을 바치면서 국가와 왕실에 대한 반역자들의 말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헌칙 의례를 시작으로, 공로자들을 공신으로 녹훈하고 회맹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3) 회맹제

회맹제는 조선 건국 이후부터 시행되어온 전통의 누적으로 견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영조 역시 시행과정에서 회맹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영조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맹제라는 행사를 이용하려 했던 측면도 엿볼 수 있다. 이는

107) 『承政院日記』 666冊, 英祖 4年 7月 25日 甲戌

108) 『承政院日記』 662冊, 英祖 4年 5月 28日 戊寅. 『奮武錄勳都監儀軌』(下), 奮武原從功臣一等別單, 二等別單, 三等別單. 분무원종공신 역시 3등으로 나누어 거의 9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녹훈하였는데, 3등 분무원종공신에는 노비도 438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녹훈 대상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분석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오갑균, 1984, 앞의 논문. 분무원종공신 녹훈으로 인해 대대적인 신분변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최승희, 2003, 앞의 책, 지식산업사, 223~224쪽

109) 『英祖實錄』 卷18, 英祖 4年 7月 2日 辛亥

영조가 의도적으로 참여자 구성을 조정하려 했던 점에서 드러난다.

희맹제를 준비하고 있던 당시, 영의정 이광좌가 작문(作門)이 닫힌 후 의막(依幕)에 찾아온 사실이 영조에게 보고되었다. 이광좌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조가 집에서 몸조리를 하게 했음에도 작문이 닫힌 시간에 찾아왔던 것이다. 문이 닫힌 후에는 함부로 진문(陣門)을 여닫을 수 없었는데 영조는 특별히 문을 열어 이광좌가 들어올 수 있게 전교하였다. 이광좌는 이미 영조가 몸조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해준 은총을 입었으나, 반역을 평정한 후 하늘에 맹약을 올리는 성대한 의식에 영의정으로서 배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 뒤늦게 찾아왔음을 알렸다. 이미 자신의 병환은 오래되었으니 천천히 걸어가면서 숨이 차지 않게만 조절하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간청하며 자신도 희맹제에서 영조를 배종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에 영조는 일단 기력을 헤아려가며 따르도록 했다.

이윽고 영조가 인정문 밖으로 나갔는데, 이광좌가 六曹 앞길에서 영조를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좌의정 홍치중도 영조를 맞이하기 위해 편복 차림으로 의막에 있었다. 홍치중 역시 병이 있고 왼쪽 다리에 종기가 심해서 희맹제 참여를 반려했던 상태였다. 홍치중은 희맹제에 영조와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의막에서 기다렸다가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었던 것이다. 홍치중을 만난 영조는 “모습을 보니 병이 깨끗이 낫지는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왔으니 壇所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냐”며 그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홍치중은 병세로 인해 함부로 움직일 형편이 못 되어서 명을 받들기 어렵다는 뜻을 아뢰었다. 그런데 영조는 이광좌가 희맹제에 참여하고자 나와있지만 그의 병세로는 참여가 어려울 것 같으니, 홍치중이라도 참여해줄 것을 다시 촉구하였고, 홍치중은 거듭 하교하시니 죽을 각오로 단소에 나아가겠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이광좌에게는 이미 좌의정 홍치중의 참여가 확정되었으니 굳이 참석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몸조리를 하도록 일렀다. 하지만 이광좌는 물러서지 않고 희맹제의 배종 반열에 서겠다고 고집하였다. 끝까지 영조가 허락하지 않자 그렇다면 의막에 머물러 있겠다고 아뢰었는데, 영조는 집으로 돌아가서 쉴 것을 종용하면서 이광좌가 돌아가겠다고 말해야만 영조가 희맹단으로 출발하겠다고 힘주어 일렀다. 이광좌는 결국 영조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고 영조는 어의를 보내 그를 간병하도록 했다.¹¹⁰⁾

이처럼 영조는 희맹제 참여를 간절하게 바라는 이광좌는 힘써 돌려보내

고, 우회적으로 참여를 거절한 홍치중은 설득하여 참여하도록 했다. 삼정승 가운데 영의정 이광좌와 좌의정 홍치중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면 우의정 오명항만 참여하게 된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 홍치중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실은 노론계인 홍치중이 회맹제에 참여해야 소론계 공신들의 충의를 맹세하는 자리에 노론 대신 역시 함께하여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의 참여를 독려했던 것이다.

반면 이광좌가 병세가 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회맹에 참여하려 했던 것은 노론 측에서 신임옥사와 관련된 소론 오적[유봉휘·이광좌·조태구·조태억·최석항]으로 그를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무신란의 시초를 김일경 계열과 관련지어 선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광좌는 소론계 정공신들이 주축이 되는 회맹제에 배종하여 조정 내에서의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영조 역시 그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원훈공신이자 우의정인 오명항의 참여로 명분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고 병세가 위태로운 이광좌까지 애써 참여하게 할 필요는 없었기에 그를 돌려보냈던 것이다.¹¹⁰⁾

정리하자면, 공신회맹제는 역대 공신의 적장자손들과 새롭게 녹훈된 공신들이 모여 국가에 충의를 다했던 영광을 공유하며 입가에 피를 바르는 상징적 의례였다. 영조는 무신란을 평정한 공신들과 함께하는 회맹의 자리에 병든 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광좌는 만류했고, 다리가 불편해 참여가 어려웠던 홍치중에게는 굳이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것은 소론 신하들이 무신란을 평정한 자리에 탕평정국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론계 홍치중을 참여하도록 하여 정국안정에 대한 영조의 뜻을 보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0) 『承政院日記』 666冊, 英祖 4年 7月 17日 丙寅

111) 영조가 공신을 만나는 자리에서 오명항이 “영상은 기력을 모두 동원하여 會盟祭에 참석하러 왔다가 병이 더 심해져 다시 들어갔고, 좌상은 다리의 종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아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결국 이광좌와 홍치중은 회맹제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奮武錄勳都監儀軌』(上), 「筵說秩」 戊申 7月 19日

4. 결론

공신회맹제는 국가와 왕실을 위협했던 세력을 토역하고 왕실에 대한 충의를 맹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경종 3년에 시행되었던 부사공신회맹제는 신구 공신들의 적장손이 참여한 가운데 경종, 왕세제, 그리고 3등 공신 목호룡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신임 옥사의 처리과정이 명백하지 않았고, 모역을 고변했던 목호룡 외에는 녹훈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공신을 녹훈하기까지 긴 논의를 거쳐야 했다.

결국 경종 3년의 부사공신회맹제는 3등 공신 목호룡 한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참여자들이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징행위로 대체된 형태의 의사표현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노론과 결부되어 있었던 왕세제가 참여하였는데, 이는 소론 중심의 정국에 대한 왕세제의 ‘표면적인’ 연대의지를 상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종에 대한 우애와 충의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에 경종이 재위 4년만에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게 된 후 정국의 상황은 다시금 급변하였다. 영조는 김일경과 목호룡을 당고개에서 不待時處斬하였고, 부사공신의 훈적 역시 削去하였다. 그리고 영조는 자신이 경종을 따라 회맹제에 참여한 것은 오직 경종을 위하는 뜻이었음을 누차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영조 4년 무신란을 진압한 직후 영조는 일련의 의례를 시행함으로써 대외에 왕실의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조는 일련의 의례 시행을 통해 무신란에 대한 관군의 승리를 자신의 정통성과 재위 정당성으로 연결지었던 것이다. 무신란 직후 소론 세력 역시 스스로 조정에서의 입지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외적으로 소론 신하들의 공로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원훈 및 공신이 정해지고 회맹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명항은 원훈이 되는 것을 사양하며 석고대죄하였고, 박문수, 조현명 역시 공신이 되기를 사양하면서 조정에서의 입지를 영조가 보장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광좌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회맹제에 참여하기를 고집하여 영조가 애써 돌려보내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신에 대한 의례적 행사는 ‘공신회맹제→반교서→회맹연[선은]→진사전’으로 진행되었지만, 영조 4년에는 공신 녹훈이 있기 전부터 선노포·헌곡 의례를 통해 관군의 승리를 과시함과 동시에 관군의 수장

을 맡았던 오명항의 공로를 부각시켰다. 이렇듯 중첩된 의례 행사를 통해 공신들의 위상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상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그들이 여러 시혜를 입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드러내었다. 영조가 이렇듯 분무공신의 공로를 의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무신란으로 인해 소론이 열세에 처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조정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론 신하들 역시 영조의 의도를 파악하고 각자의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세제 시절의 영조는 경종을 위해 부득이하게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론을 역적으로 규정하는 회맹제에 참여하였고,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는 정국에서 소론 세력을 보존하고 탕평정국 추진하려는 의도를 담아 회맹제를 기획하였다. 이처럼 즉위 이전부터 의례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추상적으로 보여주었던 영조는 약 52년의 재위기간동안 여러 의례를 통해 통치 질서를 구현하였다.

「영조가 경험한 扶社功臣・奮武功臣 회맹제의 의미」 토론문

문경득 (전주대학교)

이 발표문은 발표자가 계속 연구해 온 주제 중 영조가 왕세제 시절에 경험한 부사공신 회맹제와 왕위에 올라 무신란을 평정한 뒤의 분무공신 회맹제를 모두 살펴보고 이 회맹제라는 의례를 통해 표현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입장차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정리한 발표문이다. 의례를 단순히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와중에 드러나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정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본 발표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발표문은 각주 1에서 밝히는 것처럼 기존 논고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다 보니 몇몇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기존 논문에서 논의했던 내용 이상으로 다루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에 본 토론자는 이 발표문이 좀 더 독자적이고 차별성을 갖춘 별도의 논문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한 몇몇 쟁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어유귀가 부사공신 원훈을 사양한 일에 대해 발표자는 “노론 세력이 대대적으로 사사된 신임옥사에 대한 원훈공신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라고 해석했다. 여기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정도의 표현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정치적 입장상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극구 거부했다’ 고 표현해도 될 사안이지 않을까 한다. 즉, 노론에 속한 어유귀가 원훈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그가 노론의 대표자로 스스로 신임옥사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유귀는 물론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 어떤 노론도 부사공신의 원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2. 영조가 왕세제이던 시절 참석한 회맹제에 대해 “왕세제가 노론을 역적으로 규정하는 회맹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소론이 장악한 정국에 대한 ‘표면적인’ 연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조가 즉위 후 부사공신을

삭훈하고 자신이 회맹제에 갔던 것은 오직 경종을 위한 일이었음을 거듭 강조한 것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서술 뒤로 구체적으로 영조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왕세제의 회맹제 참여는 왕위 후계자로서 경종에 대한 충심은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정국을 장악한 소론에 대한 ‘표면적인’ 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 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기존 논문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본 발표문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일경과 목호룡에 의해 하마터면 역모에 얽혀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던 시점에서 지위가 불안했던 세제로서 회맹제에 참석하는 행위와 신임옥사와 무신란 등 여러 사건을 무사히 처리하며 정당성을 확보한 뒤의 영조가 회상하면서 발언한 내용 사이에는 명백하게 입장 차이 혹은 과거 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뒷날의 회상하는 발언으로 그 이전의 행위를 해석하는 방식은 영조가 왕세제 시절에 회맹제에 참석하던 시점의 의도를 밝히기에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뒷날의 발언은 과거를 미화하는 발언이거나 당시 상황을 지금 현재에 맞게 준비된 답변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당시에 왕세제로서 자기 지지층인 노론을 성토하는 회맹제에 참석하는 행위는 지위와 목숨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절박한 행동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발표자처럼, 혹은 각주 51번처럼 해석할 수 있더라도 그 분석 과정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시점에 따른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본문 3장의 ‘1) 선노포·헌곡 의례의 시행’ 부분은 본 발표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회맹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이므로 2장에서 부사공신이 공신 선정부터 서술한 것처럼 3장에서도 ‘2) 분무공신 선정과 의미’ 부터 시작해도 무방할 듯 하다.

4. 분무공신 선정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15명의 정공신 외에도 적지 않은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으나 영조는 공신을 과도하게 선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그런 뜻이 반영되어 최종 15명의 공신만을 정하게 되었다.” 고 하면서 “15명의 공신들은 무신란 진압 당시의 실제적 공로는 물론 영조의 정국 운영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부분 또한 기존 논문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본 발표문에서는 이 부분 또한 좀 더 세밀하게 정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신 선정을 두고 영조와 소론, 노론의 의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아마도 소론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신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실제로 이광좌를 원훈으로 내세우고자 했다는 언급도 있다. 반면 노론의 입장에서는 분무공신의 인원은 물론 의미까지 최소화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영조의 입장에서 만약 진정한 탕평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좀 더 공신의 범위를 늘려 소론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면서 노론을 견제하도록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탕평의 상징으로써 재조소론을 공신으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론을 키워 노론을 견제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한국의 실패를 겪은 영조는 대등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또 다른 극한 대립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영조는 일부러 기울어진 균형을 유지하여 소론이 영조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도록 공신의 범위를 제한했을 수도 있다. 인조반정에서 보듯 공신 세력은 권력 기반으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조에게 탕평이란 목적이 아니라 통치와 지배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공신선정 논의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토론자의 해석이지만, 발표자도 기존 연구에서 좀 더 나아간 분석과 해석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5. 3장 3) 회맹제에서 분무공신 회맹제 진행 시 소론 대신 이광좌와 노론 대신 홍치중의 참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소개한 부분은 ‘회맹제’ 라는 의례의 이면에 담긴 영조와 소론·노론의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분석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부분 또한 기존 논문과도 같은 내용으로, 본 발표문에서는 마지막에 각주 112에서 결국 이광좌와 홍치중 둘 다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까지 포함해 좀 더 깊게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이광좌의 의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홍치중의 의도만 소극적이거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조에게 있어서는 이광좌는 물러나고 홍치중은 참석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였지만, 둘 다 불참했다는 점에서 회맹제는 반절의 성공이었다. 이러한 구도는 앞으로 수십년간 이어질 영조대 탕평 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

다.

6. 마지막으로 두 회맹제에 대한 소개가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연잉군 시절에 부사공신 회맹제는 왕세제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었고, 왕이 된 이후의 분무공신 회맹제는 소론 대신 이광좌와 노론 대신 홍치중의 참여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두 시점 사이에 달라진 소론의 처지와 영조의 입장 등은 영조대 정국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점을 본론 마지막에서 좀 더 명확하게 두 회맹제를 서로 비교하고 정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서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기타 질문

1. 魚有龜의 한글 독음을 ‘어유귀’로 표기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 대체로 사전류에서는 ‘어유구’로 표기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인 경우 ‘귀’로 표기하고 지명일 경우 ‘구’로 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한국사에서 특정 인명이나 지명, 일부 역사 용어는 이런 관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표기되는 단어들이 일부 있다. 龜州大捷 또한 원칙대로라면 구주대첩으로 읽어야 하겠지만 관례적으로 귀주대첩으로 표기한다. 李廷龜 또한 이정귀가 아니라 이정구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예외적이지만 ‘어유구’로 표기하는 사례로 통용되고 있는데 ‘어유귀’로 표기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2024 호남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신진교수,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다

토머스 헉슬리의 과학적 윤리관

발표 : 주의돈(조선대)

토론 : 오종현(전남대)

토머스 헉슬리의 과학적 윤리관

주의돈 (조선대학교)*

1. 들어가면서
2.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도덕교육이란?
3. 과학적 탐구의 윤리적 의미: 권위에 대한 맹신 몰아내기
4. 윤리의 과학적 토대
5. 나가며

1. 들어가며

영국의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 1825-1895)는 『종의 기원』을 쓴 다윈(Charles Darwin)의 불독, 즉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에 맞서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한 투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헉슬리의 활동은 생물학과 진화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과학 지식인(man of science)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그는 여러 강연과 기고문을 통해서 19세기 영국사회를 향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과학적 사고와 방법론의 확산에 힘썼다. 헉슬리는 영국 초등교육의 틀을 마련한 런던 교육위원회(School Board) 위원, 왕립광산학교(Royal School of Mines, 후에 Imperial College London으로 통합) 교수(1854-1885)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학교 교육에 그리고 노동자를 포함한 대중의 교육에 기여했다. 그는 영국의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에도 관여했고 그 정점은 수산국 조사관(Inspector of Fishery, 1881-1885)으로 일한 것이었다. 헉슬리는 1885년에 공적인 직무로부터 은퇴한 후에도 언론을 통한 논쟁과 강연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였다.¹⁾

토머스 헉슬리의 아들 레너드(Leonard Huxley)의 헉슬리 전기는 그를 반

계몽주의적 종교 세력에 맞서 싸운 합리주의의 영웅으로 묘사했다.²⁾ 그 후 헉슬리에 대한 초기 연구 중 가장 충실한 것은 비비(Cyril Bibby)의 것이다. 그는 헉슬리를 영웅시하는 관점을 유지하며 과학자로서 그리고 과학교육가로서 헉슬리의 경력과 성과를 자세하게 추적했다.³⁾ 1970년대부터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과학자 집단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라는 맥락 안에서 헉슬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헉슬리는 성직자 집단에 맞서 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과학자 집단의 주도적인 인물로 그려졌다.⁴⁾

21세기에 들어 출간된 전기에서 화이트(Paul White)는 “과학자(scientist)로서의 전문화”가 아닌 “과학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헉슬리의 경력을 해석했다. 화이트는 헉슬리가 19세기가 끝날 무렵 등장하는, 현대적 의미의 전문적 과학자(professional scientist)가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자신의 주된 역할을 과학 연구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과학의 독자적인 권위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헉슬리가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과학의 지위를 높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과학 연구자 외에 다른 집단의 사람들 - 문인, 성직자, 노동자 - 과 협력하는 능력 때문이었다고 화이트는 말한다. 헉슬리는 과학의 의미를 다른 문화 영역의 가치 및 실천과 연결 짓기 위해 애썼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 지식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⁵⁾

*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1) Adrian Desmond, “Huxley, Thomas Henry,”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2004). <https://doi.org/10.1093/ref:odnb/14320> (2024년 2월 21일 검색)

2) Leonard Huxley, *Life and letters of Thomas Henry Huxley*, 2 vols. (London, 1900).

3) Cyril Bibby, *T. H. Huxley: Scientist, Humanist and Educator* (London, 1959); Cyril Bibby, *Scientist Extraordinary: the Life and Scientific Work of Thomas Henry Huxley, 1825-1895* (New York, 1972); Cyril Bibby, *T. H. Huxley on Education* (1971, Cambridge).

4) James Paradis, *T. H. Huxley: Man's Place in Nature* (Lincoln, 1978); Frank Turner, *Contesting Cultural Authority: Essays in Victorian Intellectual Life* (Cambridge, 1993); Adrian Desmond, *Thomas Huxley: From Devil's Disciple to Evolution's High Priest* (London, 1998).

5) Paul White, *Thomas Huxley: Making the “Man of Science”*, (Cambridge, 2003). 더 자세한 연구사는 Paul White, “Huxley, Thomas” in Arne Hessenbruch, ed.

헉슬리의 윤리관에 대한 조명은 화이트가 주목했던, 과학 지식인으로서 헉슬리가 실행한 역할의 한 부분을 확대하여 들여다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은 헉슬리의 경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과 과학, 두 키워드와 연관하여 윤리에 대한 그의 생각을 탐구할 것이다. 교육가로서의 헉슬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그의 과학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⁶⁾ 하지만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헉슬리의 강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의 교육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헉슬리의 윤리관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고, 그가 말년에 강연과 글로 발표한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 1893)의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⁷⁾ 기존 연구의 전반적인 논조는 다음과 같다. 헉슬리는 적자생존으로 대표되는 진화의 원리와 인간사회의 윤리적 원칙이 서로 대립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윤리의 영역을 과학으로부터 분리하는 영향력 있는 선례를 제시했다는 것이다.⁸⁾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몇몇 연구는 『진화와 윤리』가 헉슬리의 정치적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음을 지적하였다.⁹⁾ 본 논문은 『진화와 윤리』 외에도 헉슬리가 자신의 윤리관을 표명한 다른 글을 두루 분석함으로써, 헉슬리가 진화를 윤리의 토대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고 속에서 과학적 태도와 윤리적 원칙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¹⁰⁾

Reader's Guide to the History of Science (London, 2000); White, *Huxley*, pp. 1-5; Desmond, "Huxley".

6) Bibby, *Huxley on Education*; 송진웅, 조숙경, 「영국 학교 과학교육의 개척자 T. H. Huxley - 생애와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권 1호 (2001), pp. 38-58.

7) Thomas Huxley, "Evolution and Ethics [1893]," in *Collected Essays IX* (London, 1894), pp. 46-116.

8) 김기윤은 이러한 시각이 20세기 초기부터 출간된 헉슬리 전기를 통해서 강화되었다고 지적한다. 김기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시대의 초상」, 『한국과학사학회지』 28권 1호 (2006), pp. 55-79. 비슷한 관점을 최근의 저작에서도 볼 수 있다. Paul Lawrence Farber, *The Temptations of Evolutionary Ethics* (Berkeley and Los Angeles, 1994), pp. 58-69; White, *Huxley*, pp. 172-174.

9) Michael S. Helfand, "T. H. Huxley's "Evolution and Ethics": The Politics of Evolution and the Evolution of Politics," *Victorian Studies*, vol. 20, no. 2 (Winter, 1977), pp. 159-177; 김기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시대의 초상」. 이들 연구는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가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한 그리고 당시 세력을 넓혀 가고 있던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를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10) 도덕(morality)과 윤리(ethics)가 가진 의미의 차이를 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글에서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헉슬리의 글을 포함하여 19세기 영국에서의 논의는 두 단어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바꾸어 가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헉슬리의 생각, 특히 도덕 교육의 중요성과 방식을 들여다볼 것이다. 헉슬리의 교육관은 그가 자연계와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3장에서는 헉슬리에게 과학적 탐구가 강한 윤리적 의미를 가졌음을 살펴볼 것이다. 그는 사실적 근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태도가 지적 발전뿐 아니라 윤리적 진보의 토대를 이루는 반면, 권위에 대한 맹신은 비윤리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헉슬리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윤리적 원칙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도덕의 원천으로서 종교적 권위를 벗어난 헉슬리가 어떻게 세속적 대안을 추구하였는지 드러낼 것이다.

2.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도덕교육이란?

헉슬리는 교육가로서 자신이 가진 생각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본 장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헉슬리의 대표적인 저작을 통해서 그의 교육관, 특히 도덕교육에 대한 그의 견해에 접근할 것이다.

헉슬리는 1868년 사우스런던 노동자 대학(South London Working Men's College)의 총장으로 취임했는데 취임 강연의 제목은 『교양교육; 그리고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나』였다. 그가 말하는 교양교육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교육을 의미했다. 헉슬리는 강연의 도입부에서 질문을 던진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양교육에 대한 우리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주고 싶은 교육, 우리가 운명을 뜻대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교육은 무엇입니까?”¹¹⁾

헉슬리는 인생을 체스에 비유했다. 체스에서 이기려면 그 규칙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체스 규칙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생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체스경기자다. 체스판은 세상이고 체스 기물들은 우주의 현상이다. 게임의 규칙은 자연의 법칙(the laws of Nature)이다. 체스를 두는 상대는 자연(Nature)이

11) Thomas Huxley, “A Liberal Education; and Where to Find It [1868]” in *Collected Essays III* (London, 1893), p. 81.

다. 혁슬리에 의하면 자연은 항상 공평하고(fair) 정의롭고(just) 참을성 있다(patient). 하지만 실수나 무지를 간과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연을 상대로 경기를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게임에서 진다. 교육이란 이 거대한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해 자연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다. 혁슬리는 자신의 비유가 사탄과 한 사람이 그의 영혼을 두고 체스를 두는 레츠(Moritz Retzsch)의 그림을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혁슬리는 사탄 대신 침착하고 체스에 능숙한 천사 - 사랑을 품고 경기에 임하며 이기기보다는 지기 원하는 - 를 그 자리에 놓으면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¹²⁾

혁슬리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uneducated man)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담(Adam)처럼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홀로 존재하게 된다고 해도, 자연은 곧바로 그의 눈과 귀, 촉각을 통해 교육을 시작한다. 고통과 쾌락은 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려준다. 그리고 아담이 이브(Eve)를 만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새로운 세상, 즉 사회적, 도덕적 현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인간관계에서의 행복과 슬픔이 나타난다. 하지만 교육의 방식은 동일하다.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배운다. 즉 사람은 인간 본성의 법칙(the laws of the nature of man)에 맞추어,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듯 혁슬리가 말하는 자연은 “물체(things)와 그것들의 작용”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방식”을 포함했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즉 물질세계로서의 자연 그리고 인간사회의 작동원리로 나눌 수 있었다. 도덕교육은 후자에 속했다.¹³⁾

자연의 교육은 공평하지만 냉혹했다. 혁슬리에 의하면 자연의 법은 무지와 의도적인 불복종을 구분하지 않으며, 무능과 범죄를 동일하게 처벌했다. 자연의 훈련은 “말(word)과 주먹(blow) 중에서 주먹이 먼저”가 아니라 “말이 없는 주먹”이다. 따귀를 왜 맞았는지는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흔히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공적(artificial) 교육으로서 사람이 개입하여 자연의 교육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혁슬리는 말했다. 즉 교육은 아이가 자연의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해 주는 것이다. 따귀를 맞기 전에 자연의 불만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혁

12) *Ibid.*, p. 82.

13) *Ibid.*, pp. 83-84.

슬리에 의하면 진정한 교육이란 자연의 법에 불복종할 때 받는 큰 해악을 피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자연이 제공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¹⁴⁾

헉슬리의 교육관을 계속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으려 한다. 그 오해는 말년의 헉슬리가 『진화와 윤리』에서 자연의 냉혹함과 인간사회의 윤리를 극적으로 대비시킨 반면, 이른 시기의 헉슬리는 자연을 윤리적 이상의 실현을 위한 인도자로 인식했다는 견해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연을 너그러운 천사에 빚댄 표현이 이러한 견해에 한몫했다. 패러디스는 헉슬리가 『교양교육』(1868)과 『과학과 도덕』(Science and Morals, 1886)에서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도덕성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불과 2년 뒤인 1888년에 쓴 에세이 『인간 사회에서의 생존 투쟁』(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Human Society)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자연 과정(natural process)에 한때 부여했던 도덕적 내용을 제거했다고 보았다.¹⁵⁾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헉슬리가 자연을 묘사할 때 사용한 “정의롭다(just)”는 표현에 도덕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잘못 파악한 것에 기인한다. 헉슬리가 의미했던, 자연이 정의롭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자연법칙에 따라 - 즉 변덕스럽지 않고 원칙대로 - 보상 혹은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아프거나 죽는 것처럼 말이다. 자연이 자비로운 천사로 묘사되긴 했지만 이는 배움을 장려하기 위한 헉슬리의 수사법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자연의 훈련은 설명 없이 주먹을 날리는 비정함을 보여준다. 처벌은 의도에 관계없이 내려진다. 자살을 의도했던 실수이든 독을 먹으면 죽는다. 즉, 분위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연의 냉혹한 속성에 대한 헉슬리의 인식은 『교양교육』부터 『진화와 윤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한편 윤리적 원리가 흐르는 인간사회 그리고

14) *Ibid.*, pp. 85-86.

15) James Paradis, “Evolution and Ethics in Its Victorian Context,” in James Paradis and George C. William, eds., *Evolution & Ethics: T. H. Huxley's Evolution and Ethics with New Essays on Its Victorian and Sociobiological Context* (Princeton, 1989), pp. 20-24; 비슷한 견해가 다음 저작들에도 나타난다. Roger Smith, *Free Will and the Human Sciences in Britain, 1870-1910* (London, 2013), pp. 14-15; Desmond, *Devil's Disciple*, pp. 362-363, 596-598; Farber, *Temptations*, pp. 61-63.

도덕과 무관한(non-moral) 물질적 자연 사이의 대비가 『진화와 윤리』에서 가장 선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구분은 헉슬리의 더 이른 시기 경력에서도 드러난다. 위에서 보았듯이 헉슬리는 (아담처럼) 세상에 홀로 있는 사람이 획득하는 자연 지식의 원리와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작동원리가 구분된다는 관념을 『교양교육』에서 이미 드러내고 있었다.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 후 헉슬리는 어디서 이러한 교육을 찾을 수 있는지 자문하고 영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생각해 볼 때 찾기 어렵다고 자답했다. 헉슬리가 볼 때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는 국가의 정치적 구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물리적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 역시 부족했다.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질병의 원인을 예방 가능한 물리적 원인이 아니라 신의 뜻에 돌린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헉슬리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주제”로 여긴 것은 도덕성이었다. 학생들이 어떤 행동이 칭찬을 받고 어떤 행동이 비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는 했지만, 헉슬리는 모든 도덕 법칙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육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에 손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원리가 교육되어야 했다. 그는 학자들조차 도덕 법칙들을 교조적인 방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법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헉슬리는 배가 고프더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절도를 금지하는 도덕법과 사회의 안정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음을, 따라서 흠치지 않는 것이 사회와 자신에게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도덕성의 과학적 근거를 탐구하는 도덕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¹⁶⁾

헉슬리의 교육관을 조망하기에 적절한 또 하나의 자료는 그가 1870년에 작성한 『교육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글이다. 영국 의회의 하원 의원 포스터(William Foster)의 주도로 통과된 초등교육법(Elementary Education Act, 1870)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초등교육을 확대를 목표로 했다. 이 법은 새로 설립되는 학교의 교사 위촉,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존

16) Huxley, “Liberal Education,” pp. 88–89.

학교에 대한 감독, 교육 과정 정비를 위해 각 지방에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헉슬리는 런던의 교육위원이 되기 위해 출마했고 마흔아홉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일원으로 선출되었다. 헉슬리는 이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영국 초등교육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교육위원 선거 운동을 위해 작성한 글이 『교육위원회』였다.¹⁷⁾

이 글에서 헉슬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분야를 크게 넷으로 나누었다. 1. 건강을 위한 체육교육, 2. 집안일(household work)과 가정경제(domestic economy), 3. 행동의 규범(laws of conduct) 즉 도덕, 4.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의 학습 - 읽기, 쓰기, 수학, 자연과학 등. 여기에서도 도덕교육이 강조되었다. 다른 분야의 교육은 그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짧게 서술된 반면 헉슬리는 도덕교육의 중요성과 방식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헉슬리는 학생들이 사회의 낙오자가 아닌 적절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도덕을 배우는 것은 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정(affection) 또한 훈련되어야 한다고 - 자신과 동료들을 위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 강조했다. 그리고 감정의 훈련은 과학보다는 종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¹⁸⁾

종교에 대한 헉슬리의 생각은 당대의 일반적인 영국인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었다. 헉슬리에 의하면 신학이 규정한 절대자(Deity)에 대한 애정이 종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종교의 전부는 아니었다. 도덕 과학(moral science)이 규정한 윤리적 이상에 대한 애정도 그에 못지않게 종교의 중요한 요소였다. 왜냐하면 신학이 악한 절대자를 규정한다고 해도, 종교적 애정이 윤리적 이상을 외면하고 전능한 악마를 향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종교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당시 교육 논의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교육과와 세속적 교육과로 나뉘어 있는데 그가 보기에는 양쪽 모두 문제가 있었다. 종교과가 요구하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 속에 있는 신학이었고, 세속과가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교육의 폐지였는데 실상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학의 제거였다. 헉슬리는 신학이 배제된 종교 - 윤리적 이상에 대한 애정 - 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어떤 종류이든 일종의 윤리적

17) Thomas Huxley, "The School Boards: What They Can Do, and What They May Do [1870]," in *Collected Essays III*: White, Huxley, pp. 121-124.

18) Huxley, "School Boards," pp. 389-400.

이상이 사회를 이끌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성공적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¹⁹⁾

이어서 헉슬리는 학생들의 도덕적 감정을 키우기 위한 방식으로 성서 읽기를 제시했다. 헉슬리의 이러한 입장은 강경한 세속파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종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덧붙여 당시 잉글랜드의 상황 또한 고려하고 있었다. 영국인 대부분이 자신들의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성서를 배우기 원했고, 초등교육법을 통과시킨 의회에서의 분위기 또한 성서 읽기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헉슬리는 말했다.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던 19세기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초등교육법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와 비국교회 사이의 다툼을 막기 위해 그들의 공통분모로서 성서를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헉슬리의 성서 읽기 옹호는 단순히 타협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도덕교육의 토대를 제공할 책으로써 성서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학이 배제된 교육이라는 의미로 세속적 교육에 찬성해 왔지만, 행동의 근본적 토대인 종교적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사용 외에 다른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고백해야겠다.” 왜냐하면 스토아(Stoic) 철학자와 같은 “이교(Pagan)” 윤리학자들의 글은 활력이 부족하고 보통의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성서를 통한 도덕교육에 신학이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헉슬리는 성서 교육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교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는 성서의 구절이 전달하는 것 이상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성서의 이야기와 교훈은 그 자체로 도덕적인 아름다움과 위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서에 해석을 덧붙이려는 시도는 지난 2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논쟁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며, 또한 종파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었다. 성서에는 윤리적 교훈 외에 부가적인 교육적 가치도 있었다. 헉슬리는 성서가 영어의 문학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지리와 역사를 교육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헉슬리의 입장은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도덕교육을 위한 성서 읽기는 결국 영국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다.²⁰⁾

하지만 헉슬리의 모든 의견이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성서에 엄격

19) *Ibid.*, pp. 394-396.

20) *Ibid.*, pp. 396-399; White, *Huxley*, pp. 128-129.

한 문헌학적 비평을 적용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학생들의 생각을 채우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절을 학교에서 읽는 부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과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용인될 수 없는 부분 - 예컨대 6일 동안의 우주 창조 - 은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를 저해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헉슬리의 제안은 교육 위원회 내부의 반대에 부딪쳐서 실현되지 못했다. 헉슬리의 제안은 권위의 원천을 성서 자체로부터 문헌학과 과학 분야의 지식인들에게로 옮기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교육 위원회의 다수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²¹⁾

헉슬리는 인생을 체스에 비유하며, 교육이란 인생이라는 경기의 규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이라는 체스판에서 익혀야 하는 인생 게임의 규칙은 체스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자연의 법칙”이었다. 헉슬리가 말하는 자연의 법칙은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뿐 아니라 인간 본성(nature)이 어우러져 존재하는 사회의 작동 원리를 포함했다. 개인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도덕 원리의 지식적 교육 외에도 도덕적 감정의 함양이 필요했다. 헉슬리는 도덕적 감정이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보았다. 윤리적 이상에 대한 애정을 종교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기독교 신앙과 문화의 뿌리가 깊은 영국에서 윤리 교육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도구는 성서 읽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도덕 교육을 위해 성서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성서의 텍스트를 넘어서는 신학적 해석의 전달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헉슬리의 입장은 전반적인 동의를 얻었는데, 이는 헉슬리의 종교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헉슬리의 제안이 지지를 얻은 이유는 그것이 종파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신학적 입장을 배제한 성서 읽기를 지지했던 교육가들의 입장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파의 차이는 있더라도 성서에 신적 권위를 부여했던 교육가들은 학교에서 읽을 성서의 부분에 선별이 필요하다는 헉슬리의 주장 - 비과학적인 구절은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 - 에는 반대했다. 사실 이러한 차이는 과학 지식인으로서 헉슬리가 가졌던 윤리관의 중요한 면을 부각한다. 권위에 대한 맹신은 그에게 비윤리적인 것이었다.

21) Huxley, “School Board,” p. 397; White, *Huxley*, pp. 127–128.

3. 과학적 탐구의 윤리적 의미: 권위에 대한 맹신 몰아내기

자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헉슬리가 고안해낸 단어가 불가지론자(agnostic)와 불가지론(agnosticism)이다. 헉슬리 자신에 의하면 불가지론은 “과학의 본질(essence of science)”로서 “알거나 믿는다고 고백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안다고 혹은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²²⁾ 헉슬리는 이 원칙이 “지적인 만큼이나 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²³⁾ 같은 맥락에서 헉슬리는 자신과 같이 실험과 관찰의 방법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회의주의는 가장 큰 의무이고 맹신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이며 “과학 지식인은 믿음이 아닌 증명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not by faith, but by verification)”를 믿는다고 말했다.²⁴⁾ 이처럼 그는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말할 때 윤리적 함의를 지닌 언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과학의 가치를 강조하는 수사법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헉슬리의 윤리관을 다룬 연구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본 장에서는 헉슬리의 생각 속에서 과학적 태도가 윤리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살펴보려 한다.

헉슬리는 1893년 작성한 『에세이집4』의 머리말에서 성서숭배(bibliolatry)를 공격했다. 그에 의하면 인류의 지적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성서의 많은 기록들 - 우주의 형성, 여성의 창조 방식, 대홍수, 귀신 들림과 축사(exorcism) 등 - 을 문자 그대로 믿기 어려워졌다. 기독교 옹호론자들(apologetics)조차 성서의 신적인 원천을 의미하는 “영감(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 영감(plenary inspiration) 대신 일종의 “제한이 있는 영감(inspiration with limited liability)”을 제

22) Thomas Huxley, “Agnosticism: A Symposium,” *The Agnostic Annual* (1884), <http://aleph0.clarku.edu/huxley/UnColl/Rdetc/AgnAnn.html> (2024년 4월 26일 검색).

23) Thomas Huxley, “Agnosticism and Christianity [1889],” *Collected Essays V* (London, 1893).

24) Thomas Huxley, “On the Advisableness of Improving Natural Knowledge [1866],” *Collected Essays I* (London, 1893), pp. 40–41. 이 문구는 기독교의 구원론에 등장하는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를 변형한 것이다.

시하고 있었는데, 헉슬리는 그 “제한”이 과학적, 문헌학적 비평의 전진에 따라 커진다고 주장했다. 옹호론자들은 신적 영감이 인간 기록자의 필터를 거치면서 생긴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껏 신적 권위로 여겨지던 것에 인간적 요소의 침입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추가적인 침입의 제한선을 긋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옹호론자들은 성서가 다른 것이 아닌 윤리와 종교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라고 말하며 신적 권위가 도덕법을 위한 유일하게 안전한 기초라고 주장했지만, 헉슬리에게 성서 기록의 신뢰성은 과학적 탐구의 영역이었다. 성서송배는 생각의 자유와 과학적 조사의 정신을 억압함으로써 지적, 도덕적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그는 “성서송배가 만연한 곳에서는 어디든 고집불통(bigotry)과 잔인함(cruelty)이 뒤따른다”고 보았다.²⁵⁾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는 헉슬리의 1889년 에세이 『불가지론』에서 제시되었는데, 그는 귀신에 대한 성서의 기록을 맹신한 결과 근대 초의 마녀사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성서에는 예수가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귀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헉슬리는 그것을 고대에 일반적으로 퍼져있던 미신 - 악령(demons)과 악령에 의한 지배(demoniacal possession)에 대한 믿음 - 의 한 형태로 보았다. 그러한 미신은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에 질병의 원인을 영적인 존재에게 돌리는 습관이며, 사람들의 지성과 교육 수준이 개선되면서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헉슬리가 보기에 성서에 등장하는 귀신들림의 증상은 발전된 생물학과 병리학의 지식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자연적(natural) 현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악령에 대한 고대의 미신은 긴 세월동안 지속되었다. 15-17세기의 역사를 볼 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를 아우르는 기독교도는 여전히 성서의 여러 구절에 기초하여 “귀신들림과 마녀술(witchcraft)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고, 이러한 믿음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통해 “수천 명의 무죄한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에 대한 가장 끔찍한 박해와 사법살인(judicial murders)”을 낳았다.²⁶⁾

25) Thomas Huxley, “Preface [1893],” in *Collected Essay IV* (London, 1893), pp. vi-x.

26) Thomas Huxley, “Agnosticism [1889],” in *Collected Essays V* (London, 1893), pp. 214-216.

더 나아가 헉슬리는 기독교의 교리적 독선이 품고 있는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헉슬리는 당시 런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의 총장 웨이스(Henry Wace)가 불가지론자를 두고 한 말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웨이스에 의하면 “그[불가지론자]의 진짜 이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신앙심이 없는 사람(infidels), 즉 불신자(unbeliever)”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불쾌한(unpleasant) 것이며 또한 그러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헉슬리는 그 말이 불쾌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지 아닌지에 달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무슬림이나 불교 신자에게 불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더 나아가 헉슬리는 누군가가 진지한 숙고를 통해 믿는 것이 “불쾌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심각하게 비도덕적인(immoral)” 명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모든 교회가 유지해온 “치명적인 교리(pestilent doctrine)”, 즉 신조에 대한 정직한 불신앙이 도덕적 위반이며 가장 심각한 죄로서, 살인이나 강도와 마찬가지로의 보상을 미래에 받아 마땅하다는 교리가 기독교에 의해서 성취된 커다란 선을 상쇄해 버린다고 한탄했다. 기독교 국가들의 역사에서 이 교리로부터 흘러나온 “위선과 잔인함, 거짓말, 살육, 인간적 의무 위반의 급류”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그 광경은 “지옥에 대한 최악의 상상”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할 것이었다. 그 교리에 대한 헉슬리의 대답은 “천 번의 아니오! 누군가 정직하게 믿거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쾌해서는 안 된다”였다. 그것이 불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인 “말과 행동에서의 정직”의 면에서 인류가 진보를 이루는 데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²⁷⁾

종교적 맹신에 대한 헉슬리의 적대감은 당시 영국의 자선 및 사회 운동 단체인 부스(William Booth)의 구세군(Salvation Army)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었다. 도시 빈민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세군의 노력은 대체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헉슬리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는 구세군에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 그의 의견을 구한 자선가에게 답변을 주기 위해 부스가 구세군의 개혁 청사진을 담아 1890년 10월 출간한 『가장 어두운 영국』(*In Darkest England and the Way Out*)을 검토했는데, 그의 결론은

27) *Ibid.*, pp. 210, 240-241.

구세군에 대한 반대였다. 헉슬리는 사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구세군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부스가 주장하는, 개혁의 유일하게 적절한 방식은 구세군이 제시하는 “다소 광적인(corybantic) 형태의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었는데, 헉슬리는 종교적인 감정이 주는 흥분이 인류의 행동을 영구적으로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²⁸⁾

더 큰 문제는 구세군의 작동 방식이었다. 구세군은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 훈련받았고 모든 병사는 상급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의무를 가졌다. 그는 이와 비슷하게 절대 복종을 원칙으로 삼았던 역사적인 선례들 - 프란치스코(Francis of Assisi)가 이끌었던 프란치스코 수도회, 로올라(Ignatius Loyola)가 창시한 예수회 - 이 오래 지나지 않아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구세군과 같은 복종의 시스템은 지도자의 폭정을 낳는 “내재된 악(inherent evil)”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부스가 구세군이 받는 기부금 내역과 회계 장부의 투명한 운영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헉슬리는 기금의 사용에 대해 부스의 책임을 물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천 명의 구세군에 대해 무제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스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²⁹⁾ 헉슬리는 당대의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었지만 구세군과 관련해서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모양새였다. 그는 구세군 진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 논객의 반론에 직면했고, 그가 반대했던 부스의 계획을 위한 모금은 1890년 12월에 이르면 9만 파운드에 달했다. 수 만권이 팔린 부스의 『가장 어두운 영국』은 여덟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을 정도로 그의 제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³⁰⁾ 구세군에 대한 헉슬리의 공격에 대해 한 전기 작가는 “돈키호테적(Quixotic)”이라고 묘사했다.³¹⁾ 부스의 운동에 대한 헉슬리의 이상하리만치 적대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그의 열렬한 지지, 그리고 동전의 뒷면인 종교적 권위 맹신에 대한 도덕적 혐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8) Thomas Huxley, “The ‘Times,’ December 1st, 1890,” in *Collected Essays IX*, pp. 237-239.

29) Thomas Huxley, “Social Disease and Worse Remedies [1891],” in *Collected Essays IX*, pp. 192-193; Huxley, “The ‘Times,’ December 1st, 1890,” pp. 239-244.

30) White, *Huxley*, pp. 162-166.

31) Paradis, *Huxley: Man's Place in Nature*, p. 85.

헉슬리는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을 도덕적 해악으로 간주했다. 그가 보기에는 “무지하고 무절제한 종교적 광신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악은 거의 없으며, 무제한의 권위에 대한 맹종보다 더 확실하게 양심과 지성을 타락시키는 개인적 습관은 없”었다. 맹신은 “생각의 매춘”이자 “양심의 무력화”였다.³²⁾ 헉슬리는 구세군에 대해서처럼 격렬한 공세는 아니어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종교적 신앙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당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이 도덕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믿었지만 헉슬리는 오히려 종교적 신앙이 도덕성을 침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덕성 함양에 대한 기독교의 기여를 그가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기독교가 스토아철학과 유대교를 포함한 선조로부터 도덕적 유산을 물려 받았다고 보았다. 헉슬리는 도덕이 잘 맞지 않던 이전의 옷을 벗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것 대신 “과학이 제공하는 가볍고 편한 옷”을 입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³³⁾

4. 윤리의 과학적 토대

과학은 어떻게 윤리의 토대를 제시할 수 있는가? 윤리가 “과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위의 제안은 헉슬리의 1886년 에세이 『과학과 도덕』에 나오는 것이다. 헉슬리는 이 글에서 “도덕의 안전성은 이러저러한 철학적 사색이나 신학적 신조의 채택”이 아니라 “자연의 고정된 질서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했다. 헉슬리가 말하는 자연의 질서는 자연세계와 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 “물리적 위반에 대해서는 물리적 질병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부도덕의 궤도 위로 사회적 해체 (social disorganisation)를 보내”는 것이었다.³⁴⁾ 이러한 내용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패러디스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헉슬리를 일부 오해하게 했다. 즉, 헉슬리가 한 때는 자연을 도덕성의 토대로 삼았던 반면 후기에는 사회적 도덕과 자연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은 헉슬리가 이른 시기에도 인간사회의 성격(nature)과 물질세계로서의 자연을 구분했

32) Huxley, “The ‘Times,’ December 1st, 1890,” pp. 243–244.

33) Thomas Huxley, “Science and Morals [1886],” in *Collected Essays IX*, p. 145.

34) *Ibid.*, “Science and Morals,” p. 146.

다는 점을 암시한다 - 넓은 의미로 자연(nature)이라는 용어를 두 영역 모두에 사용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자연의 고정된 질서”는 물리적 세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 존재했지만 전자의 질서는 도덕과 무관한 것 - 물리적 법칙과 생물의 생존 투쟁 - 이었고 후자의 질서는 도덕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두 영역 사이의 관계는 이하에서 헉슬리가 생각한 윤리의 근거를 논하면서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헉슬리에게 도덕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탐구의 영역이었고, 그 관찰 대상은 인간과 사회라는 현상이었다.³⁵⁾ 도덕성이 신학적 혹은 철학적 견해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헉슬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의 시력이 빛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달려 있다거나, 어떤 사람이 생강의 성격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갖기 전까지는 생강의 매운 맛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도덕은 형이상학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대한 자연적 지식(natural knowledge)의 영역, 즉 어떤 개인의 행동이 사회의 전반적 행복을 늘리거나 불행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다. 절도나 살인이 사회의 행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부도덕이 아닐 것이다. 자비(benevolence)와 정의(justice)가 가장 뛰어난 덕목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그것들이 사회에 주는 유익 때문이다. 그런데 덕목이 개인에게 도덕적 의무감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감이라는 감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존재이다. 자비와 정의가 누군가에게 주는 기쁨을 내가 인지한다면 내 안에서 공감적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도덕성이란 이성이 아닌 감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헉슬리는 말했다. 이성을 통해 인간 행동의 결과를 추적하고 도덕적 행동의 지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도덕은 이성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물리적 자연의 법칙(laws of physical nature)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법칙은 자연 현상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덕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본능적 직관(instinctive intuitions)에 기초를 두는 것이었다. 이성을 통해 물리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법칙은 결국 현상에 기초한 것과 마찬

35) 2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헉슬리는 엄밀한 의미의 자연을 현상적 세계의 총체로 정의했고 사회 역시 자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Thoams Huxley,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Human Society [1888],” in *Collected Essays IX*, p. 202; Thomas Huxley, “Evolution and Ethics - Prolegomena, [1894]” in *Collected Essays IX*, p. 11.

가지로, 도덕법 역시 인간의 본성에 그 근거를 둔다고 헉슬리는 생각하였다.³⁶⁾

헉슬리는 도덕성의 원리와 도덕적 능력이 다른 분야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어떤 사람은 쉬운 수학적 공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수학의 원리가 인류에게 적용되는 정도를 줄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안목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작품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갖추지 않고,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실이 도덕성의 기초 -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 - 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 편 뉴턴(Newton)과 라파엘(Raffaello)이 지식의 새로운 가능성과 아름다움의 새로운 관념을 인류에게 제공한 것처럼 도덕적인 면에서 비범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르침과 삶을 통해 도덕적 완벽함의 이상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뒤따를 수 없었다. 다만 인류는 그 도덕적 이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모방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다. 즉, 헉슬리는 지적, 심미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연관된 도덕적 원리가 존재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⁷⁾

도덕법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도덕적 본성 - 공감 능력에 기초한 - 은 어디에서 왔는가? 예상할 수 있듯이 헉슬리는 진화의 과정에서 그 답을 찾았다. 초기 인류는 개선된 뇌, 정교한 발성, 모방 능력 등에서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지녔다. 늘어난 수명과 긴 양육기간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이 두터워졌다. 그리고 인류 안에서 강하게 개발된 가장 중요한 경향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자신 안에서 재생산하는 것이었다. 헉슬리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흉내를 잘 내며 단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모방을 하기도 했다. 인간은 매우 다양한 감정을 가지며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

36) Thomas Huxley, "A Modern Symposium I: Influence upon Morality of a Decline in Religious Belief," *The Nineteenth Century* (May, 1877), <http://aleph0.clarku.edu/huxley/UnColl/19th/SYMP1.html> (2024년 5월 6일 검색); Thomas Huxley, "The Principles of Morals [1894]," in *Collected Essays VI* (London, 1894), pp. 228-239.

37) *Ibid.*, pp. 239-240.

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서 공감 능력과 도덕적 감정이 개발되었다.³⁸⁾

하지만 공감에 기초한 도덕심이 나타났다고 해도, 인간이 가진 동물적 본성 - 생존을 위한 이기적 본능 - 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개인의 이기심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간신히 형성된 사회 - 인간 집단의 생존을 위해 유리한 삶의 방식 - 는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적절한 제약을 가하는 행동 규범이 정교해지게 되었다. 헉슬리에게, 동식물을 포함하는 자연계와 인간 사회의 구분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인류를 동물과 구별해 주는 윤리적 과정은 동물의 사회보다 정교한 규범을 갖는 인간 사회의 형성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 개인이 사회의 규칙을 어기려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헉슬리에 의하면 고대인들의 지적, 교육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를 통해 도덕규범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초자연적 권위를 내세우는 종교가 동원되었다. 헉슬리가 보기에는 고대 이래의 기독교 역시 이전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을 부과하는 도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제 도덕이 종교를 벗어나 과학적, 합리적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보았다.³⁹⁾

인간 사회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 도덕을 과학적 이성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헉슬리의 비전은 그가 말년에 진행했던 강연인 『진화와 윤리』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헉슬리가 강연 속에 다양한 주제를 화려한 수사와 비유를 통해 녹여냈기 때문에 『진화와 윤리』는 오해를 포함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⁴⁰⁾ 헉슬리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진화와 윤리 - 서문』을 저술했다.⁴¹⁾ 『서문』이 담긴 에세이집의 머리말에서 헉슬리는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외관상 모순처럼 보이는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서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 명제는 “윤리적 본성(ethical nature)은 우주적 자연(cosmic nature)으로부터 태어났지만 필연적으로 그 부모와 적대적”이라는 것이

38) Thomas Huxley, “Prologue [1892],” in *Collected Essays V*, pp. 51-52; Huxley, “Prolegomena, [1894]” pp. 28-30.

39) Huxley, “Prologue [1892],” pp. 50-55.

40) 『진화와 윤리』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해석에 대해서는 James Paradis, “Evolution and Ethics in Its Victorian Context,” pp. 42-52; 김기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시대의 초상」, pp. 60-68.

41) Thomas Huxley, “Evolution and Ethics - Prolegomena [1894],” in *Collected Essays IX*, pp. 1-45.

었다.⁴²⁾ 헉슬리가 말하는 “우주적 자연”은 물질 세계의 성질과 원리를 의미하며 생물의 생존 투쟁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헉슬리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던 인간이 특정한 단계에서 정교한 사회와 도덕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요소가 인간 사회를 그 바깥 세계와 구분해 주었다. 『진화와 윤리』에서 헉슬리는 이 점을 더 뚜렷하게 했다. “사회의 윤리적 진보는 우주적 과정을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윤리적 진보는 우주적 과정과 맞서 싸우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⁴³⁾

헉슬리의 강연에서 인간과 우주과정 사이의 투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우주의 파괴적인 힘에 맞서 인간 사회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자연 상태의 들판을 정원 - 인간 사회의 은유 - 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주적 자연의 힘에 의해 다시 잡초로 무성해질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전선은 인간 내면에 있는 우주적 본성, 즉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윤리적 진보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두 번째 전선이다. 하지만 첫 번째 전선도 무관하지 않다. 인간 사회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면 윤리는 무너져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가 우주적 과정의 산물이지만 우주적 과정에 맞선다는 명제는 일견 모순처럼 보인다고 해도 헉슬리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 (fact)”이라고 단언했다.⁴⁴⁾ 그는 도덕적 감정이 진화의 산물임을 인정하지만 비도덕적 감정 역시 진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이기적 성향은 윤리적 본성보다 훨씬 오랫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생성된 강력한 것으로, 윤리적 진보가 인간 안의 우주적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어리석은 상상”이었다.⁴⁵⁾

하지만 헉슬리가 윤리적 진보의 미래와 관련하여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는 이성적 인간이 진보의 잠재력을 지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진화와 윤리』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지점이다. 헉슬리가 『진화와 윤리』 그리고 『서문』에서 인간 문명이

42) Thomas Huxley, “Preface [1894],” in *Collected Essays IX*, p. viii.

43) Huxley, “Evolution and Ethics [1893],” p. 83.

44) Huxley, “Prolegomena, [1894]” pp. 11-13.

45) Huxley, “Evolution and Ethics [1893],” pp. 84-85.

오랫동안 번성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주적 과정이 지구를 압도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비친 것은 사실이다.⁴⁶⁾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이 “지성의 사용과 교육”을 통해 “커다란 진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⁴⁷⁾ 헉슬리는 『진화와 윤리』 강연의 끝부분에서 “정확한 지식의 면에서 유아기였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근원적 악의 감소라는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는 학문의 발전을 통한 인류의 지적 수준 향상이었다.⁴⁸⁾

특히 헉슬리는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학문의 발전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인류의 문명이 전진하면서 우주적 과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증가하였는데, 헉슬리에 의하면 특히 지난 200년 동안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변화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는 천문학, 물리학, 화학 분야의 성과가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반면 “생명의 과정 그리고 생명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제 막 시작” 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분야로 헉슬리가 꼽은 것은 생리학,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이었다. 즉, 생물학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 분야를 아울렀다. 헉슬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 분야가 다른 학문들 못지 않게 “실천의 영역에서 위대한 혁명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⁴⁹⁾

헉슬리에게 세상은 자연 - 현상의 총체(사실) - 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인간 사회 역시 (넓은 의미의) 자연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그 외의 자연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덕성의 원리로 운영된다는 것이었다. 도덕성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주적 과정의 자식이었으나, 일반적인 생물계의 생존 경쟁 원리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주적 과정과 대립하였다. 헉슬리는 윤리적 과정이 우주적 과정과의 투쟁을 통해 진보해 나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투쟁을 이끌어 나갈 동력이 인류의 지적, 과학적 발전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헉슬리가 윤리와 과학의 분리를 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을 지적 진보의 기본 방식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생리학을

46) 김기윤, 「토마스 헉슬리와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 『역사학연구』, 63집 (2016), p. 236.

47) Huxley, “Prolegomena, [1894]” p. 44.

48) Huxley, “Evolution and Ethics [1893],” pp. 85-86.

49) *Ibid.*, pp. 83-84.

포함한, 인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윤리적 진보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자연계와 인간 사회는 일정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고, 그 질서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추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과학 지식인으로서 헉슬리가 자임했던 역할이었다.

5. 나가며

과학 지식인의 정체성을 가졌던 헉슬리는 과학적 방법론과 그 성과를 비판으로 삼아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과학교육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과학교육 못지않게 윤리 교육 또한 강조했다. 진정한 교육, 즉 세상이라는 체스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규칙은 체스의 그것보다 복잡한 것이었고, 헉슬리는 자연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의 작동 원리와 윤리적 원칙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과학적 탐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불에 닿으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난로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행동 역시 과학적 근거와 함께 교육되어야 했다. 흠치면 안 된다고 단순히 주입하는 것보다는, 절도가 초래할 무질서가 사회와 자신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는 원리를 설명할 때 교육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었다. 헉슬리에게 윤리는 지식뿐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었다. 그는 도덕적 감정, 즉 윤리적 이상에 대한 애정을 종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헉슬리는 학교에서 성서 읽기를 통해 윤리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성서 읽기는 교육을 위한 도구에 머물러야 했다. 헉슬리는 성서의 텍스트를 넘어서 특정한 종파의 신학적 해석이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헉슬리가 종교의 악습으로 간주한, 권위에 대한 맹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헉슬리에게 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은 그 자체로 윤리적 덕목의 - 특히 정직함의 - 실천이었던 반면, 권위에 대한 맹신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며 거짓과 폭력으로 발전할 위험이 컸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근대 초의 마녀사냥은 종교적 맹신이 낳은 비윤리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헉슬리는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종교에 대한 불신앙을 도덕적 위반이자 신

적 징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헉슬리는 그러한 태도가 역사 속에서 많은 위선과 거짓을 양산했고, 정직의 덕목에서 인류가 진보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헉슬리는 윤리가 과학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물리법칙이 물질계에 내재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의 원칙은 인간과 사회의 본성에 깃들여 있었다. 과학적 탐구에 의하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류는 생존을 위한 이기적 본성뿐 아니라 공감 능력에 기초한 도덕적 본성을 획득하였다. 고대의 지도자들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구성원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한편 도덕적 행동을 장려해야 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초자연적 권위를 내세우는 종교가 형성되었다. 헉슬리가 보기에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는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는 했지만, 맹신을 부추김으로써 비윤리적인 결과를 낳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제 윤리 수호자의 역할은 과학이 담당해야 했다. 헉슬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탐구,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 판단과 믿음이 인류의 지적, 윤리적 진보를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과학적 지식의 진보가 이전까지 사회를 떠받쳐온 종교적 권위를 침식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질서의 근간으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우세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적 윤리를 세속적 토대 위에 세우려 했던 헉슬리의 노력은 선구적인 것이었다. 인간 사회를 포함하는 현상의 총체로서 자연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 헉슬리의 윤리관은 다원적 가치의 존중과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이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도덕적, 사회적 규범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헉슬리를 통해 우리는 특정한 종교나 이념의 가치보다는 현상에 대한 냉정한 관찰과 분석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다.

【참고문헌】

1차 사료

- Huxley, Thomas, “On the Advisableness of Improving Natural Knowledge [1866],” in *Collected Essays I* (London, 1893), pp. 18-41.
- Huxley, Thomas, “A Liberal Education; and Where to Find It [1868],” in *Collected Essays III* (London, 1893), pp. 76-110.
- Huxley, Thomas, “The School Boards: What They Can Do, and What They May Do [1870],” in *Collected Essays III* (London, 1893), pp. 374-403.
- Huxley, Thomas, “Science and Morals [1886],” in *Collected Essays IX*, (London, 1894), pp. 117-146.
- Huxley, Thomas,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Human Society [1888],” in *Collected Essays IX*, (London, 1894), pp. 195-236.
- Huxley, Thomas, “Agnosticism [1889],” in *Collected Essays V* (London, 1893), pp. 209-262.
- Huxley, Thomas, “Agnosticism and Christianity [1889],” in *Collected Essays V* (London, 1893), pp. 309-365.
- Huxley, Thomas, “The ‘Times,’ December 1st, 1890,” in *Collected Essays IX*, (London, 1894) pp. 237-247.
- Huxley, Thomas, “Social Disease and Worse Remedies [1891],” in *Collected Essays IX* (London, 1894), pp. 188-194.
- Huxley, Thomas, “Prologue [1892],” in *Collected Essays V* (London, 1893), pp. 1-58.
- Huxley, Thomas, “Evolution and Ethics [1893],” in *Collected Essays IX* (London, 1894), pp. 46-116.
- Huxley, Thomas, “Preface [1893],” in *Collected Essay IV* (London, 1893), pp. v-xiv.
- Huxley, Thomas, “Evolution and Ethics - Prolegomena, [1894]” in *Collected Essays IX* (London, 1894), pp. 1-45.
- Huxley, Thomas, “Preface [1894],” in *Collected Essays IX*, (London, 1894), pp. v-xiii.

Huxley, Thomas, “The Principles of Morals [1894],” in *Collected Essays VII* (London, 1894), pp. 228-242.

2차 사료

김기윤, 「혁슬리의 “진화와 윤리”: 시대의 초상」, 『한국과학사학회지』 28권 1호 (2006), pp. 55-79.

김기윤, 「토마스 혁슬리와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 『역사학연구』, 63집 (2016), pp. 221-245.

송진웅, 조숙경, 「영국 학교 과학교육의 개척자 T. H. Huxley – 생애와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권 1호 (2001), pp. 38-58.

Bibby, Cyril, *T. H. Huxley: Scientist, Humanist and Educator* (London, 1959).

Bibby, Cyril, *T. H. Huxley on Education* (1971, Cambridge).

Bibby, Cyril, *Scientist Extraordinary: the Life and Scientific Work of Thomas Henry Huxley, 1825-1895* (New York, 1972).

Desmond, Adrian, *Thomas Huxley: From Devil’s Disciple to Evolution’s High Priest* (London, 1998).

Farber, Paul Lawrence, *The Temptations of Evolutionary Ethics* (Berkeley and Los Angeles, 1994).

Helfand, Michael S., “T. H. Huxley’s “Evolution and Ethics“: The Politics of Evolution and the Evolution of Politics,” *Victorian Studies*, vol. 20, no. 2 (Winter, 1977), pp. 159-177.

Huxley, Leonard, *Life and letters of Thomas Henry Huxley*, 2 vols. (London, 1900).

Paradis, James, *T. H. Huxley: Man’s Place in Nature* (Lincoln, 1978).

Paradis, James, “Evolution and Ethics in Its Victorian Context,” in James Paradis and George C. William, eds., *Evolution & Ethics: T. H. Huxley’s Evolution and Ethics with New Essays on Its Victorian and Sociobiological Context* (Princeton, 1989), pp. 3-56.

Smith, Roger, *Free Will and the Human Sciences in Britain, 1870-1910* (London, 2013).

Turner, Frank, *Contesting Cultural Authority: Essays in Victorian Intellectual Life* (Cambridge, 1993).

White, Paul, “Huxley, Thomas” in Hessenbruch, Arne ed. *Reader’s Guide to the History of Science* (London, 2000).

White, Paul, *Thomas Huxley: Making the “Man of Science”* (Cambridge, 2003).

인터넷 자료

Desmond, Adrian, “Huxley, Thomas Henry,”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2004), <https://doi.org/10.1093/ref:odnb/14320> (검색 일자: 2024년 2월 21일).

Huxley, Thomas, “A Modern Symposium I: Influence upon Morality of a Decline in Religious Belief,” *The Nineteenth Century* (May, 1877), <http://aleph0.clarku.edu/huxley/UnColl/19th/SYMP1.html> (검색일자: 2024년 5월 6일).

Huxley, Thomas, “Agnosticism: A Symposium,” *The Agnostic Annual* (1884), <http://aleph0.clarku.edu/huxley/UnColl/Rdetc/AgnAnn.html> (검색 일자: 2024년 4월 26일).

「토머스 헉슬리의 과학적 윤리관」 토론문

오종현 (전남대학교)

토머스 헉슬리의 윤리관을 다룬 본 논문은 그의 철학적 견해를 교육과 도덕성의 맥락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헉슬리는 생물학자로서 진화론을 강력히 옹호했으나, 그의 관심사는 과학적 탐구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쟁점, 특히 윤리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헉슬리의 윤리관과 도덕 교육에 대한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우선, 헉슬리가 도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현대 교육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기르기 위해 도덕성 함양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헉슬리는 도덕성의 토대가 종교적 권위가 아닌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맹신이 비윤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도덕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헉슬리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강조는 그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혁신적입니다. 당시 많은 사회가 종교적 권위에 크게 의존했으며, 헉슬리는 이러한 권위가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실적 증거와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과학적 방식을 통해 윤리적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직함과 같은 덕목을 강조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헉슬리의 주장에는 몇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 방법론만으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지만, 윤리적 결정은 종종 가치 판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론이 윤리적 판단의 전부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종교적 권위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과학적 방법론

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헉슬리의 윤리관은 도덕 교육의 방법론과 목적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도덕 교육은 합리적 판단과 사실에 기반한 윤리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들이 존재하며, 종교적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윤리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헉슬리의 주장은 이러한 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토론자의 전문 분야가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개인적인 궁금증에 기반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적 윤리와 현대 윤리의 비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헉슬리의 윤리관이 19세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논문 전반에서 현대 사회에서 그의 윤리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합니다. 현대 윤리학과의 비교를 통해 헉슬리의 사상이 현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윤리, AI 윤리, 생명 윤리 등의 현대적 이슈에서 헉슬리의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윤리적 진보와 과학적 발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헉슬리는 과학적 발전이 윤리적 진보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헉슬리가 직접적으로 기여한 과학적 발견이나 이론(예: 진화론의 옹호)이 어떻게 윤리적 진보를 촉진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시들이 헉슬리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예: 헉슬리의 과학적 논쟁과 사회적 영향)를 추가해 주신다면 역사적 영향력이나 연구 대상자의 가치가 더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헉슬리의 과학 교육 철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헉슬리는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육 철학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평가가 추가된다면, 그의 교육 철학의 실질적인 영향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헉슬리의 교육 방법론이 오늘날 과학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헉슬리의 이론에 관하여 비판적 시

각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논문은 헉슬리의 주장을 주로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 즉 그의 과학적 윤리관이 가진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추가된다면, 헉슬리의 윤리관을 더욱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헉슬리의 과학적 방법론이 윤리적 결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예: 과학적 중립성의 문제, 인간의 가치와 감정의 중요성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포함된다면, 헉슬리의 윤리관을 더욱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 시대와 주제에 있어서 거리감이 있는지라 부족한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론을 통해 부족한 해안을 넓혀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 호남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신진교수,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다

소련 수리경제연구소의 형성과 소련 경제학의 변화

발표 : 김동혁(광주과학기술원)

토론 : 이정하(광주과학기술원)

소련 수리경제연구소의 형성과 소련 경제학의 변화

김동혁 (광주과학기술원)¹⁾

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근대 서구 기술 및 지식과 생활양식이 전지구적으로 보편화된 시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적 근대의 보편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냉전이었다.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경쟁 속에서 탈식민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전지역에서 개발과 발전에 대한 열망으로 양 진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편적 체제들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두 체제는 서로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우 닮아있는 측면을 여러 부분에서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양 진영의 경제학 이론과 사상에서의 유사성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에서 다른 모든 지점에서 공유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대립적이고 이질적이라고 주장해왔던 경제사상 측면에서의 이상한 공유지점, 특히 20세기 신고전과 경제학적 경향은 매우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다.

신고전과 경제학이란 고전파적 접근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법의 한 방향으로 등장해서 20세기 이후 주류경제학의 지위를 차지한 학파이다. 신고전파적 접근은 고전과 경제학이 맞닥뜨린 이론적 난점과 연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임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대전환이기도 했다. 신고전과 경제학은 1870년대부터 영국과 유럽 대륙의 경제학자들이 발전시켜오다가, 뵘바베르크, 마셜, 파레토, 피셔 등을 거쳐 체계를 갖추었으며, 한계주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 경제학은 수학의 한계(marginal) 개념을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개념의 하나로 정립시키면서 동시에 경제학적 문제에 대한 사고에 근

1)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한계주의 경제학은 경제학 문제의 핵심을 고전학파의 잉여에서 희소성으로 변화시키면서 연구주제를 고전학파의 중심 주제였던 성장과 분배과정에서 교환과 가격결정 문제로 전환시켰다.

신고전과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시기(1920-30년대)는 공교롭게도 러시아 혁명 이후 최초의 계획경제 체제인 소비에트 경제 체제가 자신의 발전 방향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시기와 맞물린다. 소련 경제학자들도 이미 1870년대부터 시작된 신고전파적 조류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고전파적 인식 전체에 대한 이 시기 소련 경제학계의 입장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었다. 이미 소련 경제학자들에게도 수학적 방식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1920년대까지 신고전과 경제학 개념의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학계 내부에서도 랑가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신고전과 경제학을 적용하려는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1920년대 말 이후 소련 경제학계의 공론장에서 신고전파적 경향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그러나 소련 경제학계 내 신고전파적 경향의 경제학적 사고는 스탈린 시기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넴치노프, 칸토로비치, 노보질로프와 같은 인물들이 여전히 수리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의 경제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부상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새로운 경향으로서 소련 수리경제학, 그 중에서도 신고전과 경향의 경제학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63년 이후 중앙수리경제연구소, 학술원 시베리아 지부 수리경제연구소들 및 경제 사이버네틱스 관련 연구소와 학과들이 설립되고, 이 시기에 정식 수리경제학 대학교육을 받은 첫 졸업자들이 학계와 경제 실무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경제 담론 전체에 신고전파적 경향의 수리경제 담론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실제 경제 실무에서 많은 변화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사상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1963년 설립된 중앙수리경제연구소이다.

소련 중앙수리경제연구소 와 소련 경제학계의 변화

김동혁(GIST)



I. 도입



■ □ 20세기 경제 이론의 변화 연구

- ▲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 매우 중요한 연구
- ▲ 소련과 같은 수직적 행정명령체계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경제 이론의 변화는 더욱 중요
 -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이 지배한다는 고정관념
 - 매우 경직적 이론 체계라는 고정관념
- ⇒ 소련 경제학의 수리경제학적 변화 연구: 기존 관념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중요

I. 도입(계속)



■ □ 소련 수리경제학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 ▲ 앞서 언급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소련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
- ▲ 특히, 소련의 중심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신고전파 테제의 소련적 부활이라는 점 흥미로움

■ □ 소련 중앙수리경제연구소에 대한 연구

- ▲ 소련 수리경제학의 주요 엔진으로서 기능한 중앙수리경제연구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련 수리경제학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GIST

II. 소련 수리경제학 연구 집단의 성장



■ □ 소련 수리경제학파

- ▲ 1950년대 후반 이후 소련 경제학계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1960년대 이후 소련 경제학 이론과 경제 관리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학술 집단

■ □ 소련 수리경제학파의 특징

- ▲ 경제학에 수학적 방법의 적용 혹은 경제학의 수리화
- ▲ 더 중요한 특징: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요 개념의 내재화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GIST

II. 소련 수리경제학 연구 집단의 성장(계속)



■ □ 신고전파 경제학의 특징과 역사적 중요성

- ▲ 신고전파 경제학: 고전파적 접근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법의 한 방향으로 등장해서 20세기 이후 서방의 주류경제학의 지위를 차지한 학파
- ▲ '한계주의 혁명': 미분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기법에 근거하여 '한계' 개념을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개념의 하나로 정립
- ▲ 한계주의 혁명의 역사적 중요성
 - 경제학적 문제의 핵심을 고전학파의 '잉여'에서 '희소성'으로 변화
 - 한계주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연구주제를 성장과 분배과정에서 교환과 가격결정 문제로 전환 → 한계주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연구주제를 **성장과 분배과정**에서 교환과 가격결정 문제로 전환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GIST

II. 소련 수리경제학 연구 집단의 성장(계속)



■ □ 소련 수리경제학파의 신고전파적 성격

- ▲ 소련 수리경제학의 경제에 대한 기본 가정: 신고전파적
 - 신고전파 가격이론은 1950년대 후반 이후 소련에서 발전하는 수리경제학파의 가격책정이론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성을 보임 (희소성 강조, 기회비용적 가격이론, 지대이론)
- ▲ 1920 - 30년대 사회주의 경제 논쟁에서 신고전파적 사회주의 경제 이론 등장
 - 소련의 1920년대 수리경제 연구자들
 - 오스카 랑게의 사회주의 계산 논쟁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GIST

II. 소련 수리경제학 연구 집단의 성장(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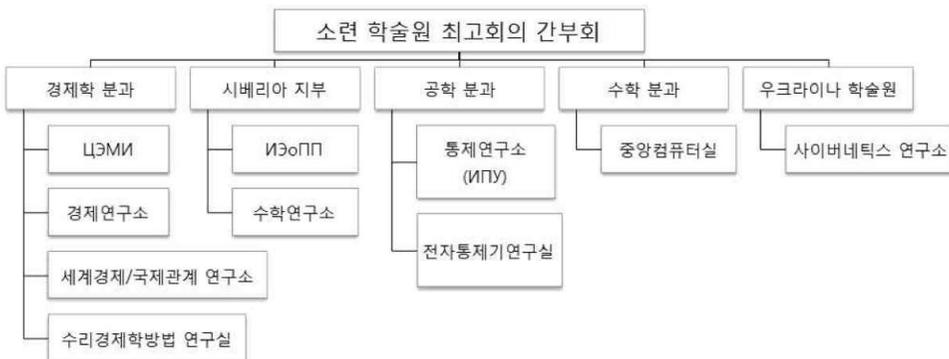
■ □ 소련 수리경제학파의 형성과 발전

▲ 소련 수리경제학의 창시자들



II. 소련 수리경제학 연구 집단의 성장(계속)

■ □ 소련 수리경제학 연구 기관들의 성장



III. 소련 중앙수리경제연구소의 설립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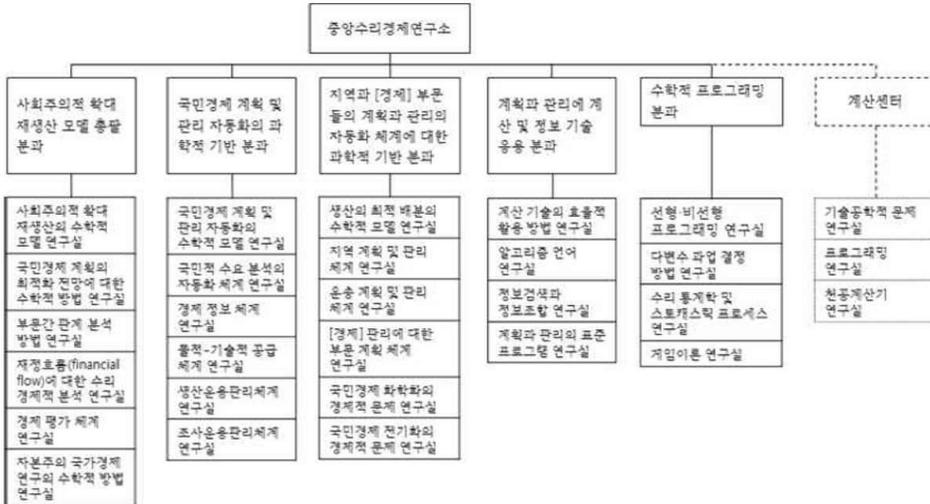


도표 2-1. 중앙수리경제연구소 구조

III. 소련 중앙수리경제연구소의 설립과 발전(계속)

■ 중앙수리경제연구소의 발전

▲ 중앙수리경제연구소장: 페도렌코(Федоренко, Николай Прокофьевич,

1964 - 1984)

▲ 소련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학자들 성장

- 카체넬린보이겐, 샤탈린 등



IV. 향후 과제



■□ 소련 경제이론과 경제운동에서 중앙수리경제연구소의 역할

- ▲ 중앙수리경제연구소의 소련 경제학계에서의 위상 변화에 대한 것
- ▲ 소련 경제관리 메커니즘 변화에서 중앙수리경제연구소의 영향
- ▲ 1980년대 소련 경제 개혁에서 중앙수리경제연구소의 역할

■□ 전지구적 신고전파 전환의 일환으로서 소련 수리경제학

Full Name	Current Position	Previous Position and Organization	Start Date of Laboratory	Academic Degree	Academic Title	Year of Birth	Nationality	Party Membership	Партийность из какого рода	Foreign Languages	Education
Nemchinov Vasily Sergeevich	Director	SOPS, Chairman	1960-07-01 00:00:00	Doctor	Academician	1894	Russian	CPSU member	1940	fluent in English	Moscow Commercial Institute Degree: Candidate of Economic Sciences
Mikhailovna Nina Vasilievna	Junior Researcher	Geological Exploration Office of the State Planning Committee of the RSFSR, typist	1960-11-18 00:00:00	None		1909	Russian	Non-partisan		French with a dictionary	Moscow State Pedagogical Institute named after Lenin
Popova Alexandra Alekseevna	Ju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Economic, Philosophical and Legal Sciences of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laboratory assistant	1961-09-11 00:00:00	None		1904	Russian	Non-partisan		French with a dictionary	2 years at the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Fedorova Evgeniya Nikolaevna	Typist		1961-09-04 00:00:00	None		1929	Russian	Non-partisan		Does not speak foreign languages	3 years at the Moscow Topographical College
Galansky Mark Mikhailovich	Head of Pricing Group,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Economic, Philosophical and Legal Sciences of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laboratory assistant	1960-09-25 00:00:00	Candidate of Economic Sciences		1923	Russian	CPSU member	1951	fluent in English	3 years at the Moscow Aviation Institute Moscow Institu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emchinov Vasily Sergeevich	Director	SOPS, Chairman	1958-08-01 00:00:00	Doctor	Academician	1933	Russian	CPSU member	1948	fluent in English	Moscow Commercial Institute Degree: Candidate of Economic Sciences
Mikhailovna Nina Vasilievna	Junior Researcher	Geological Exploration Office of the State Planning Committee of the RSFSR, typist	1962-03-01 00:00:00	None		1924	Russian	Non-partisan		French with a dictionary	Moscow State Pedagogical Institute named after Lenin
Popova Alexandra Alekseevna	Ju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Economic, Philosophical and Legal Sciences of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laboratory assistant	1960-08-01 00:00:00	None		1938	Russian	Non-partisan	1952	French with a dictionary	2 years at the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Fedorova Evgeniya Nikolaevna	Typist		1961-03-01 00:00:00	None		1908	Russian	Non-partisan	1932	Does not speak foreign languages	3 years at the Moscow Topographical College
Galansky Mark Mikhailovich	Head of Pricing Group,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Economic, Philosophical and Legal Sciences of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laboratory assistant	1960-02-05 00:00:00	Candidate of Economic Sciences		1930	Russian	CPSU member		fluent in English	3 years at the Moscow Aviation Institute Moscow Institu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emchinov Vasily Sergeevich	Director	SOPS, Chairman	1958-06-05 00:00:00	Doctor	Academician	1934	Russian	CPSU member	1950	fluent in English	Moscow Commercial Institute Degree: Candidate of Economic Sciences
Mikhailovna Nina Vasilievna	Junior Researcher	Geological Exploration Office of the State Planning Committee of the RSFSR, typist	1958-01-05 00:00:00	None		1933	Russian	Non-partisan	1947	French with a dictionary	Moscow State Pedagogical Institute named after Lenin
Popova Alexandra Alekseevna	Ju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Economic, Philosophical and Legal Sciences of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laboratory assistant	1960-11-10 00:00:00	None		1937	Russian	Non-partisan	1951	French with a dictionary	2 years at the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Fedorova Evgeniya Nikolaevna	Typist		1960-10-16 00:00:00	None		1930	Russian	Non-partisan		Does not speak foreign languages	3 years at the Moscow Topographical College



감사합니다.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4 호남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신진교수,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다

주최 : (사)호남사학회,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주관 : (사)호남사학회,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